

2021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초등·유치원·특수·보건·교육전문직원)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I. 평정업무 처리요령

1. 총칙	3
2. 경력평정	5
3. 근무성적평정	13
4. 연수성적평정(교육성적평정, 연구실적평정)	18
5. 가산점평정	24
6.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32
7. 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33
8. 연구실적 및 가산점평정 관련자료	35
가. 연구실적	35
나. 도서·벽지학교 현황	36
다. 대용부설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현황	44
라. 한센병 자녀 취학학교 <분교장> 학급 현황	45
마. 특수학교·학급현황	46
바. 교육부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48
사. 도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50
아. 꿈나르미학교	56
자. 도지정 시범유치원	57
차. 교육부지정 급식 시범학교	60
카.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현황	61
타. 준벽지학교 현황	68
파.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한국사 연수 인정 목록	69

.....

II.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 서식 목록	73
2. 인사서류 제출경로	74
3. 대상별 제출서류	76
4. 인사카드(전체) 출력 및 제출방법	80
5. 인사서류 제출일자	81
6. 서식 및 작성요령	82

III. 근무성적평정

1. 교사 다면평가	113
2. 교사 근무성적평정	123

IV.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1. 경상남도 초등·특수·보건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133
2. 경상남도 유치원(특수)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148

.....

I

평정업무 처리요령

1. 총칙
2. 경력평정
3. 근무성적평정
4. 연수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 연구실적평정)
5. 가산점평정
6.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7. 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8. 연구실적 및 가산점평정 관련자료



1. 총칙

가. 이 평정업무 처리요령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0495호, 2020.2.28., 일부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함)에 근거한 것임

나. 적용 대상 [승진규정 제2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 1) 각급학교 교(원)감으로서 동등급학교 교(원)장자격증을 받은 자
 - 2) 각급학교 교사로서 동등급학교 교(원)감자격증을 받은 자
 - 3) 장학(교육연구)사로서 장학(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 4)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또는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 5) 위의 '1)~4)'항 외의 교감교사장학(교육연구)사[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만 적용]
- ※ 수석교사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및 승진규정 제2조 제2항)
 ※ 장학(교육연구)사의 교(원)장으로의 전직 희망자

다. 근무성적 평정을 제외한 모든 평정은 나이스 인사기록(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사항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등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화확인할 수 있음[승진규정 제4조에 준함]

라. 평정시의 평정자와 확인자

1) 경력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승진규정 제5조·제30조]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교사	일반교사	교(원)감	교(원)장
	교감 미배치교	보직교사	교(원)장
교(원)감		교(원)감	교(원)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과장(국장)	교육장
	직속기관(분원 포함)	인사담당 부장	원장
	본청	인사담당 장학관	인사담당 과장

2) 근무성적평정[승진규정 제18조·제22조·23조·제28조의4]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교사	교사	교(원)감	교(원)장	조정위원회 교육지원 과(국)장 특수: 교장
	교육지원청 소속	소속 과장	교육장	
	교감 미배치교	교(원)장	교육장	
교(원)감		교(원)장	교육장	조정위원회 부교육감
특수교감		교장	부교육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과장(국장)	교육장	
	직속기관(분원 포함)	인사담당 부장	원장	
	특수교육원, 산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원장	부교육감	
본청		소속과장(담당관)	부교육감	

* 창원, 김해교육지원청 - 평정자: 소속 국장

마. 정기평정 기준일: 2021.2.28. [승진규정 제6조 · 제19조 · 제31조 · 제41조]



바. 총괄표 (평정기간 : '**.1.1.~ '15.12.31. '16.1.1.~ '17.2.28. '17.3.1.~ '21.2.28.)

구 분		평정기간	평점만점	비 고	
명부작성시기		'21.3.31.			
경력평정		~'21.2.28.	70점	최근 20년(기본15년+초과5년)	
근무성적평정		'16, '17, '18, '19, '20	100점	교사 최근 5년 중 택 3년 교감 등 최근 3년	
연수성적평정	교육성적	직무연수 '11.1.1.~'21.2.28.	18점 (6점)	최근 10년2개월 교사 3회, 교(원)감 1회 점수	
		자격연수 ~'21.2.28.	9점	교(원)감자격:최고-최저급간 0.5점 기타 자격:승진: 급간 1점	
		연구실적 ~'21.2.28.	3.00점		
가산점평정	공통가산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08.12.31.	1.25점 (1점)	(2022.4.1.부터 1점)
		재외국민교육 기관파견	~'21.2.28.	0.75점 (0.5점)	선택가산점의 교육기관파견과 합산하여 0.75점 초과 불가 (2022.4.1.부터 0.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21.2.28.	1.00점	학점당 0.02점 연 0.08점
		학교폭력예방및 대응실적	'13.1.1.~'21.2.28.	1.00점	연 0.1점
	선택가산점	도서·벽지 학교	지정일: '67.4.1. 해제일: '21.2.28.	2.00점	시기별 다르게 평정 * '98.1.1.이후 * '97.3.1.~'97.12.31. * '97.2.28.이전
		준벽지학교	'14.1.1.~'21.2.28.	(0.60점)	2014.1.1.이후부터 인정
		한센병자녀 학교·학급	학교(개교) '62.3.1.~'11.2.28. 학급(개설) '72.3.1.~'11.2.28.	1.00점	*한센병환자자녀학교(급)와 특수학교(급)을 합산하여 상한점 1.70점
		특수학교·학급	학교(개교) '69.3.1.~'16.12.31. 학급(개설) '73.3.1.~'16.12.31.	1.00점	
		도지정연구학교 꿈나르미학교	'73.1.1.~'21.2.28. (시범급식 '79.1.1.~'82.3.19.) 꿈나르미학교 '12.3.1.~'15.2.28.	1.25점	교육부연구학교와 합산하여 1.25점 초과 불가
		보직교사	'71.1.25.~'21.2.28.	1.25점	2008.12.31.이전은 1급 정교사 로서 보직교사 근무 경력
		장학(교육연구)사	~'21.2.28.	0.75점	
		교육기관 파견근무	~'21.2.28.	0.75점	공통가산점의 재외교육기관파견과 합산하여 0.75초과 불가
		국가기술자격증	~'21.2.28.	0.50점	
		농어촌지역 학교근무	'95.3.1.~'21.2.28.	1.25점	2014.1.1.부터 가, 나, 다지역 구분 2009.1.1.부터 가, 나지역 구분 교(원)감: 가, 나, 다 구분없이 월 0.012(2022.3.1.이후 실적부터)
		전국소체금메달 획득 지도교사	'05.3.1.~'21.2.28.	0.40점	
		영재교육원 답임	'06.3.1.~'21.2.28.	0.20점	
		발명영재교육 지도교사	'06.3.1.~'21.2.28.	0.20점	합산하여 상한점 0.50점 (30학급 이상 학교 근무 교감 월 0.01, 2021.3.1.이후 실적부 터, 농어촌진흥학교 근무경력과 중복 불가)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13.3.1.~'14.12.31.	0.08점	
		경로효행상 수상	'10.3.1.~'12.2.29.	0.10점	
		학력향상우수학교 유공	'10.3.1.~'13.12.31.	0.50점	
특수교육센터 근무	'17.3.1.~'21.2.28.	(0.40점)	(공통)재외교육기관파견 (선택)교육기관 파견근무와 합산하여 0.75초과 불가		



2. 경력평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15조

구 분	내 용	규 정																		
1. 평정의 기초	가. 교육공무원 “나이스 인사기록”에 의해 평정 나. 나이스 인사기록과의 정확성 여부 확인	승진규정제4조																		
2. 평정자·확인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평 정 대 상 자</td> <td>평 정 자</td> <td>확 인 자</td> </tr> <tr> <td rowspan="2">교사</td> <td>일반교사</td> <td>교(원)감</td> </tr> <tr> <td>교감 미배치교</td> <td>보직교사</td> </tr> <tr> <td colspan="2">교(원)감</td> <td>교(원)장</td> </tr> <tr> <td rowspan="3">장학사 교육연구사</td> <td>교육지원청</td> <td>인사담당 과장(국장)</td> </tr> <tr> <td>직속기관(분원 포함)</td> <td>인사담당 부장</td> </tr> <tr> <td>본청</td> <td>인사담당 장학관</td> </tr> </table> <p>※ 평정대상자가 복수교감일 경우 평정자는 서로 바꾸어 상호 평정</p>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확 인 자	교사	일반교사	교(원)감	교감 미배치교	보직교사	교(원)감		교(원)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과장(국장)	직속기관(분원 포함)	인사담당 부장	본청	인사담당 장학관	승진규정제5조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확 인 자																		
교사	일반교사	교(원)감																		
	교감 미배치교	보직교사																		
교(원)감		교(원)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과장(국장)																		
	직속기관(분원 포함)	인사담당 부장																		
	본청	인사담당 장학관																		
3. 평정의 시기	가. 매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상위자격 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그 때 부터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	승진규정제6조																		
4. 경력의 종류와 평정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기본경력</td> <td>평정시기로부터 15년(180월)</td> </tr> <tr> <td>초과경력</td> <td>기본경력 이전 5년(60월)</td> </tr> </table> <p>나. 경력평정 기간 중 일시퇴직기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 ⇨ “총 경력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1) 정규교사 9년, 기간제교사 2년, 정규교사 11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p> <p>*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 합계 70,0000점</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2) 정규교사 9년, 기간제교사 2년, 정규교사 10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p> <p>(1)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 합계 69,724점</p> <p>(2)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4년(가' 경력 4년) ⇒ 4,8000점 합계 68,800점(불리함)</p> <p>(3)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 경력 4년, '나' 경력1년) 불인정</p> <p>※ 기본경력 내의 '나' 경력을 제외할 수는 있으나, 초과경력에 포함할 수 없음</p> </div>	기본경력	평정시기로부터 15년(180월)	초과경력	기본경력 이전 5년(60월)	승진규정제7, 8조 교육부교정01210-1213 (1994.12.6.)														
기본경력	평정시기로부터 15년(180월)																			
초과경력	기본경력 이전 5년(60월)																			



구 분	내 용	규 정																															
<p>5. 평정대상 경력 종별과 등급</p>	<p>가. 평정대상경력: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기타경력 나. 경력의 내용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눔 다. 경력등급(가, 나, 다)구분은 승진규정(별표1)에 의거 평정 라. 기간(임시)제 교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경력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권자가 교육장, 교육감인 경우 인정 • 학교장 발령의 경우: '89.1.9. 이후의 것만 인정함 • 교사... “나” 경력,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다” 경력 ○ 중학교: 학교장의 임용경력 인정함 <p>마. 병역의무기간(3년 범위내 실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교사... “가” 경력평정 교감·장학(교육연구)사... “나” 경력평정 • 방위소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12.31.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역 1년 이상 또는 만기 시 1년 ② 복무단축자(의가사, 질병): 6월미만 실역미필은 버림 (단, 대학생 복무단축 실역미필은 6월 인정): 실역미필은 6월 합산 - '86.1.1. 이후: 실역복무기간(복무기간 범위내) - 의무, 전투경찰, 순경: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p>바. 대학의 조교 경력: 장학사·연구사...“다” 경력평정 사. 임시교원양성소, 실기교사, 에듀케어 강사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교원양성소 입소대상자 선발전형에 합격한 날 이후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의 경우: “나” 경력으로 평정 • 실기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력으로 평정해야 함 • 공립유치원에 채용된 에듀케어 강사가 유치원교사 자격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용이 되었고,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전일제로 근무하였을 때 경력으로 평정함 	<p>승진규정제9조 (별표1, p.10)</p> <p>퇴직교원표창관리 02128-26(1989.1.9.)</p> <p>교육공무원승진 규정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대통령령제14384호) 초교81801-756 (1994.10.22.)</p> <p>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의교육경력인정범위에 관한업무처리지침(1994. 12.20.)</p> <p>교육부교정-2444 (2007.5.28.)</p>																															
<p>6. 경력별 평정점</p>	<p>가. 경력등급별 평정점</p> <table border="1" data-bbox="415 1655 1149 1947"> <thead> <tr> <th>구 분</th> <th>등 급</th> <th>평점만점</th> <th>근무기간1월에 대한 평정점</th> <th>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경력 (15년)</td> <td>가 경력</td> <td>64.00</td> <td>0.3555</td> <td>0.0118</td> </tr> <tr> <td>나 경력</td> <td>60.00</td> <td>0.3333</td> <td>0.0111</td> </tr> <tr> <td>다 경력</td> <td>56.00</td> <td>0.3111</td> <td>0.0103</td> </tr> <tr> <td rowspan="3">초과경력 (5년)</td> <td>가 경력</td> <td>6.00</td> <td>0.1000</td> <td>0.0033</td> </tr> <tr> <td>나 경력</td> <td>5.00</td> <td>0.0833</td> <td>0.0027</td> </tr> <tr> <td>다 경력</td> <td>4.00</td> <td>0.0666</td> <td>0.0022</td> </tr> </tbody> </table> <p>※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 각각 만점으로 평정 ※ 경력평정점 조건표: [별표2]참조</p>	구 분	등 급	평점만점	근무기간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15년)	가 경력	64.00	0.3555	0.0118	나 경력	60.00	0.3333	0.0111	다 경력	56.00	0.3111	0.0103	초과경력 (5년)	가 경력	6.00	0.1000	0.0033	나 경력	5.00	0.0833	0.0027	다 경력	4.00	0.0666	0.0022	<p>승진규정제10조1항 부칙 제2조 ⑤항</p> <p>승진규정 제9조</p>
구 분	등 급	평점만점	근무기간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15년)	가 경력	64.00	0.3555	0.0118																													
	나 경력	60.00	0.3333	0.0111																													
	다 경력	56.00	0.3111	0.0103																													
초과경력 (5년)	가 경력	6.00	0.1000	0.0033																													
	나 경력	5.00	0.0833	0.0027																													
	다 경력	4.00	0.0666	0.0022																													



구 분	내 용	규 정
7. 경력의 기간 계산	나. 경력평정점의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력: 소수 넷째자리까지 계산 • 초과경력: 소수 넷째자리까지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평정점은 월평정점×월수 또는 일평정점×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별표2]의 평정점을 그대로 기재함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기록) 	승진규정제10조2항
	가.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승진규정제11조2항
	나.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견책, 감봉은 경력으로 인정) • 임용전 무관후보생 기간(사병복무중 장교임관 경우 무관후보생기간이 병적증명서상 “병”이라도 제외) •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외의 가산복무기간 • '85.12.31.이전 방위소집자의 6월 미만 실역미필 보충역기간 • 방위산업체 근무 특례보충역기간 • 채용보고 승인없는 사립학교 경력 • 대학의 조교경력(단,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만 “다” 경력으로 인정) • 여교원의 군복무 경력 • 대학의 전임강사 경력 • 초등학교 자격증 소지자가 유치원, 중등, 공민학교 근무한 경력 • 임용결격 교사의 교육경력 	승진규정제11조1항 교육공무원임용령제16조 교육부교정81801-497 (1997.7.14.) 국가공무원법제80조
	다. 100% 경력인정 하는 휴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에 한함) •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 육아휴직 및 입양휴직 기간 • 국제기구해외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상근 근무기간 • 노조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법원의 판결로 무효 취소 확정된 경우 •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 	교육부교정01210-1263 (1994.12.20.) 승진규정제11조1항 교육공무원법제44조 1, 2, 4, 6, 11호



구 분	내 용	규 정																		
	<p>라. 50% 경력인정 휴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휴직 기간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휴직기간 • 국제기구·해외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비상근 근무 기간 <p>※ 유학휴직 및 국내연수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평정에서 제외되는 5할의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5할의 기간)만큼을 교육경력이 20년 초과된 경우에는 경력평정기간에 다시 포함하여 평정함[시·도 인사담당장학관 회의자료(이하 "회의자료"라 함)('97.9.11.)]</p> <p>※ 고용휴직 경력평정</p> <table border="1" data-bbox="399 959 1133 1154"> <thead> <tr> <th>적용기간</th> <th>'94.9.21. 이전</th> <th>'94.9.22. 이후 ~ '00.3.31.</th> <th colspan="3">'00.4.1.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주당근무시간</td> <td>모두 인정</td> <td>10시간 이상</td> <td>9시간 이하</td> <td>15시간 이상</td> <td>6시간 이상 ~ 14시간 이하</td> </tr> <tr> <td>인정비율</td> <td>10할</td> <td>10할</td> <td>5할</td> <td>10할</td> <td>5할</td> </tr> </tbody> </table> <p>(예시) 정규교사 임용 후 5년 근무, 유학휴직 4년, 복직 후 2년 근무, 퇴직 후 기간제교사 5년, 정규교사 10년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휴직 기간(4년)의 5할인 2년은 기본경력의 '가' 경력으로 인정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 합계 69,724점 ※ 기본경력 내의 '나' 경력을 제외할 수는 있으나, 초과경력에 포함할 수 없음 	적용기간	'94.9.21. 이전	'94.9.22. 이후 ~ '00.3.31.	'00.4.1. 이후			주당근무시간	모두 인정	10시간 이상	9시간 이하	1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14시간 이하	인정비율	10할	10할	5할	10할	5할	<p>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2호(대통령령제233245호, 2011.11.30.)</p> <p>승진규정제11조1항 교육부예규제235호(1994.10.13.)1,3,4</p> <p>교육공무원법제44조1항 제5호, 제6호, 제8호</p>
적용기간	'94.9.21. 이전	'94.9.22. 이후 ~ '00.3.31.	'00.4.1. 이후																	
주당근무시간	모두 인정	10시간 이상	9시간 이하	1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14시간 이하															
인정비율	10할	10할	5할	10할	5할															
8. 평점의 채점	<p>가.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평정점수와 초과경력평정점수를 합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력·초과경력 평정점은 [별표2]의 평정점을 그대로 기재함(소수점 이하 넷째자리) - 경력평정점 합계는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평정점을 합한 후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p>승진규정 제12조</p>																		
9. 평정표	<p>가. 승진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p> <p>나.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해야 함</p>	<p>승진규정 제13조 및 동 규정별지 제1호 서식</p>																		
10. 평정결과 보고	<p>가. 확인자는 평정후 10일 이내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p> <p>나. 교(원)감 교사의 경력평정표는 교육장을 거쳐야 함</p>	<p>승진규정 제14조</p>																		
11. 평정결과외의 공개	<p>가.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함</p>	<p>승진규정 제15조</p>																		



□ 승진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기준 및 내용

- 승진임용 시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승진규정」 제3조),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경력으로 함(「승진규정」 제9조)
- 「승진규정」 별표1의 경력종별을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등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종 류	내 용
교육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의 경력
교육행정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할 경력
기타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 제외) 또는 기간제 교원(임시교원의 경력 포함)의 경력 ❖ 5급 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력평정등급 중 나경력 제2호 제외)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

- ※ 참고: 경력은 경력산정의 목적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소관 법령 및 공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산정 목적에 따라 소관 법령과 공문에 따라야 함
- 승진임용을 위한 경력 평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경력 인정: 교원자격검정령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 <개정 2013.3.23.>

경력의 등급 및 종별(「승진규정」 제9조 관련)

평정대상자의 직위	등급	경력 종별
교감	가 경력	1.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나 경력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할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다 경력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 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기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교사	가 경력	1.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나 경력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 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기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장학사·교육연구사	가 경력	1.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2. 각급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나 경력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할 경력 4.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다 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를 제외한다) 및 기간제 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기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2. 5급 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나경력 제2호를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



[별표2]

경력평정점 조건표(기본경력)

구분 월별	월 평정점			구분 월별	월 평정점			구분 월별	월 평정점			구분 월별	월 평정점			구분 월별	일 평정점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0,3555	0,3333	0,3111		0,3555	0,3333	0,3111		0,3555	0,3333	0,3111		0,3555	0,3333	0,3111		0,0118	0,0111	0,0103
1	0,3555	0,3333	0,3111	51	18,1305	16,9983	15,8661	101	35,9055	33,6633	31,4211	151	53,6805	50,3283	46,9761	1	0,0118	0,0111	0,0103
2	0,7110	0,6666	0,6222	52	18,4860	17,3316	16,1772	102	36,2610	33,9966	31,7322	152	54,0360	50,6616	47,2872	2	0,0236	0,0222	0,0206
3	1,0665	0,9999	0,9333	53	18,8415	17,6649	16,4883	103	36,6165	34,3299	32,0433	153	54,3915	50,9949	47,5983	3	0,0354	0,0333	0,0309
4	1,4220	1,3332	1,2444	54	19,1970	17,9982	16,7994	104	36,9720	34,6632	32,3544	154	54,7470	51,3282	47,9094	4	0,0472	0,0444	0,0412
5	1,7775	1,6665	1,5555	55	19,5525	18,3315	17,1105	105	37,3275	34,9965	32,6655	155	55,1025	51,6615	48,2205	5	0,0590	0,0555	0,0515
6	2,1330	1,9998	1,8666	56	19,9080	18,6648	17,4216	106	37,6830	35,3298	32,9766	156	55,4580	51,9948	48,5316	6	0,0708	0,0666	0,0618
7	2,4885	2,3331	2,1777	57	20,2635	18,9981	17,7327	107	38,0385	35,6631	33,2877	157	55,8135	52,3281	48,8427	7	0,0826	0,0777	0,0721
8	2,8440	2,6664	2,4888	58	20,6190	19,3314	18,0438	108	38,3940	35,9964	33,5988	158	56,1690	52,6614	49,1538	8	0,0944	0,0888	0,0824
9	3,1995	2,9997	2,7999	59	20,9745	19,6647	18,3549	109	38,7495	36,3297	33,9099	159	56,5245	52,9947	49,4649	9	0,1062	0,0999	0,0927
10	3,5550	3,3330	3,1110	60	21,3300	19,9980	18,6660	110	39,1050	36,6630	34,2210	160	56,8800	53,3280	49,7760	10	0,1180	0,1110	0,1030
11	3,9105	3,6663	3,4221	61	21,6855	20,3313	18,9771	111	39,4605	36,9963	34,5321	161	57,2355	53,6613	50,0871	11	0,1298	0,1221	0,1133
12	4,2660	3,9996	3,7332	62	22,0410	20,6646	19,2882	112	39,8160	37,3296	34,8432	162	57,5910	53,9946	50,3982	12	0,1416	0,1332	0,1236
13	4,6215	4,3329	4,0443	63	22,3965	20,9979	19,5993	113	40,1715	37,6629	35,1543	163	57,9465	54,3279	50,7093	13	0,1534	0,1443	0,1339
14	4,9770	4,6662	4,3554	64	22,7520	21,3312	19,9104	114	40,5270	37,9962	35,4654	164	58,3020	54,6612	51,0204	14	0,1652	0,1554	0,1442
15	5,3325	4,9995	4,6665	65	23,1075	21,6645	20,2215	115	40,8825	38,3295	35,7765	165	58,6575	54,9945	51,3315	15	0,1770	0,1665	0,1545
16	5,6880	5,3328	4,9776	66	23,4630	21,9978	20,5326	116	41,2380	38,6628	36,0876	166	59,0130	55,3278	51,6426	16	0,1888	0,1776	0,1648
17	6,0435	5,6661	5,2887	67	23,8185	22,3311	20,8437	117	41,5935	38,9961	36,3987	167	59,3685	55,6611	51,9537	17	0,2006	0,1887	0,1751
18	6,3990	5,9994	5,5998	68	24,1740	22,6644	21,1548	118	41,9490	39,3294	36,7098	168	59,7240	55,9944	52,2648	18	0,2124	0,1998	0,1854
19	6,7545	6,3327	5,9109	69	24,5295	22,9977	21,4659	119	42,3045	39,6627	37,0209	169	60,0795	56,3277	52,5759	19	0,2242	0,2109	0,1957
20	7,1100	6,6660	6,2220	70	24,8850	23,3310	21,7770	120	42,6600	39,9960	37,3320	170	60,4350	56,6610	52,8870	20	0,2360	0,2220	0,2060
21	7,4655	6,9993	6,5331	71	25,2405	23,6643	22,0881	121	43,0155	40,3293	37,6431	171	60,7905	56,9943	53,1981	21	0,2478	0,2331	0,2163
22	7,8210	7,3326	6,8442	72	25,5960	23,9976	22,3992	122	43,3710	40,6626	37,9542	172	61,1460	57,3276	53,5092	22	0,2596	0,2442	0,2266
23	8,1765	7,6659	7,1553	73	25,9515	24,3309	22,7103	123	43,7265	40,9959	38,2653	173	61,5015	57,6609	53,8203	23	0,2714	0,2553	0,2369
24	8,5320	7,9992	7,4664	74	26,3070	24,6642	23,0214	124	44,0820	41,3292	38,5764	174	61,8570	57,9942	54,1314	24	0,2832	0,2664	0,2472
25	8,8875	8,3325	7,7775	75	26,6625	24,9975	23,3325	125	44,4375	41,6625	38,8875	175	62,2125	58,3275	54,4425	25	0,2950	0,2775	0,2575
26	9,2430	8,6658	8,0886	76	27,0180	25,3308	23,6436	126	44,7930	41,9958	39,1986	176	62,5680	58,6608	54,7536	26	0,3068	0,2886	0,2678
27	9,5985	8,9991	8,3997	77	27,3735	25,6641	23,9547	127	45,1485	42,3291	39,5097	177	62,9235	58,9941	55,0647	27	0,3186	0,2997	0,2781
28	9,9540	9,3324	8,7108	78	27,7290	25,9974	24,2658	128	45,5040	42,6624	39,8208	178	63,2790	59,3274	55,3758	28	0,3304	0,3108	0,2884
29	10,3095	9,6657	9,0219	79	28,0845	26,3307	24,5769	129	45,8595	42,9957	40,1319	179	63,6345	59,6607	55,6869	29	0,3422	0,3219	0,2987
30	10,6650	9,9990	9,3330	80	28,4400	26,6640	24,8880	130	46,2150	43,3290	40,4430	180	64,0000	60,0000	56,0000	30	0,3555	0,3333	0,3111
31	11,0205	10,3323	9,6441	81	28,7955	26,9973	25,1991	131	46,5705	43,6623	40,7541								
32	11,3760	10,6656	9,9552	82	29,1510	27,3306	25,5102	132	46,9260	43,9956	41,0652								
33	11,7315	10,9989	10,2663	83	29,5065	27,6639	25,8213	133	47,2815	44,3289	41,3763								
34	12,0870	11,3322	10,5774	84	29,8620	27,9972	26,1324	134	47,6370	44,6622	41,6874								
35	12,4425	11,6655	10,8885	85	30,2175	28,3305	26,4435	135	47,9925	44,9955	41,9985								
36	12,7980	11,9988	11,1996	86	30,5730	28,6638	26,7546	136	48,3480	45,3288	42,3096								
37	13,1535	12,3321	11,5107	87	30,9285	28,9971	27,0657	137	48,7035	45,6621	42,6207								
38	13,5090	12,6654	11,8218	88	31,2840	29,3304	27,3768	138	49,0590	45,9954	42,9318								
39	13,8645	12,9987	12,1329	89	31,6395	29,6637	27,6879	139	49,4145	46,3287	43,2429								
40	14,2200	13,3320	12,4440	90	31,9950	29,9970	27,9990	140	49,7700	46,6620	43,5540								
41	14,5755	13,6653	12,7551	91	32,3505	30,3303	28,3101	141	50,1255	46,9953	43,8651								
42	14,9310	13,9986	13,0662	92	32,7060	30,6636	28,6212	142	50,4810	47,3286	44,1762								
43	15,2865	14,3319	13,3773	93	33,0615	30,9969	28,9323	143	50,8365	47,6619	44,4873								
44	15,6420	14,6652	13,6884	94	33,4170	31,3302	29,2434	144	51,1920	47,9952	44,7984								
45	15,9975	14,9985	13,9995	95	33,7725	31,6635	29,5545	145	51,5475	48,3285	45,1095								
46	16,3530	15,3318	14,3106	96	34,1280	31,9968	29,8656	146	51,9030	48,6618	45,4206								
47	16,7085	15,6651	14,6217	97	34,4835	32,3301	30,1767	147	52,2585	48,9951	45,7317								
48	17,0640	15,9984	14,9328	98	34,8390	32,6634	30,4878	148	52,6140	49,3284	46,0428								
49	17,4195	16,3317	15,2439	99	35,1945	32,9967	30,7989	149	52,9695	49,6617	46,3539								
50	17,7750	16,6650	15,5550	100	35,5500	33,3300	31,1100	150	53,3250	49,9950	46,6650								



경력평정점 조건표(초과경력)

구분 월별	월 평정점			구분 월별	월 평정점			구분 일별	일 평정점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0.1000	0.0833	0.0666		0.1000	0.0833	0.0666		0.0033	0.0027	0.0022
1	0.1000	0.0833	0.0666	31	3.1000	2.5823	2.0646	1	0.0033	0.0027	0.0022
2	0.2000	0.1666	0.1332	32	3.2000	2.6656	2.1312	2	0.0066	0.0054	0.0044
3	0.3000	0.2499	0.1998	33	3.3000	2.7489	2.1978	3	0.0099	0.0081	0.0066
4	0.4000	0.3332	0.2664	34	3.4000	2.8322	2.2644	4	0.0132	0.0108	0.0088
5	0.5000	0.4165	0.3330	35	3.5000	2.9155	2.3310	5	0.0165	0.0135	0.0110
6	0.6000	0.4998	0.3996	36	3.6000	2.9988	2.3976	6	0.0198	0.0162	0.0132
7	0.7000	0.5831	0.4662	37	3.7000	3.0821	2.4642	7	0.0231	0.0189	0.0154
8	0.8000	0.6664	0.5328	38	3.8000	3.1654	2.5308	8	0.0264	0.0216	0.0176
9	0.9000	0.7497	0.5994	39	3.9000	3.2487	2.5974	9	0.0297	0.0243	0.0198
10	1.0000	0.8330	0.6660	40	4.0000	3.3320	2.6640	10	0.0330	0.0270	0.0220
11	1.1000	0.9163	0.7326	41	4.1000	3.4153	2.7306	11	0.0363	0.0297	0.0242
12	1.2000	0.9996	0.7992	42	4.2000	3.4986	2.7972	12	0.0396	0.0324	0.0264
13	1.3000	1.0829	0.8658	43	4.3000	3.5819	2.8638	13	0.0429	0.0351	0.0286
14	1.4000	1.1662	0.9324	44	4.4000	3.6652	2.9304	14	0.0462	0.0378	0.0308
15	1.5000	1.2495	0.9990	45	4.5000	3.7485	2.9970	15	0.0495	0.0405	0.0330
16	1.6000	1.3328	1.0656	46	4.6000	3.8318	3.0636	16	0.0528	0.0432	0.0352
17	1.7000	1.4161	1.1322	47	4.7000	3.9151	3.1302	17	0.0561	0.0459	0.0374
18	1.8000	1.4994	1.1988	48	4.8000	3.9984	3.1968	18	0.0594	0.0486	0.0396
19	1.9000	1.5827	1.2654	49	4.9000	4.0817	3.2634	19	0.0627	0.0513	0.0418
20	2.0000	1.6660	1.3320	50	5.0000	4.1650	3.3300	20	0.0660	0.0540	0.0440
21	2.1000	1.7493	1.3986	51	5.1000	4.2483	3.3966	21	0.0693	0.0567	0.0462
22	2.2000	1.8326	1.4652	52	5.2000	4.3316	3.4632	22	0.0726	0.0594	0.0484
23	2.3000	1.9159	1.5318	53	5.3000	4.4149	3.5298	23	0.0759	0.0621	0.0506
24	2.4000	1.9992	1.5984	54	5.4000	4.4982	3.5964	24	0.0792	0.0648	0.0528
25	2.5000	2.0825	1.6650	55	5.5000	4.5815	3.6630	25	0.0825	0.0675	0.0550
26	2.6000	2.1658	1.7316	56	5.6000	4.6648	3.7296	26	0.0858	0.0702	0.0572
27	2.7000	2.2491	1.7982	57	5.7000	4.7481	3.7962	27	0.0891	0.0729	0.0594
28	2.8000	2.3324	1.8648	58	5.8000	4.8314	3.8628	28	0.0924	0.0756	0.0616
29	2.9000	2.4157	1.9314	59	5.9000	4.9147	3.9294	29	0.0957	0.0783	0.0638
30	3.0000	2.4990	1.9980	60	6.0000	5.0000	4.0000	30	1.0000	0.0833	0.0666



3.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6~28조

구 분	내 용	규 정																																			
1. 평정의 기준	가. 교감·장 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 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를 평가 나. 교사는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 다.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 - 매 학년도 종료일 • 교감 등: <서식8> (p.92) • 교사: <서식1> (p.82) 라. 타당한 요소의 기준과 객관적 근거자료, 신뢰성과 타당성 보장,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승진규정제16조제1항 승진규정제28조의2 승진규정제16조제2항, 제3항 승진규정제28조의2 승진규정제16조제4항																																			
2. 평정표 등	가. 근무성적평정표 • 교감 등은 <서식9> (p.93), 교사는 <서식2> (p.83) 활용 나. 다면평가표는<서식5>(p.89),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합산표는 <서식6>(p.90)	승진규정제17조 승진규정제28조의3																																			
3. 평정자 확인자	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평정대상자</th> <th>평 정 자</th> <th>확 인 자</th> <th>조정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교사</td> <td>교사</td> <td>교(원)감</td> <td>교(원)장</td> </tr> <tr> <td>교육지원청소속</td> <td>소속과장</td> <td>교육장</td> </tr> <tr> <td>교감 미배치교</td> <td>교(원)장</td> <td>교육장</td> </tr> <tr> <td colspan="2">교(원)감</td> <td>교(원)장</td> <td>교육장</td> </tr> <tr> <td colspan="2">특수교감</td> <td>교장</td> <td>부교육감</td> </tr> <tr> <td rowspan="4">장학사 교육연구사</td> <td>교육지원청</td> <td>인사담당 과장(국장)</td> <td>교육장</td> </tr> <tr> <td>직속기관(분원포함)</td> <td>인사담당 부장</td> <td>원장</td> </tr> <tr> <td>특수교육원, 산촌, 학생안전체험교육원</td> <td>원장</td> <td>부교육감</td> </tr> <tr> <td>본청</td> <td>소속과장(담당관)</td> <td>부교육감</td> </tr> </tbody> </table> •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동료교사 중 3인 이상 동료교사로 구성 •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함	평정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조정자	교사	교사	교(원)감	교(원)장	교육지원청소속	소속과장	교육장	교감 미배치교	교(원)장	교육장	교(원)감		교(원)장	교육장	특수교감		교장	부교육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과장(국장)	교육장	직속기관(분원포함)	인사담당 부장	원장	특수교육원, 산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원장	부교육감	본청	소속과장(담당관)	부교육감	승진규정제18조 승진규정제28조4항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6조 *창원, 김해교육지원청 - 평정자: 소속 국장
평정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조정자																																		
교사	교사	교(원)감	교(원)장																																		
	교육지원청소속	소속과장	교육장																																		
	교감 미배치교	교(원)장	교육장																																		
교(원)감		교(원)장	교육장																																		
특수교감		교장	부교육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과장(국장)	교육장																																		
	직속기관(분원포함)	인사담당 부장	원장																																		
	특수교육원, 산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원장	부교육감																																		
	본청	소속과장(담당관)	부교육감																																		
4. 평정대상 평정시기	가. 교사,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평정일 현재 근무자) 나.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승진규정제2조1~4호 승진규정제19조,28조의2																																			
5. 평정의 예외	가. 휴직, 직위해제, 기타사유(휴가, 해외교육이수 후 대기 등)로 평정단위 학년도 2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대상에서 제외(복귀 후 2월 이내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는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 나.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 파견(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평정할 수 없을 때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함	승진규정제20조1항 교육부교정-1147 (2007.9.20.) 승진규정제20조2항																																			



구 분	내 용	규 정
<p>6. 평정점의 분포비율</p>	<p>다. 2월 이상 다른 직위를 겸임(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 또는 파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p>	<p>승진규정제20조3항</p>
	<p>※ 원 소속 기관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받도록 함<서식30, p130 참조></p>	<p>교육부교정-3503 (2007.7.26.)</p>
	<p>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성적평정표 지체 없이 이관 • 2월 이내에 정기평정 실시일 도래시는 평정(전근무지의 평정을 참작) 	<p>승진규정제20조4항</p>
	<p>마. 신규채용, 승진임용 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 	<p>승진규정제20조5항</p>
	<p>바. 강임된 자가 승진임용 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 	
	<p>사. 상위자격 취득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자격 취득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 	<p>승진규정제20조6항</p>
	<p>아. 전직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평을 당해 평정으로 함 •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을 평정대상으로 함 •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자는 교감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평정단위 연도전의 근무성적으로 평정함 	<p>승진규정제20조7항 대통령령 제17635호 (2002.6.25.)</p>
	<p>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과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95점이상)30% ② 우(90점이상~95점미만)40% ③ 미(85점이상~90점미만)20% ④ 양(85점미만)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에 해당자가 없거나 그 비율이하일 때 “양”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미”에 가산함 • “양”에 해당자는 승급의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음(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p>승진규정제21조1항 승진규정제28조의6</p>
	<p>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p>	<p>승진규정제21조2항</p>
	<p>다. 평정대상 교감 등의 근무성적 총평정점과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함</p>	<p>승진규정제21조3항 승진규정제28조의6</p>
	<p>라. 복수교감의 근무성적평정비율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도와 관계없이 “우”이하 평정으로 불이익사례 없도록 함 <교직01540-513(87.9.5.)> • 2명일 경우 점수 차를 두고 “수”로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규 정												
<p>6. 명부작성시 평정점산정</p>	<p>마. 승진후보자, 연수대상자 명부 작성시 <교(원)감, 장학(교육연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 계산 방식에 의거 산정 산정기준: 시행일 2018.4.1. <table border="1" data-bbox="412 569 1153 645"> <tr> <td>최근 1년 이내 평정점</td> <td>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td> <td>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td> </tr> <tr> <td>34%</td> <td>33%</td> <td>33%</td> </tr> </table> <p><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의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며,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함 산정기준: 시행일 2018.4.1. <table border="1" data-bbox="412 867 1153 998"> <tr> <td>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td> <td>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두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td> <td>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세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td> </tr> <tr> <td>34%</td> <td>33%</td> <td>33%</td> </tr> </table> <p>※ 이 때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p>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34%	33%	33%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두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세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34%	33%	33%	<p>승진규정제40조3항 승진규정제40조4항</p> <p>승진규정제40조6항</p> <p>승진규정제40조5항</p>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34%	33%	33%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두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세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34%	33%	33%												
<p>7. 교감 등의 평정의 채점</p>	<p>가. 교감장학(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정점=(평정자의 평정점×0.5)+(확인자의 평정점×0.5)</p>	<p>승진규정제22조1항</p>												
<p>8. 교사의 근무 성적평정 등의 채점</p>	<p>나.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확인자의 소속기관에 설치)</p> <p>가. 근무성적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한 후 합산(60점 만점)</p> <p>나.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40점 만점)</p> <p>다.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함 합산점=(평정자의 평정점×0.2)+(확인자의 평정점×0.4) +(다면평가자의 평가점×0.4)</p>	<p>승진규정제22조2항</p> <p>승진규정제28조의7</p>												



구 분	내 용	규 정																				
9.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p>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와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함</p> <p>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사교(원)감 • 도교육청: 장학(교육연구)사 <p>※ 교육전문직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분리하여 평정점 조정</p> <p>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평정을 조정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정대상 교감 등 전원의 분포비율 ②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③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p>라. 신분상 처분에 따른 감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일이 2020.3.1.~2021.2.28.까지인 경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직 급</th> <th colspan="4">징 계</th> <th rowspan="2">불문 경고</th> <th rowspan="2">경고</th> <th rowspan="2">주의</th> </tr> <tr> <th>강등</th> <th>정직</th> <th>감봉</th> <th>견책</th> </tr> </thead> <tbody> <tr> <td>교감 등 교 사</td> <td>1건당 -5</td> <td>1건당 -3</td> <td>1건당 -2</td> <td>1건당 -1</td> <td>1건당 -0.5</td> <td>1건당 -0.2</td> <td>2건당 -0.1 (추가건당 -0.05)</td> </tr> </tbody> </table>	직 급	징 계				불문 경고	경고	주의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교감 등 교 사	1건당 -5	1건당 -3	1건당 -2	1건당 -1	1건당 -0.5	1건당 -0.2	2건당 -0.1 (추가건당 -0.05)	<p>승진규정제23조 승진규정제28조의8</p> <p>중등12110-1479 (2002.5.23.)</p> <p>승진규정제24조</p> <p>감사관-2634 (2016.4.18.)</p>
직 급	징 계				불문 경고	경고				주의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교감 등 교 사	1건당 -5	1건당 -3	1건당 -2	1건당 -1	1건당 -0.5	1건당 -0.2	2건당 -0.1 (추가건당 -0.05)															
10. 근무성적 평정결과 의 보고	<p>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함(평정 후 10일 이내 보고)</p> <p>나. 교사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p>	<p>승진규정제25조 승진규정제28조의9</p>																				
11. 근무성적 평정결과 의 공개	<p>가.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공개 주체: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p> <p>- 유, 초등학교 교사 및 교(원)감: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교사-도교육청</p> <p>* 유의사항: 청구인 '본인'의 정보에 한해 공개하며, 청구와 관계 없이 일괄공지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음</p> <p>* 비공개: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p> </div>	<p>승진규정제26조</p> <p>교육부교정-1896 (2007.11.15.)</p>																				
12. 근무성적 평정 결과 의 활용	<p>가.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p>	<p>승진규정제27조</p>																				
13. 유의사항	<p>가. 신분상 처분에 따른 감점 적용 시 평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교(원)감, 장학(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감점 처리 : "조정점" 에서 감점(교사, 교감 등 근무성적평정 감점 처리 요령 참고 p.123) • 교(원)감, 장학(교육연구)사는 <서식10> 근무성적평정 일람표 교사는 <서식6,7>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일람표 	<p>중등교육과-62923 (2009.11.25.)</p> <p>감사관-2634 (2016.4.18.)</p>																				



구 분	내 용	규 정
<p>13. 유의사항</p>	<p>나. 교사 근무성적평정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함 • 특수교사실기교사: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함 • 원로교사: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함 • 수석교사와 기간제교사: 교사 근무성적 평정에서 제외 •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성적 평정 <p>※ 단,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는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함</p> <p>다. 남·여 통합하여 근무성적 평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 통합 평정이 어느 한 성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능력이 우수한 여교원이 상위의 평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평정으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평정자와 확인자는 남녀 차별을 하는 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p>라. 4대 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는 상위 30% 근무성적 평정 부여 금지</p> <p>마. 근무성적 평정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교감 → 공모교장(교장자격미소지) → 교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감 최초 발령(2015.3.1.) 교감 근평 89.5점(2015.12.31.) - 공모교장 임용(2016.9.1.~2020.8.31.) 근평 없음 - 교감발령(2020.9.1.) 교감 근평 100점(2021.2.28.) <p>[근무성적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100점×0.34=34점 ② 최근 2년 이내 평정점 (100점+85점)/2=92.5점 ⇒ 92.5×0.33=30.525점 ③ 최근 3년 이내 평정점 (92.5+85)/2=88.75점 ⇒ 88.75×0.33=29.288점 <p>⇒ 근무성적: 34 + 30.525 + 29.288 = 93.813점</p> </div>	<p>중등교육과-28511 (2014.7.21.)</p> <p>초등교육과-9901 (2018.7.13.)</p> <p>교육부교정 81801-497 ('97.7.14.) 인사업무처리요령</p> <p>감사관-2634 (2016.4.18.)</p> <p>교육부교정-11294 (2011.12.13.)</p>



4. 연수성적평정(교육성적평정, 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9~39조

구 분	내 용	규 정										
1. 평정의 구분 2. 평정자 확인자, 시기, 평정표 3. 교육성적평정 - 직무연수 평정 대상	<p>가.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p> <p>가. 평정자 확인자 및 시기는 경력평정과 같음</p> <p>나. 평정표는 <서식13> (p.97)에 의함</p> <p>가. 교육성적평정 - 직무연수·자격연수 성적의 평정 후 합산한 성적</p> <p>나. 직무연수</p> <p>① 평정 대상: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당해직위 10년 이내('11.1.1. 이후)에 받은 60시간 이상 3회(1회-성적평정, 2회-이수실적)의 직무연수 성적(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1회 연수 성적)만 평정</p> <p>※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202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 10년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감의 평정: 교감 직위에서의 연수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함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 평정: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함 장학사, 교육연구사 평정: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교감 등의 직위)에서의 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함 <p>※ 교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사의 직위에서 이수한 교감의 직무연수실적 ⇒ 평정대상이 아님</p>	<p>승진규정제29조</p> <p>승진규정제30조, 31조</p> <p>승진규정제32조1항</p> <p>승진규정제32조2항 (연수환산성적+이수실적)</p> <p>승진규정 부칙 제3조</p>										
- 직무연수 성적 평정	<p>② 직무연수 성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장·장학(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6점(성적평정)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18점 직무연수성적으로 사용한 직무연수는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 실적평정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음 (교감 자격승진의 경우 3개, 교장 자격승진의 경우 1개) 	<p>교육부교정-1147 (2007.9.20.)</p> <p>승진규정제32조2항</p> <p>승진규정제33조</p>										
- 직무연수 성적 평정점	<p>③ 직무연수 성적 평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 횟수(2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무연수 성적</th> <th>직무연수 환산 성적</th> </tr> </thead> <tbody> <tr> <td>95점 초과</td> <td>100점</td> </tr> <tr> <td>90점 초과~95점 이하</td> <td>95점</td> </tr> <tr> <td>85점 초과~90점 이하</td> <td>90점</td> </tr> <tr> <td>85점 이하</td> <td>85점</td> </tr> </tbody> </table>	직무연수 성적	직무연수 환산 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p>※ 연수성적평정 만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감: 30점 - 교(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 18점
직무연수 성적	직무연수 환산 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 자격연수 평정대상 및 성적 평정	<p>다. 자격연수</p> <p>① 평정 대상: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p> <p>※ 당해직위 또는 (별표1. 경력의 등급 및 종별)의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성적,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육과의 석사학위 취득 성적(자격 취득시의 경우)을 포함</p>	<p>승진규정제32조3항</p>										



구 분	내 용	규 정								
<p>- 자격연수 성적평정점</p>	<p>※ 당해직위: 피평정자의 평정대상 직위로서 승진규정 [별표1]에 의해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를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장과정 연수대상자: 교(원)감자격 연수성적 교(원)감과정 연수대상자: 1급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자격 연수성적 <p>※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성적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모두 평정대상이 됨</p> <p>② 자격연수 성적: 9점</p> <p>③ 교감승진, 교장자격(승진) 명부작성 :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 0.05</p> <p>※ 교(원)감 자격연수 명부작성 :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 0.025</p> <p>㉓ 2회 이상 분할실시된 자격연수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회 분할실시, 1회분 성적 확인 불능: 확인 가능한 1회분 성적을 연수성적으로 평정 3회 이상 분할실시, 1회분 이상 확인불능: 확인된 성적의 평균성적을 연수성적으로 평정(분할실시의 경우 연수이수여부, 확인불능사유, 연수 종별, 연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확인 불능한 연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연수성적 인정서(연수성적부여대상)」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별도로 비치하여야 함) <p>㉔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교육대학원·대학원교육과(교육부장관 지정)에서 석사학위 취득자의 자격연수성적 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정교사 자격연수 받기 전에 대체한 교사만 가능 단, 전문상담석사학위취득은 1급정교사 자격연수 취득 전 후 모두 가능 <table border="1" data-bbox="412 1373 1159 1556"> <thead> <tr> <th>졸업 또는 수료 성적</th> <th>평 정 점</th> </tr> </thead> <tbody> <tr> <td>A학점 이상</td> <td>만점의 90%</td> </tr> <tr> <td>B학점 이상</td> <td>만점의 85%</td> </tr> <tr> <td>D학점 이상</td> <td>만점의 80%</td> </tr> </tbody> </table> <p>※ 졸업 및 수료성적은 증빙서류 첨부함</p> <p>㉕ 연수(직무, 자격)성적 평정 시 성적이 평어로 되어 있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상위 등급의 평어: 만점의 90% 차상위 등급의 평어: 만점의 85% 제3등급 이하의 평어: 만점의 80% <p>㉖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성적 없는 경우 포함)일 때에는 만점의 80%로 평정. 단,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않음</p> <p>④ 연수이수 및 자격취득 시기와 관련한 연수성적평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연수평정대상은 평정시기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격연수성적 일반연수평정대상은 평정시기 이전에 연수과정을 이수한 직무연수성적 	졸업 또는 수료 성적	평 정 점	A학점 이상	만점의 90%	B학점 이상	만점의 85%	D학점 이상	만점의 80%	<p>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p> <p>교육부교정12100-528 (2003.9.9.)</p> <p>승진규정제32조3항 교원등의연수에 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p> <p>승진규정제33조4항 인사관리규정 12조 교육부교정07000-156 (1999.2.19.)</p> <p>승진규정제33조3항</p> <p>승진규정제33조1항 교육부교정81801-106 (2000.1.29.)</p>
졸업 또는 수료 성적	평 정 점									
A학점 이상	만점의 90%									
B학점 이상	만점의 85%									
D학점 이상	만점의 80%									



구 분	내 용	규 정																															
4. 연구실적 평정	<p>가.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 실적학위취득실적의 평정 후 합산한 성적</p> <p>나. 연구대회입상 및 학위취득실적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동등급) 직위에서의 실적에 한함. 다만, 전직되기 이전의 실적 인정은 다음과 같음<교육전문직원 경력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실적에('94.9.22. 이후 임용자)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함> <p>다. 학위취득실적 및 연구실적평정</p> <p>① 연구실적은 다음 표에 의거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음</p> <table border="1" data-bbox="412 718 1159 1063"> <thead> <tr> <th data-bbox="412 718 651 764">구 분</th> <th colspan="4" data-bbox="651 718 1159 764">평 정 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2 764 651 932" rowspan="4">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1년에 1편에 한함)</td> <td data-bbox="651 764 753 810">입상등급</td> <td data-bbox="753 764 872 810">전국규모</td> <td data-bbox="872 764 984 810">사·도규모</td> <td data-bbox="984 764 1159 810">공동작</td> </tr> <tr> <td data-bbox="651 810 753 856">1등급</td> <td data-bbox="753 810 872 856">1.50점</td> <td data-bbox="872 810 984 856">1.00점</td> <td data-bbox="984 810 1159 856">2인공동 7할</td> </tr> <tr> <td data-bbox="651 856 753 902">2등급</td> <td data-bbox="753 856 872 902">1.25점</td> <td data-bbox="872 856 984 902">0.75점</td> <td data-bbox="984 856 1159 902">3인공동 5할</td> </tr> <tr> <td data-bbox="651 902 753 932">3등급</td> <td data-bbox="753 902 872 932">1.00점</td> <td data-bbox="872 902 984 932">0.50점</td> <td data-bbox="984 902 1159 932">4인이상공동 3할</td> </tr> <tr> <td data-bbox="412 932 651 1063" rowspan="2">제36조의 규정 및 제37조제3항에 의한 학위논문</td> <td data-bbox="651 932 753 994">박 사</td> <td colspan="2" data-bbox="753 932 984 994">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td> <td data-bbox="984 932 1159 994">3.00점</td> </tr> <tr> <td data-bbox="651 994 753 1063">석 사</td> <td colspan="2" data-bbox="753 994 984 1063">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td> <td data-bbox="984 994 1159 1063">1.50점</td> </tr> </tbody> </table> <p>② 직무와 관련 여부: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목, 학생생활지도, 특별 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직위에서 취득한 석사와 박사학위가 동시에 있는 경우: 하나만 평정(박사) - 석사학위가 2개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대학원 학위과정(수강기간) 또는 학점의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승진규정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2개 학위를 모두 평정 대상으로 인정하되, '06년 12월 31일 평정시부터 적용함 ※ 단, 동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2번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2개의 학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학위만 평정대상으로 함 • '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교육부 지침(교원정책과-3378, '04.12.29.)에 따라 1개의 석사학위 취득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인정함 -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취득학위 논문: 불인정 - 학위취득 실적과 연구대회 실적 동일년도 사용 가능 -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는 제외 ※ 현직교원이 소속기관장(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간대학원을 수강한 후 취득한 학위나 유학휴직(출국)이외의 방법으로 국외대학(원) 수강 후 취득한 학위 등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는 규정상 평정대상에서 제외함(특히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는 출국증명서등 증빙서류검토, 교육부등록여부 확인하고,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함) 	구 분	평 정 점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1년에 1편에 한함)	입상등급	전국규모	사·도규모	공동작	1등급	1.50점	1.00점	2인공동 7할	2등급	1.25점	0.75점	3인공동 5할	3등급	1.00점	0.50점	4인이상공동 3할	제36조의 규정 및 제37조제3항에 의한 학위논문	박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00점	석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0점	<p>승진규정제34조</p> <p>승진규정제35조1항</p> <p>승진규정제36조</p> <p>승진규정제37조</p> <p>승진규정제36조</p> <p>교육부교정81801-427 (1999.5.6.)</p> <p>교육부교발-1003 (2008.5.20.)</p>
구 분	평 정 점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1년에 1편에 한함)	입상등급	전국규모	사·도규모	공동작																													
	1등급	1.50점	1.00점	2인공동 7할																													
	2등급	1.25점	0.75점	3인공동 5할																													
	3등급	1.00점	0.50점	4인이상공동 3할																													
제36조의 규정 및 제37조제3항에 의한 학위논문	박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00점																													
	석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0점																													



구 분	내 용	규 정
	<p>② 도규모의 연구대회(경상남도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사 영어말하기 수업연구대회 • 특수교육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중전 특수교사 학습지도 연구대회) • 초등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중전 교실수업개선 학습지도 연구대회) • 유치원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중전 유치원교사 학습활동 연구대회)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 교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 경남학생창의력페스티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 전국영농학생(FFK)전진대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 기능경기대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 상업경진대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 농업교사 현장연구발표대회 • 경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 독서교육실천 연구대회 • 학교체육 연구대회 •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 창의·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인성, 양성평등, 평생, 야영, 청소년단체활동 실천사례 등 5부문) • 경남교육정보화연구대회 • 경남교육방송 연구대회 • 경남교육자료전 • 경남과학전람회 • 경남과학전람회 학생작품 지도논문 연구대회 • 전국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과학전람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 초등교육 현장교육연구논문대회 • 경남현장교육연구대회 • 경남초등교사 예능 연구대회 •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 및 도지정과제 연구대회 • 경남 사도실천상 교육발전연구 실천대회 • 교과교육연구 개인연구 발표대회 • 특별연구교사 연구대회 • 학급경영 연구대회 • 열린교육사례 연구대회 • 에듀넷 소프트웨어('99년) 연구대회 • 유치원교사 동화구연 연구대회 <p>※ 연구실적 불인정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 협조로 주최된 경우 • 사회단체주관 응변대회(교육감 상장) (교육부장관, 사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주최한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 아님) • 한국서화예술대전 연구실적(후원, 협조임) • 교육자료사 주최 전국 교육자료 대상 <p>※ 연구실적 인정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재활문고 읽기 운동 및 심신 장애인 생활수기 인정 ('86.4.21.자 교육부-도-학교로 공문 시달) • 진주교대 초등학교 교사 현장연구대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연도만 인정(관련공문 사본 첨부) 	<p>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8-6(2018.2.19.)호</p>



구 분	내 용	규 정
	<p>사. 직무연수 인정 기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유사과정 중복: (원칙) 2강좌 중 1강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해당 연수생이 동일·유사과정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연수생 입증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강좌명이 동일·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 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 ※ 적용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1.1. 이후 이수하는 연수이수실적(연수종료일 기준) 2013.1.1. 이후 이수한 연수와 2012.12.31. 이전에 이수한 연수와 중복도 불인정 ■ 연수기간 중복(2014.1.1.부터 변경):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기간 동안 2개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기간 중에 다양한 원격연수과정 수강 가능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기존에는 학기 중 기간 중복의 경우 1강좌만 인정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2강좌만 허용하였으나,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 ※ 기존의 기간 중복 금지는 2013.12.31.까지 받은 연수에 적용하고, 2014. 1월 이후 “개설” 되는 연수과정부터 기간 중복 금지 폐지 ※ 같은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사례: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 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폐지된 기존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중 기간 중복: (원칙)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를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 이하인 경우 2강좌 모두 인정(기간 중복이 1/4 초과인 경우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1)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는 중복 허용(2012.3.1.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이수증 좌측상단에 “중복허용” 문구를 삽입하거나, ② 교육청에서 이수번호 “직무” → “직무(중복허용)” 등 방법으로 별도 표기 ※ (예시) 본래 매주 토요일 특수분야 지정된 학교단위 연수를 받는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15시간 집합연수를 한 경우, 예외 적용 ○ (예외2) 휴업일(토·일 등 주말 포함)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허용(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과정명에 휴업일 실시 여부를 표기하고, 해당 교원의 소속 학교장이 지명번호 부여할 때 확인: (예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제(주말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기간 중복: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 <p>아. 전문상담교사(초등) 양성과정의 성적은 초등학교 교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만 자격연수로 평정받을 수 있으며, 전문상담교사(특수) 양성과정의 성적은 특수학교 교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대상자 명부작성 시에만 평정받을 수 있음</p> <p>자. 논문 없는 학위취득(전문학위 등) 실적: 평정대상이 됨</p> <p>차. 연구대회 입상실적 인정 시기: 연구 연도 및 입상 연도가 다를 경우 입상 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함</p>	<p>교원인사과-8500 (2013.4.4.)</p> <p>교육부 교육복지연수과 -5960(2013.11.14.), -6011(2013.11.15.) 경상남도교육청 중등 교육과-12396(2013. 11.25.)</p> <p>교육부교정7000-211 (2001.3.26.) 교육부교정85010-667 (2001.8.31.) 교육부교정81801-1042 (1998.12.2.)</p>



5. 가산점평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구 분	내 용	규 정
1. 평정시기 평정기간	<p>가. 당해(동등급) 직위에서의 실적에 한함. 다만, 전직되기 이전의 실적 인정은 다음과 같음<교육전문직원 경력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실적에('94.9.22. 이후 임용자)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함></p> <p>※ 교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사의 직위에서의 가산점 실적 ⇨ 평정대상이 아님(교장승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 조정 시기에 실시 <p>나. 가산점평정 경우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직위해제, 정직을 뺀 잔여기간만 계산함 • 경력평정 제한기간에 유의: 제4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산점 평정경우,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을 뺀 잔여기간만 계산 <p>다. 임용권자가 임용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별표1의 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제교사(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종전의 임시교사, 임시강사 등 포함)가 동규정 제41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점을 평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p> <p>라.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단위로 계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구분하여 평정 	<p>승진규정제41조</p> <p>교육부교정-1147 (2007.9.20.)</p> <p>승진규정제41조7항 인사관리규정제11조</p> <p>승진규정제41조4항</p> <p>교육부교정07000-107 (2000.1.29.)</p> <p>승진규정제41조7항</p>
2. 가산점평정 가. 공통가산점	<p>가. 교육부장관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근무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0.021점, 1일 0.0007점(상한점 1.25점) (1개월 0.018점, 1일 0.0006점(상한점 1점)): 시행일 2022.4.1. • 교대부설, 교육실습협력학교 평정기간: '73.1.1.부터 <p>나.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0.021점, 1일 0.0007점(상한점 0.75점) (1개월 0.015점, 1일 0.0005점(상한점 0.5점)): 시행일 2022.4.1. <p>다. 직무연수 이수 실적: 상한점 1.0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1학점(15시간)당 0.02점으로 평정하며, 평정 기간마다 0.08점의 범위 내에서 평정함 •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실적 평정으로 사용한 직무연수는 교육성적 평정의 직무연수성적으로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음 	<p>승진규정제41조3항 1,2,3호 (개정 2012.11.16.)</p> <p>※ 직무연수 이수실적은 해당 연수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평정함</p>



구 분	내 용	규 정
	<p>※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동일한 경우 연간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45시간) 인정받고 잔여 7시간은 절사하며 다음해로 이월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된 연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성적평정 중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된 학위는 교원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함(중복불가) • 자격 취득의 학점화된 연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가산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으로 사용한 자격증은 교원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함(중복불가) • 연수시간 인정은 이수증 원본에 기재된 시간으로 하되 기록이 없는 경우는 1일 6시간으로 함 • 보이·결스카웃 관련 연수는 나이스 인사기록에 등재시간과 관계 없이 1일 6시간, 1박 3시간 추가하여 인정. 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6시간만 인정 (예) 2박 3일인 경우: 18시간 + 6시간 = 24시간 <p>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계약직교원, 유치원교원 해당사항 없음 • 승진 가산점 부여 점수: 연 단위로 1회 0.1점, 개인 통산 1점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유공교원을 대상으로 1년간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관련 실적을 심사하여 가산점을 부여 • 승진 가산점 부여 대상자 인원: 학교별 교원정원의 40%(소수점 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정원은 매년 3.1. 도교육청에서 배정한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함 (단 3.1.이후 정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학교별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함) - 학교별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생활지도부장 등)의 선정 비율이 선정된 자 총수의 80% 이상(소수점 절상) - 교원정원이 10명이하인 학교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이외의 교원을 1명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본교, 분교 별도 적용 	<p>교원인사과 -8500(2013.4.4.)</p> <p>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교육부 예규47호) 제4조, 제5조</p> <p>학점화된 직무연수의 가산점 처리 관련 질의회신(교육부교정 -13554(2012.11.13.))</p> <p>승진규정제41조3항4호 (개정 2016.12.30.)</p> <p>학교폭력예방및해결 기여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시행 지침 (2013.2.25.)</p>



구 분	내 용	규 정																																									
<p>나. 선택가산점 1) 도서·벽지학교</p>	<p>가.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상한점: 2.0점 나. 평정기간(당해직위, 지정기간 내) ① 도서·벽지로 지정된 이후('67.4.1.)부터 ② 해지된 경우: 해제되기 전까지만 인정 다. 평정점: 다음 표에 따라 시기별로 평정</p> <table border="1" data-bbox="448 592 1156 886"> <thead> <tr> <th rowspan="2">급 지</th> <th colspan="2">'97.2.28. 이전</th> <th colspan="2">'97.3.1.~ '97.12.31.</th> <th colspan="2">'98.1.1. 이후</th> </tr> <tr> <th>1개월</th> <th>1일</th> <th>1개월</th> <th>1일</th> <th>1개월</th> <th>1일</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0.125</td> <td>0.00417</td> <td>0.084</td> <td>0.00280</td> <td>0.042</td> <td>0.00140</td> </tr> <tr> <td>나</td> <td>0.096</td> <td>0.0032</td> <td>0.068</td> <td>0.00227</td> <td>0.034</td> <td>0.00113</td> </tr> <tr> <td>다</td> <td>0.066</td> <td>0.0022</td> <td>0.050</td> <td>0.00167</td> <td>0.025</td> <td>0.00083</td> </tr> <tr> <td>라</td> <td>0.037</td> <td>0.00123</td> <td>0.034</td> <td>0.00113</td> <td>0.017</td> <td>0.00057</td> </tr> </tbody> </table> <p>※ 2006.3.1.이후 타 시·도 전입자는 1998.1.1. 이후의 평정점에 준하여 평정함(상한점 2.0점) ※ 2016.3.1. 이후 타 시·도 전입자는 도내 '라급지'에 준하여 평정 단, 타 시·도 교류(교환, 파견)자는 2016.3.1. 이후 실적 불인정 라. 학교별 지정, 해제일자(급지포함): 도서·벽지학교현황 참조 마. 급지변경: 변경급지일로 현행 가산점으로 평정 바. 타 도에서 근무한 도서·벽지 근무경력(교육감(교육장)의 경력 확인서 제출(도서·벽지지정 년월일, 등급, 학교 소재지명 기록) 사.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94.9.22.이후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도서·벽지 가산점평정(단, 교육전문직 가산점과 중복평정 불가)</p>	급 지	'97.2.28. 이전		'97.3.1.~ '97.12.31.		'98.1.1. 이후		1개월	1일	1개월	1일	1개월	1일	가	0.125	0.00417	0.084	0.00280	0.042	0.00140	나	0.096	0.0032	0.068	0.00227	0.034	0.00113	다	0.066	0.0022	0.050	0.00167	0.025	0.00083	라	0.037	0.00123	0.034	0.00113	0.017	0.00057	<p>승진규정41조제5항1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1982.3.31.)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개정2010.8.23.) 제5조1항 초등교육과-19167 (2015.12.17.)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교직200-12(1983.1.13.)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 규정 고시 제2018-11호 (개정 2018.7.17.) 승진규정제41조5항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개정 2010.8.23.)제5조 제5항</p>
급 지	'97.2.28. 이전		'97.3.1.~ '97.12.31.		'98.1.1. 이후																																						
	1개월	1일	1개월	1일	1개월	1일																																					
가	0.125	0.00417	0.084	0.00280	0.042	0.00140																																					
나	0.096	0.0032	0.068	0.00227	0.034	0.00113																																					
다	0.066	0.0022	0.050	0.00167	0.025	0.00083																																					
라	0.037	0.00123	0.034	0.00113	0.017	0.00057																																					
<p>2) 준벽지학교</p>	<p>가. 상한점: 0.6점 ① 준벽지학교로 지정('14.1.1.)된 이후부터 ② 해제된 경우: 해제되기 전까지만 인정 나. 평정기간: '14.1.1부터 적용 다. 경력점: 월0.010점(1일 0.00033점) 라. 도서·벽지 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과 택일(합산불가) 마. 교육지원청의 인사관리기준에 준벽지학교 근무연한 기재</p>																																										
<p>3)한센병 환자 자녀학교학급</p>	<p>가. 상한점: 1.0점 (특수학교(급) 평정점과 합산하여 1.7점 초과 불가) 나. 평정기간: 2011.2.28.까지의 근무실적에 한함 ① 학생전체가 나환자자녀인 학교(분교포함): 개교이후부터 ② 나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 '72.3.1.이후부터(학급개설이후) 다. 평정점: 1월마다 0.018점, 1일 0.0006점 라. 한센병 환자 자녀 지도수당 지급대상인 학급담임 마. 2001년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초등만 해당됨)</p>																																										



구 분	내 용	규 정																				
<p>4) 특수학교·학급</p>	<p>가. 상한점: 1.00점(한센병 가산점과 합산하여 1.7점 초과불가) 나. 평정대상 학교 및 기간 ① 학교: 개교 이후</p> <table border="1" data-bbox="435 477 1149 629"> <thead> <tr> <th>학교명</th> <th>개교년월일</th> <th>학교</th> <th>개교년월일</th> </tr> </thead> <tbody> <tr> <td>경남혜림</td> <td>'69.3.1.</td> <td>김해은혜</td> <td>'02.9.1.</td> </tr> <tr> <td>진주혜광</td> <td>'81.3.1.</td> <td>통영잠포</td> <td>'08.3.1.</td> </tr> <tr> <td>창원천광</td> <td>'85.6.1.</td> <td>양산희망</td> <td>'11.3.1.</td> </tr> <tr> <td>경남은광</td> <td>'96.3.1.</td> <td>거창나래</td> <td>'19.3.1.</td> </tr> </tbody> </table> <p>② 학급: 개설이후('73.3.1.) ③ 2017.1.1.부터 특수학교 근무경력 및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의 가산점은 특수교사에게만 부여 함(유, 초등 일반교사 및 일반교사 임용 후 특수교사 자격취득자(중복자격 교사)는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단서조항신설 2014.1.23.> 다. 평정점 • 특수학교: 1월마다 0.018점, 1일 0.0006점 • 특수학급: '94.9.22.이후 임용자는 1월마다 0.009점, 1일0.0003점 ※ '94.9.22. 개정령 시행당시 이미 특수학급을 담임한 자와 '94.9.22. 이전에 특수학급을 담당하여 계속근무한 자는 '95.2.28.까지 1월마다 0.018점, 1일 0.0006점</p>	학교명	개교년월일	학교	개교년월일	경남혜림	'69.3.1.	김해은혜	'02.9.1.	진주혜광	'81.3.1.	통영잠포	'08.3.1.	창원천광	'85.6.1.	양산희망	'11.3.1.	경남은광	'96.3.1.	거창나래	'19.3.1.	<p>승진규정제41조5항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개정 2010.8.23.)제5조6항</p> <p>승진규정제41조5항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개정 2014.1.23.)제5조6항</p>
학교명	개교년월일	학교	개교년월일																			
경남혜림	'69.3.1.	김해은혜	'02.9.1.																			
진주혜광	'81.3.1.	통영잠포	'08.3.1.																			
창원천광	'85.6.1.	양산희망	'11.3.1.																			
경남은광	'96.3.1.	거창나래	'19.3.1.																			
<p>5)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실험·꿈나르미학교</p>	<p>가. 상한점: 1.25점(교육부장관지정 연구학교와 합산) 나. 평정기간 ① 연구·시범학교: '73.1.1.이후부터 ② 급식시범학교: '79.1.1.부터 '82.3.19.까지 다. 평정점: 1월마다 0.015점(1개월 미만: 1일 0.0005점) • 교육실습협력학교 - 특수교원: 월 0.015점(1개월 미만 1일 0.0005점) - 초등교원: 월 0.017점(1개월 미만 1일 0.00057점), • '07.2.28.이전: 월 0.021(1개월 미만 1일 0.0007점) • 초등 상한점: 1.25점(교육대학부설학교 가산점 포함) - 유치원 교원: 월 0.017점(1개월 미만 1일 0.00057점) • 유치원 상한점: 0.72점 • 꿈나르미학교: 월평정점 0.015점(1일 0.0005점)<신설 2012.7.11.> 라. 대상학교(급식시범학교 포함): 붙임자료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급식시범학교는 제외) 마. 평정점 부여 인원: 학교지정의 목적달성에 직접 이바지하였다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자가 인정하는 자('88학년도 이후부터 인원 제한 없고, "가산점평정자료"(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함) ※ '87학년도까지는 - 18학급미만=교감, 교무, 연구 + 2명 이내 - 36학급미만=교감, 교무, 연구 + 3명 이내 - 36학급이상=교감, 교무, 연구 + 4명 이내 ※ 기간제교사도 연구·시범·실험학교 가산점 부여 가능 ※ 초등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시 유치원교사 인정 불가 ※ 운동종목시범학교는 가산점명부 등재된 자에 한함('05,'06,'07,'09년) 바. 교육감지정연구학교,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육실습대용학교, 꿈나르미학교 가산점은 구분하여 평정하고 교육부장관지정연구학교 가산점과 합산하여 상한점 1.25점 초과 불가</p>	<p>승진규정제41조5항 교직 200-12(1983.1.13.)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개정 2010.8.23.)제5조7항</p> <p>초등01110-777 (1988.6.24.)</p> <p>법무810-53 (1976.2.9.) 교원07000-439 (1999.12.20.)</p>																				



구 분	내 용	규 정						
6) 보직교사 (주임교사)	가. 상한점: 1.25점 나. 평정대상: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평정점: 1월마다 0.021점, 1일 0.0007점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개정2010.8.23.) 제5조3항						
7) 장학사 교육연구사	가. 상한점: 0.75점 나. 평정점: 1월마다 0.015점, 1일 0.0005점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4항						
8) 교육감소속 교육기관 파견근무	가. 상한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과 합산하여 0.75점 나. 산촌유학교육원: 월 0.021점, 일 0.0007점, 상한점 0.5점 다. 교육감소속교육기관(연수, 연구, 수련, 행정) : 월 0.0105점, 일 0.00035점, 상한점 0.25 라. 우포생태교육원: 월 0.015점, 1일 0.0005점 상한점 0.3점 (2010.3.1.부터 적용, 이미 파견중인 자는 2009.5.14.부터 적용) 마. 한국방송공사(EBS): 월 0.017점, 1일 0.00057점 상한점 0.4(2012.3.1.부터 적용)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제9항 교육감소속 교육기관 (산촌유학교육원포함) 파견근무 2002.11.부터 적용 한국방송공사(EBS)파견 근무 2012.3.1.부터 적용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p>가. 평정대상 자격증</p> <table border="1" data-bbox="410 881 1170 1350"> <thead> <tr> <th data-bbox="410 881 1094 920">대 상 자 격</th> <th data-bbox="1094 881 1170 920">평정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0 920 1094 1161">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및 20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단일등급 자격증(구1급)<개정 2012.10.23.> 4.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td> <td data-bbox="1094 920 1170 1161">0.5점</td> </tr> <tr> <td data-bbox="410 1161 1094 1350">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 3.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 4.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자격증 </td> <td data-bbox="1094 1161 1170 1350">0.3점</td> </tr> </tbody> </table>	대 상 자 격	평정점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및 20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단일등급 자격증(구1급)<개정 2012.10.23.> 4.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0.5점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 3.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 4.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자격증	0.3점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8항
대 상 자 격	평정점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및 20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단일등급 자격증(구1급)<개정 2012.10.23.> 4.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0.5점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 3.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 4.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자격증	0.3점							
10) 농어촌 지역학교	<p>나.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 인정</p> <p>가. 평정 시기별로 평정함, 상한점 1.25점</p> <p>① '95.3.1.~'98.2.28.: 월 0.015점, 1일 0.00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점인정자명부 등재자만 가능(주민등록, 실거주) • '97.3.1.부터 도서·벽지와 농어촌교육진흥지역근무 택일 불가 (그 이전에는 가능함) <p>② '98.3.1.~'08.12.31.: 월 0.015점, 1일 0.00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3.1.부터 당해지역 학교 근무자 전원 가산점 부여 <p>③ '09.1.1.~'13.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역: 도서·벽지 제외한 읍·면지역 • 나지역: 기지정된 동지역, 매년 1월1일 기준 인구 7만 이상인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장유('13.6.30.까지), 마산내서 소재 전 학교 나지역 • '09.1.1.~'13.12.31. 평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역 월 0.015점, 1일 0.0005점 - 나지역 월 0.012점, 1일 0.0004점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2항						



구 분	내 용	규 정
10) 농·어촌 지역학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소체지도교사 • 영재교육지도교사 • 발명교실지도교사 • 청소년단체지도교원 • 경로효행상 수상 교육공무원 • 학력향상우수 학교유공교사 	④ '14.1.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역: 군의 면지역 학교 • 나지역: 읍지역, 시의 면지역 학교 • 다지역: 기 지정된 동지역, 매년 1월1일 기준 인구 7만 이상인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평정 • '14.1.1. 이후 평점점: 가지역 월 0.018점, 1일 0.0006점 나지역 월 0.015점, 1일 0.0005점 다지역 월 0.012점, 1일 0.0004점 (교(원)감은 가,나,다 구분없이 1개월 0.012점, 1일 0.0004점: 시행일 2022.3.1.) ※ 타 도 전입자: 도내 '다지역'에 준하여 평정 가. 2005.3.1. 이후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초등학교 학생의 지도자: 연 0.2점, 상한점 0.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학년도 동일 실적으로 획득한 연구실적평점점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2006.3.1. 이후 영재교육원 강사(발명영재교육 지도교사 제외)로 임명되어 담임을 맡고 연 34시간 이상 영재교육을 지도한 자: 연 0.1점, 상한점 0.2점. 2013.3.1. 이후 월평정점 0.0084, 일평정점 0.0003 다. 2006.3.1. 이후 발명영재교육 지도교사(발명영재학급 연 34시간 이상 수업, 실적물전시회 연1회 이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동상 이상(2017년부터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을 직접 지도한 지도교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을 획득한 학생을 직접 지도한 지도교사 포함): 연 0.1점, 상한점 0.2점, 2013.3.1. 이후 월평정점 0.0084, 일평정점 0.0003 ※ 개정규정은 2014.3.1. 적용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2013.12.31. 이전은 동상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학년도 동일 실적으로 획득한 연구실적평점점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라. 2010.3.1. 이후 청소년단체 지도 교원: 연 0.04점(월 0.0034점), 상한점 0.08점(2013.3.1.~2014.12.31.까지의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점평정 기준 시기(2010.3.1.)부터 3년 이상(비연속 허용) 청소년단체에 등록되고, 학교 교무부장상의 청소년단체를 3년 이상(비연속 허용) 직접 지도해야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등록 후 경남교육청 주관 야영수련직무연수 또는 해당 청소년단체 지도자연수(경남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에 한함)를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단, 원격연수는 제외), 소속학교의 청소년단체 대(단)원을 연간 100시간 이상 지도한 교원으로 한정하고, 지도시간 인정범위와 청소년단체 가입학생수별 가산점부여 지도교원 수는 아래와 같음 [지도시간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1명당 최소 10명 이상의 가입학생을 지도한 경우 지도시간 인정(지역 및 중앙 단위 행사도 인정) - 숙박포함 1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32시간까지 지도시간 인정 - 학교단위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회의(연간지도계획에 의거한 회의) 및 청소년단체 지역(지구)·중앙 단위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도 지도시간으로 인정함(1일 최대 2시간이내, 연5회까지 인정함) - 지도시간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초등교육과-19167 (2015.12.17.)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10항



구 분	내 용	규 정																	
11) • 전국소체지도교사 • 영재교육지도교사 • 발명교실지도교사 • 청소년단체지도교원 • 경로효행상 수상 교육공무원 • 학력향상우수 학교유공교사	<p>[다음의 경우 지도시간에서 제외] -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시간, 특별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간, 순수 청소년 단체 활동이 아닌 시간</p> <p>[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원 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단체별 가입학생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도교원배정 가능인원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산점부여 지도교원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50명 (단, 6학급 이하 학교 10명~5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학생수는 단체별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1명~8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1명~12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1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body> </table> <p>※ 평정기간에 따른 평정점 - 2013.3.1.~12.31.(4년차 평정점 0.034) - 2014.1.1.~12.31.(4년차 평정점 0.034, 5년차 평정점 0.04)</p> <p>마. 2010.3.1.자 이후 경상남도교육감이 시상하는 「경로·효행상」 을 수상한 교육공무원: 1회에 한해 0.1점(2012.2.29.까지의 실적에 한함)</p> <p>바. 2010.3.1.자 이후 학력향상우수학교 유공교사: 연 0.05점 (월 0.00417점), 상한점(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기준일(당시 12.31.) 현재 학력향상 공적에 따라 학교급별 전체 국·공립학교수의 20% 이내의 학력향상우수학교(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우수학교수 산정) 교육감표창을 받은 학교의 교사 정원(기간제교사 제외)의 25%까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가산점 부여 인원 산정하되, 반올림을 해도 1명이 되지 않는 학교도 1명에게 부여) 가산점 부여 <p>※ 개정규정은 2014.3.1.적용(평정기간: '10.3.1.~'13.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파견근무경력과 본 가산점이 중복될 시 택일하며, 학년도의 전 기간(3월1일~다음해 2월말일) 파견근무교사는 본 가산점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휴직 및 파견 등으로 현임교에서 학생을 지도하지 않은 기간은 가산점 부여 기간에서 제외함 (교감의 30학급 이상 학교 근무 경력: 1개월 0.01점, 1일 0.00033점, 시행일: 2021.3.1. 이후 실적부터) <p>사. 위 6개 영역의 합산점: 0.5점 초과 불가</p>	청소년단체별 가입학생 수	지도교원배정 가능인원수	가산점부여 지도교원수	비고	20~50명 (단, 6학급 이하 학교 10명~50명)	2	1	※ 학생수는 단체별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함	51명~80명	3	2	81명~120명	4	2	121명 이상	5	2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10항
청소년단체별 가입학생 수	지도교원배정 가능인원수	가산점부여 지도교원수	비고																
20~50명 (단, 6학급 이하 학교 10명~50명)	2	1	※ 학생수는 단체별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함																
51명~80명	3	2																	
81명~120명	4	2																	
121명 이상	5	2																	
12)특수교육센터 근무	<p>가. 특수교육센터 근무 경력: 상한점 0.4점(2017.3.1.이후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 후 3년 이내 연속근무 경력 중 최초 1년 공제 후 월0.0084점, 일0.0003점 부여 <p>※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순회)교사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재외국민교육파견, (선택)교육기관 파견근무와 합하여 0.75점 초과 불가 																		
3. 중복 가산점의 택일	가. 동일평정기간 중 2개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 중복의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별표3, p.31) 참조	승진규정제41조6항																	
4. 평정자 확인자	• 경력평정과 같음	인사관리규정 5조 및 별표																	



[별표3]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평정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6항)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6조제2항)

동일 기간 중복 경력(택일)		
번호	종별	중복불가 가산점
①	연구학교 유공 경력	교육실습협력학교 유공 경력, 꿈나르미학교 유공 경력
②	보직교사 경력	한센병환자자녀 학교(급)담당 경력
③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경력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근무 경력
④	도서·벽지 근무경력	한센병환자자녀 학교(급)담당 경력,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농어촌진흥학교 근무 경력, 장학(교육연구)사 경력, 준벽지학교 근무 경력
⑤	한센병환자 자녀학교 (급) 담당 경력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근무 경력, 특수학교(급)담당경력, 농어촌진흥학교 근무 경력, 보직교사 경력
⑥	특수학교근무 경력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근무 경력, 농어촌진흥학교 근무 경력, 준벽지학교 근무 경력
⑦	특수학급담당 경력	보직교사('01.12.31.까지 중복 불가),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근무 경력, 한센병환자 자녀학교(급) 담당 경력, 농어촌진흥학교 근무 경력, 준벽지학교 근무 경력
⑧	농어촌진흥학교 근무 경력	특수학교(급)담당경력,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근무 경력, 한센병환자 자녀 학교(급) 담당 경력, 준벽지학교 근무 경력, 30학급 이상 학교 근무 교감 경력
⑨	<삭제>	
⑩	준벽지학교 근무경력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도서·벽지 근무경력, 농어촌진흥학교 근무경력, 교육 감소속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 '97.3.1.부터 도서·벽지, 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 택일 불가(이전에는 가능, 이후는 지정이 되어야 가능)



6.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48조

구 분	내 용	규 정
1. 명부의 작성	가. 승진후보자 명부는 교(원)장, 교(원)감, 장학(교육연구)관으로 승진될 직위별로 작성	승진규정제40조1항
	나. 경력평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 (교장·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의 경우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 합산한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고점자 순으로 등재	승진규정제40조2항
	다.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 <서식19>(p.103) 교감승진후보자명부: <서식18>(p.102) ※ 경력 2년 이상인 장학(교육연구)사는 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제출(전원)	
2. 명부의 작성 시기	가.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승진규정제43조
	나. 평정기간은 '21.2.28.까지임	
3. 동점자의 순위 결정	가.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 다음 각호에 따라 선 순위자 결정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②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③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승진규정제45조1항
	나. ①~③에 의거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명부작성권자가 결정	승진규정제45조2항
4. 명부의 제출	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는 작성시기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승진규정제46조
	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	
	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경우 그 조정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음	
	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	승진규정제47조
마. 승진임용의 제한(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규정에 해당될 경우: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5. 명부순위의 공개	가.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함	승진규정제48조



7. 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48조

구 분	내 용	규 정
<p>1. 명부의 작성</p>	<p>가. 자격연수대상자 명부는 교(원)장, 교(원)감 직위별로 구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자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 경력평정 70점, 근무성적평정 100점, 연수성적평정 18점 등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에 가산점을 가산한 점수의 고점자 순위로 등재 • 교감자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순위명부작성 → 면접고사 → 연수대상자 확정 - 경력평정 70점, 근무성적평정 100점, 연수성적평정 30점 등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에 가산점을 가산한 점수의 고점자 순위로 등재 	<p>승진규정제40조1항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시행규칙제4조제3항,5항,7항</p> <p>승진규정제40조2항</p>
<p>2. 명부의 작성 시기</p>	<p>가. 교(원)장자격 연수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일: 매년 3월 31일</p> <p>나. 교(원)감자격 연수대상자 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연수대상자선정 응시순위명부 작성 기준일: 매년 3월 31일 • 자격연수대상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고사 시행 후 <p>다. 평정기간은 '21.2.28.까지임</p>	<p>승진규정제43조</p>
<p>3. 동점자의 순위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시의 방법에 준함 	<p>승진규정제45조</p>
<p>4. 교(원)감 자격연수 한국사 관련 (2018.1.1.부터 시행)</p>	<p>가. 한국사 능력 검정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일: 교(원)감 과정 응시 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일 현재 • 인정범위: 순위명부 작성일 기준 5년 이내(16.4.1.~'21.3.31.)에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이상)에 합격한 경우 <p>나. 한국사 연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일: 교(원)감 과정 응시 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일 현재 • 연수기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 • 인정범위: 2015.4.20.부터 순위명부 작성일 기준 5년 이내 (16.4.1.~'21.3.31.)에 합하여 60시간 연수 이수자(원격, 집합, 혼합 포함. 인정 연수목록 확인-pp.69~70) 	<p>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6항</p> <p>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152(2018.3.8.)</p>



2021.3.31. 승진·자격연수 후보자 평정점 배점 일람표

평정 내용		평정 만점	유의점																									
경력 평정점		70점	총 20년간 평정																									
근무성적 평정점		100점	- 교사: 2016, 2017, 2018, 2019, 2020년 중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백 3 (최근 근무성적부터 34%, 33%, 33%) - 교감, 장학(교육연구)사: 최근 3년(최근부터 34%, 33%, 33%)																									
연수성적 평정점	교육 성적	직무연수	18점	10년2개월 이내 60시간이상 1회 성적, 2회 이수실적 단,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등은 6점, 1회 성적(중복사용불가)																								
		자격연수	9점	해당 자격연수																								
	연구실적		3점	전국(1.50점, 1.25점, 1.00점) 박사(3점, 1.5점) 시도(1.00점, 0.75점, 0.50점) 석사(1.5점, 1점)																								
	소 계		30점	교(원)감 /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은 18점																								
공통 가산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1.25점(1.0점)	1월 0.021점, 1월 0.0007점(2022.4.1.부터 1월 0.018점, 1월 0.0006점)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		0.75점(0.5점)	1월 0.021점, 1월 0.0007점(2022.4.1.부터 1월 0.015점, 1월 0.0005점)																								
	직무연수이수실적		1점	연도별 상한점 0.08점(15시간 0.02점)-교육성과와 중복사용 불가																								
	학교폭력에방및대응실적		1점	연 0.1점																								
소 계		4점(3.5점)																										
선택 가산점	도서·벽지학교 근무		2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인정시기</th> <th colspan="4">1월</th> </tr> <tr> <th>가</th> <th>나</th> <th>다</th> <th>라</th> </tr> </thead> <tbody> <tr> <td>~'97.2.28.</td> <td>0.125점</td> <td>0.096점</td> <td>0.066점</td> <td>0.037점</td> </tr> <tr> <td>'97.3.1. ~</td> <td>0.084점</td> <td>0.068점</td> <td>0.050점</td> <td>0.034점</td> </tr> <tr> <td>'98.1.1. ~</td> <td>0.042점</td> <td>0.034점</td> <td>0.025점</td> <td>0.017점</td> </tr> </tbody> </table>	인정시기	1월				가	나	다	라	~'97.2.28.	0.125점	0.096점	0.066점	0.037점	'97.3.1. ~	0.084점	0.068점	0.050점	0.034점	'98.1.1. ~	0.042점	0.034점	0.025점	0.017점
	인정시기	1월																										
		가	나	다	라																							
	~'97.2.28.	0.125점	0.096점	0.066점	0.037점																							
	'97.3.1. ~	0.084점	0.068점	0.050점	0.034점																							
	'98.1.1. ~	0.042점	0.034점	0.025점	0.017점																							
	준벽지		(0.6점)	월 0.010점																								
	한센병환자자녀학교(급)		1.7점	1월마다 0.018점(학급 0.018점, 상한점: 1.0점) (2011.2.28.까지의 근무실적에 한함)	합산하여 1.7점 초과불가																							
	특수학교(급)			1월마다 0.018점(학급 0.009점, 상한점: 1.0점) '94.9.22. 개정령 시행당시 이미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원은 '95.2.28.까지 1월마다 0.018점																								
	연구·시범·실험·꿈나르미학교		1.25점	1월마다 교육부지정: 0.021점, 교육감지정 0.015점 1월마다 교육실습협력(읍, 초등) 0.017점 (특수) 0.015점, 1월마다 교육실습대응학교: 0.021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와 합산하여 1.25점 초과 불가																								
	보직교사(주임교사)		1.25점	1월마다 0.021점																								
	장학사, 교육연구사		0.75점	1월마다 0.015점																								
교육감소속 파견근무		0.75점	· 기관파견: 월0.0105점(상한점 0.25점) · 산촌유학교육원: 월0.021(상한점 0.5점) · 우포생태교육원: 월0.015점(상한점 0.3점) · 한국방송공사(EBS): 월0.017점(상한점 0.4점)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과 합산하여 0.75점 초과 불가 ※(특수)특수교육센터: 월0.0084점(상한점 0.4점) '정규근무'																									
국가기술자격증 정보화관련자격증		0.5점	0.50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구1급) 0.30점: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2,3급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근무		1.25점	1월마다 0.015점 1월마다 0.015점(㉠지역) '95.3.1.~'98.2.28. (가산적인정자면부등제자) 1월마다 0.012점(㉡지역) '98.3.1.~'08.12.31. (해당지역 근무자) 1월마다 0.012점(㉢지역) '09.1.1. 이후 적용 ※ ㉠지역: 읍면지역(도서·벽지 제외) ※ ㉡지역: 기지정된 동지역, 안7만 이상인 읍지역 1월마다 0.018점(㉣지역) '14.1.1. 이후 적용 ※ ㉢지역: 군의 면지역(도서·벽지 제외) 1월마다 0.015점(㉤지역) ※ ㉣지역: 읍지역, 시의 면지역 1월마다 0.012점(㉥지역) ※ ㉤지역: 기지정된 동지역, 매년 1월말 기준 인구 1만 이상인 읍면지역 ※ 교원감: 지역구분없이 월0.012점(2022.3.1. 이후 실적)																									
명부작성권자 인정실적		0.5점	· 체육유공 교원(초등, '05.3.1.부터 적용): 연 0.2점(상한점 0.4점) · 영재교육원 강사('06.3.1.부터 적용): 연 0.1점(상한점 0.2점) 2013.3.1. 이후 월(0.0084), 일(0.0003) · 발명영재교육 지도교사('06.3.1.부터 적용): 연 0.1점(상한점 0.2점) 2013.3.1. 이후 월(0.0084), 일(0.0003) · 청소년단체 지도교원(2013.3.1.~2014.12.31.): 연0.04점(상한점0.08점) · 경로효행 수상 교육공무원(2010.3.1.~2012.2.29.): 1회에 한함, 0.1점 · 학력향상우수학교교육공교사(2010.3.1.부터 적용): 연0.05점(상한점0.5점) · 30학급 이상 학교근무 교감: 월0.01점(2021.3.1. 이후 실적) ※ 동일학년도 동일 실적 중복 불가		합산하여 0.5점 초과불가																							
소 계		9.95점																										
총 평정점		211.95점	교(원)감 /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은 199.95점																									



8. 연구실적 및 가산점평정 관련자료

가. 연구실적

경상남도교육청

구분 \ 연도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03	'04~
학 습 지 도 연 구 대 회		표창	표창	표창	상장 (최우수)	1등급	6.12. (1,2,3)						
학 습 지 도 안 대 회		표창					12.26. (1,2,3)						
새 마 을 수 기					12.5. (최상,차상, 장려)								
교 원 예 능 경 진 대 회			8.20. (특,우,노)							'99~'02까지 미 실시		8.12. (1,2,3)	
복 지 시 설 · 새 교 실				우수교	유공 교원	10.4. (1,2,3)							
과 학 전 시 회 등 급 표 시 부 터		8.19. (특,우,노)											
교 육 자 료 전 시 회 (70년부터)	'70년 부터	8.20. (특,우,노)											
예 체 능 대 회 등 급 분 류	'70년 부터												
교 육 연 구 대 회 등 급 분 류 (72년부터)	'72년 부터												
예 체 능 평 가 연 구 대 회							10.8. (1,2,3)						
체 육 논문				8.16. (최우수,우수)	6.21. (1,2등급)		11.18. (1,2,3)						
서예 공모전					1.29. (최우수,우수)								
평가 문항								12.26. (1,2,3)					
형성평가 문항												(1,2,3 등급)	
현장 연구원									12.22. (1,2,3)				
교육연구단체별입상자										12.31. (1,2,3)			
1종 도서 집필자							5.18.(전국 규모3등급)						

연구 대회 관리 규정 참고 (pp.21 ~22 참고)

※ 1. 같은 작품(동일공적)을 가지고 표창권자를 달리한 둘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평정함(업무연락 '80.1.16.)
 2. 같은 영역(종목)이라도 작품이 다를 때에는 입상된 것 모두 인정함(업무연락 '80.1.16.)
 예: 교원예능경진대회 등
 '78: 서예(한글) } 모두 연구실적 인정 3. 우량상에 등급표시가 함께 된 것은 등급 인정한다.
 '79: 서예(한글)



나. 도서·벽지학교 현황(1)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창원	귀산 (분)	벽지	'78.6.21.(라)		'86.1.16.	폐교일	창 원 군	우산 (송도)	도서	'70.7.1.(라)	'86.1.1.(다)		'91.3.31.	
마산	월포 (저도)	도서	'70.7.1.(라)		'80.9.16.	폐교일		눌차 (수도)	"	'67.4.1.(라)	'89.1.1. 부산편입			
진주	평거 (귀곡)	"	'70.7.1.(라)	'86.1.12.(다)		'97.3.1.		천성	"	'67.4.1.(라)	"			
진	송정 (동지)	벽지	'67.4.1.(다)	'89.9.1.(라)		'98.9.1.		대항	"	'67.4.1.(라)	"			
	대평	"	'71.10.1.(라)	'86.1.1.(다) '89.9.1.(라)		'97.9.1.		천가	"	'67.4.1.(라)	"			
	대평 (신평)	"	'70.7.1.(라)	'86.1.1.(다) '89.9.1.(라)		'98.3.1.		천가 (장항)	"	'67.4.1.(라)	"			
	독산 (가화)	"	'71.10.1.(라)			'98.9.1.		하천	벽지	'86.1.1.(라)				
	독산 (유수)	"	'86.1.1.(라)			'94.3.1.		구산 (구서)	"	'67.4.1.(라)				
	등건	"	'86.1.1.(라)		'89.9.1.	'94.3.1.		반동 (옥계)	"	'69.6.1.(라)				'99.3.1.
	사봉 (부계)	"	'86.1.1.(라)			'93.3.1.		반동 (구북)	"	'70.7.1.(라)				'97.3.1.
	대곡 (마진)	"	'71.10.1.(라)			'98.9.1.		반동 (원진)	"	'67.4.1.(라)				'99.3.1.
	안간 (상미)	"	'73.3.1.(라)			'98.3.1.		반동 (옥곡)	"	'86.1.1.(라)				'99.3.1.
	대곡 (월암)	"	'86.1.1.(라)			'98.9.1.		진전 (낙동)	"	'67.4.1.(라)				'99.3.1.
	명석 (계원)	"	'86.1.1.(라)			'97.9.1.		봉강	"	'70.7.1.(라)		'73.3.1.		
	대온	"	'86.1.1.(라)			'95.3.1.	반동 (계도)	도서	'67.4.1.(라)		'76.11.17.	폐교일		
	양	금곡 (검안)	"	'89.9.1.(라)			'97.9.1.	충무	평림	벽지	'68.5.1.(라)		'86.1.1.	'98.9.1.
반성 (남산)		"	'89.9.1.(라)			'94.3.1.	통 영	원량 (국도)	도서	'67.4.1.(다)	'68.5.1.(나) '79.2.1.(가)		'93.3.1.	
수곡 (사곡)		"	'89.9.1.(라)			'93.3.1.		원량 (갈도)	"	'68.5.1.(나)	'79.2.1.(가)		'96.4.25.	
한평		"	'86.1.1.(라)		'01.1.8.			노대 (두미)	"	'67.4.1.(다)	'68.5.1.(나) '86.1.1.(가) '89.9.1.(나)		'99.3.1.	
수곡 (원계)		"	'86.1.1.(라)			'94.3.1.		원량 (두남)	"	'67.4.1.(다)	'68.5.1.(나) '86.1.1.(가) '89.9.1.(나) '01.1.8.(가)		'14.3.1.	
송정		"	'86.1.1.(라)		'89.9.1.	'09.3.1. 지수초로 통폐합		하소 (소매물도)	"	'67.4.1.(다)	'68.5.1.(나) '86.1.1.(가) '89.9.1.(나)		'96.3.1.	
진 해		명동 (우도)	도서	'67.4.1.(라)	'86.1.1.(다)			'99.3.1.	옥동 (초도)	"	'68.5.1.(나)			'96.3.1.
	응천 (연도)	"	'67.4.1.(라)	'86.1.1.(다) '01.1.8.(나) '05.3.1.(다)		'14.3.1.		원량 (봉도)	"	'67.4.1.(다)	'71.10.1.(나)		'93.3.13.	
	응천 (수도)	"	'67.4.1.(라)	'86.1.1.(다)		'12.3.1.	원량 (양유)	"	'67.4.1.(다)	'68.5.1.(나)		'98.9.1.		



도서·벽지학교 현황(2)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영	월량 (도덕)	도서	'67.4.1.(다)	'68.5.1.(나)		'05.3.1.	영	산양 (곤리)	도서	'67.4.1.(다)					
	월량 (납도)	"	'67.4.1.(다)	'71.10.1.(나)		'95.7.5.		산양 (학림)	"	'67.4.1.(라)	'86.1.1.(다) '01.1.8.(나)			'20.3.1.	
	월량 (노대)	"	'67.4.1.(다)	'68.5.1.(나) '89.9.1.(다) '01.1.8.(나)		'12.3.1.		산양 (만지)	"	'67.4.1.(라)	'86.1.1.(다)			'98.3.1.	
	노대 (남노대)	"	'69.6.1.(다)	'71.10.1.(나)		'93.3.13.		산양 (저도)	"	'67.4.1.(라)	'86.1.1.(다) '01.1.8.(나)			'03.3.1.	
	사량 (수우도)	"	'67.4.1.(다)	'68.5.1.(나) '05.3.1.(가)		'08.3.1.		광도 (입도)	"	'70.7.1.(다)				'94.3.1.	
	한산 (매물도)	"	'67.4.1.(다)	'68.5.1.(나) '01.1.8.(가)		'05.3.1.		한산 (추봉)	"	'67.4.1.(다)				'99.9.1.	
	하소 (장사도)	"	'69.6.1.(다)	'71.10.1.(나)		'91.3.1.		하소 (죽도)	"	'67.4.1.(다)				'94.3.1.	
	하소 (가왕도)	"	'67.4.1.(다)	'68.5.1.(나)		'87.10.1.		월평 (해간)	"	'67.4.1.(라)	'86.1.1.(다)				'99.9.1.
	월량 (연화)	"	'67.4.1.(다)	'86.1.1.(나)				월평 (어의)	"	'67.4.1.(다)	'68.5.1.(나) '73.3.1.(라) '86.1.1.(다) '89.9.1.(나)				'03.3.1.
	월량 (우도)	"	'67.4.1.(다)	'86.1.1.(나)		'02.3.1.		산양 (조양)	"	'67.4.1.(라)	'86.1.1.(다) '01.1.8.(나)				'03.3.1.
	지도 (수도)	"	'67.4.1.(라)	'68.5.1.(다) '86.1.1.(나)		'95.3.1.		한산	"	'67.4.1.(라)	'86.1.1.(다)				
	산양 (추도)	"	'67.4.1.(다)	'86.1.1.(나)		'94.3.1.		한산 (좌도)	"	'67.4.1.(라)	'86.1.1.(다)				'98.3.1.
	산양 (동화)	"	'67.4.1.(다)	'86.1.1.(나)		'94.3.1.		한산 (용호)	"	'67.4.1.(라)	'86.1.1.(다) '01.1.8.(나)				'12.3.1.
	도원 (읍도)	"	'67.4.1.(다)	'86.1.1.(나)		'98.3.1.		한산 (염호)	"	'67.4.1.(라)	'86.1.1.(다)				과거교명 (여자) '01.3.1.
	한산 (비진)	"	'67.4.1.(다)	'86.1.1.(나) '89.9.1.(다) '01.1.8.(나)		'12.3.1.		한산 (하소)	"	'67.4.1.(라)	'86.1.1.(다)				'10.3.1.
	월량 (옥동)	"	'67.4.1.(다)	'68.5.1.(나) '86.1.1.(다)		'08.3.1.		한산 (두역)	"	'67.4.1.(라)	'86.1.1.(다)	(두역분교 '91.3.1.)			'03.3.1.
	월량	"	'67.4.1.(다)	'68.5.1.(나) '86.1.1.(다)				두역 (문어포)	"	'67.4.1.(라)	'86.1.1.(다)				'91.3.1.
	사량	"	'67.4.1.(다)					광도 (신애)	"	'68.5.1.(라)			'73.3.1.		'98.3.1.
사량 (내지)	"	'67.4.1.(다)	'89.9.1.(나)		'11.3.1.	화양 (미남)	벽지	'67.4.1.(라)			'89.9.1.		'98.3.1.		
사량 (돈지)	"	'67.4.1.(다)	'89.9.1.(나)		'12.3.1.	산양 (풍화)	"	'67.4.1.(라)							
사량 (양지)	"	'67.4.1.(다)	'05.3.1.(나)		'12.3.1.	도남	"	'67.4.1.(라)					'98.3.1.		
사량 (읍덕)	"	'67.4.1.(다)	'05.3.1.(나)		'12.3.1.	수월	"	'67.4.1.(라)					'99.3.1.		
월평 (지도)	"	'67.4.1.(라)	'68.5.1.(다)		'14.3.1.	벽방	"	'86.1.1.(라)			'01.1.8.				
풍화 (오비)	"	'69.6.1.(다)	'89.9.1.(나)		'98.3.1.	광호	"	'67.4.1.(라)					'99.9.1.		



도서·벽지학교 현황(3)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통영	산양(화양)	벽지	'68.5.1.(라)		'86.1.1.	'07.3.1.	밀양	고정(신곡)	벽지	'67.4.1.(라)			'91.3.1.
	한려(영운)	"	'68.5.1.(라)		'86.1.1.	'21.3.1.		산내남명	"	'86.1.1.(라) '10.3.1.(라)		'89.9.1.	
	산양(연명)	"	'68.5.1.(라)		'86.1.1.	'92.3.1.		안법	"	'86.1.1.(라)			'99.9.1.
	도산(잠포)	"	'89.9.1.(라)			'91.3.1.		연금(남산)	"	'86.1.1.(라)			'98.9.1.
삼천포	삼천포(신수도)	도서	'68.5.1.(라)	'86.1.1.(다)			양양	초동(반월)	"	'86.1.1.(라)			'99.9.1.
	삼천포(늑도)	"	'68.5.1.(라) '01.1.8.(나)	'86.1.1.(다) '01.1.8.(나) '05.3.1.(다)		'06.3.1.		봉황	"	'70.7.1.(라)			'99.9.1.
	삼천포(신도)	"	'69.6.1.(라) '01.1.8.(나)	'86.1.1.(다) '01.1.8.(나)		'13.3.1.		무안(화봉)	"	'67.4.1.(라)			'92.3.1.
	늑도(초양)	"	'69.6.1.(라)	'86.1.1.(다)		'93.3.1.		무안(중산)	"	'86.1.1.(라)			'99.3.1.
	대방(마도)	"	'69.5.1.(라) '01.1.8.(나)	'86.1.1.(다) '01.1.8.(나)		'19.3.1.		청도(화동)	"	'67.4.1.(라)	'86.1.1.(라)	'73.3.1.	'92.3.1.
	실안(저도)	"	'69.5.1.(라)	'86.1.1.(다)		'98.3.1.		인산(두곡)	"	'67.4.1.(라)			'73.3.1.
사천	사동	벽지	'89.9.1.(라)			'99.9.1.	거제	연구	도서	'67.4.1.(라)	'86.1.1.(다)		칠천교명변경
	비토(분)	도서	'67.4.1.(다)	'73.3.1.(라) '86.1.1.(다)		'99.3.1.		승덕(화도)	"	'67.4.1.(다)	'69.6.1.(다) '73.3.1.(라) '86.1.1.(다) '01.1.8.(나)		'10.3.1.
	가천(분)	벽지	'70.7.1.(라)			'99.9.1.		창호(신호)	"	'67.4.1.(라)			'98.9.1.
	완사(은사)	"	'70.7.1.(라)			'94.3.1.		창호	벽지	'67.4.1.(라)	'01.1.8.(다) '11.3.1.(라)		
	곤양(동명)	"	'86.1.1.(라)			'99.9.1.		다대(여차)	"	'76.3.1.(다)			'96.3.1.
	서포(자혜)	"	'86.1.1.(라)			'99.3.1.		명사(다대)	"	'67.4.1.(다)	'68.5.1.(다) '89.9.1.(라)	'01.1.8.	'07.3.1.
	금진	"	'70.7.1.(라)			'99.9.1.		해금강(분)	"	'67.4.1.(다)	'89.9.1.(라)		
김해	신호	"	'71.10.1.(라)	'89.1.1. 부산편입	'89.1.1.		제	덕포	"	'70.7.1.(라)		'89.9.1.	'99.9.1.
	이작(도요)	"	'71.10.1.(라)			'98.3.1.		구조라(망월)	"	'70.7.1.(라)			'98.3.1.
	용산	"	'71.10.1.(라)					구조라(예구)	"	'70.7.1.(라)			'98.3.1.
밀양	안범(감불)	"	'67.4.1.(라)	'68.5.1.(다) '73.3.1.(라) '86.1.1.(다)		'92.3.1.	양양	동부(구천)	"	'86.1.1.(라)		'89.9.1.	'94.3.1.
	산동	"	'10.3.1.(라)					동령(분)	"	'71.10.1.(라)			'99.3.1.
	산동(고례)	"	'67.4.1.(라)	'86.1.1.(다)		'98.9.1.		가배(분)	"	'67.4.1.(라)			'99.9.1.
	산동(사자평)	"	'69.6.1.(라)	'86.1.1.(다)		'96.3.1.		동부(울포)	"	'67.4.1.(라)	'10.3.1.(다)		
	고정(도곡)	"	'78.6.21.(라)			'91.3.1.							



도서·벽지학교 현황(4)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거 제	동부 (학동)	벽지	'67.4.1.(라)			'99.3.1.	의 령	남산 (봉남)	벽지	'71.10.1.(라)			'95.3.1.	
	울포 (쌍근)	"	'71.10.1.(라)			'98.3.1.		가례 (갑을)	"	'67.4.1.(라)			'99.9.1.	
	명사	"	'67.4.1.(다)	'86.1.1.(라)				대의 (모의)	"	'86.1.1.(라)			'94.3.1.	
	법동 (분)	"	'67.4.1.(라)			'99.9.1.		대외 (천곡)	"	'69.6.1.(라)			'90.3.1.	
	둔덕 (상동)	"	'67.4.1.(라)			'98.3.1.		지산	"	'71.10.1.(라)			'99.9.1.	
	송덕 (어구)	"	'71.10.1.(라)			'94.3.1.		지정 (지서)	"	'67.4.1.(라)			'95.3.1.	
	오비	"	'70.7.1.(라)		'01.1.8.			낙서	"	'99.3.1.(라)	'10.3.1.(다) '20.3.1.(라)			
	연초 (명동)	"	'82.3.1.(라)			'92.3.1.		낙서 (정동)	"	'67.4.1.(라)			'99.3.1.	
	하청 (덕곡)	"	'71.7.1.(라)			'98.9.1.		부림 (권혜)	"	'68.5.1.(라)			'94.3.1.	
	장목 (송진)	"	'68.5.1.(라)			'94.3.1.		부림 (묵방)	"	'68.5.1.(라)			'92.3.1.	
	장목 (농호)	"	'69.6.1.(라)			'92.3.1.		화정 (화양)	"	'67.4.1.(라)			'99.3.1.	
	유호 (분)	"	'67.4.1.(라)			'98.3.1.		벽화 (화남)	"	'67.4.1.(라)			'99.3.1.	
	황포	"	'67.4.1.(라)			'96.3.1.		공류	"	'10.3.1.(라)				
	대금	"	'71.10.1.(라)		'89.9.1.	'98.3.1.		공류 (평촌)	"	'86.1.1.(라)			'98.3.1.	
	외포	"	'68.5.1.(라)		'86.1.1.			정곡 (정남)	"	'89.9.1.(라)			'99.3.1.	
	이목	"	'71.10.1.(라)		'73.3.1.	'79.3.1.		부림 (입산)	"	'89.9.1.(라)			'99.3.1.	
	삼룡	"	'71.10.1.(라)		'73.3.1.	'99.3.1.		부림 (봉수)	"	'89.9.1.(라)				
	칠천 (황덕)	"	'69.6.1.(라)	'86.1.1.(다)		'91.3.1.		유곡	"	'05.3.1.(라)				
	일우 (지삼)	"	'67.4.1.(라)	'68.5.1.(다) '73.3.1.(라) '86.1.1.(다)		'94.3.1.		서촌 (옥열)	"	'89.1.1.(라)			'98.3.1.	
	구조라 (내도)	"	'67.4.1.(라)	'68.5.1.(다) '73.3.1.(라) '86.1.1.(다)		'98.9.1.		합 안	대산 (부목)	"	'86.1.1.(라)		'89.9.1.	'98.9.1.
외포 (이수)	"	'67.4.1.(라)	'68.5.1.(다) '73.3.1.(라) '86.1.1.(다) '01.1.8.(나)		'04.3.1.	칠원 (산정)	"		'70.7.1.(라)	'86.1.1.(라)	'82.3.1.	'83.3.1.		
산달 (분)	"	'67.4.1.(라)	'68.5.1.(다) '73.3.1.(라) '86.1.1.(다) '01.1.8.(나)		'03.3.1.	외암 (별천)	"		'71.10.1.(라)	'86.1.1.(라)	'82.3.1.	'89.3.1.		
칠천	"	'67.4.1.(라)	'86.1.1.(다) '05.3.1.(라)			여항 (상미)	"		'71.10.1.(라)	'86.1.1.(라)	'82.3.1.	'88.3.1.		
의령	부림 (백산)	"	'67.4.1.(라)	'86.1.1.(다)		'95.3.1.	여항 (덕천)		"	'71.7.1.(라)	'86.1.1.(라)	'82.3.1.	'88.3.1.	
							군북 (명관)		"	'73.3.1.(라)		'82.3.1.	'84.3.1.	
							운곡 (영동)		"	'70.7.1.(라)		'73.3.1.		



도서·벽지학교 현황(5)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함안	칠원 (운곡)	"	'71.10.1.(라)		'73.3.1.	'89.3.1.	울산군	삼동 (조일)	"	'89.9.1.(라)				
	칠서 (이령)	벽지	'70.7.1.(라)		'73.3.1.			삼산 (와도)	도서	'67.4.1.(다)	'73.3.1.(라) '86.1.1.(다) '89.9.1.(나) '01.1.8.(가)			'03.6.12.
창녕	계창 (옥천)	"	'67.4.1.(라)			'94.3.1.	고성	수태 (지란)	"	'68.5.1.(다)	'70.7.1.(라) '86.1.1.(다) '89.9.1.(나)			'92.3.1.
	남지 (월상)	"	'71.10.1.(라)			'99.3.1.		삼산 (포교)	벽지	'68.5.1.(라)				'98.9.1.
	길곡 (오호)	"	'89.9.1.(라)			'99.3.1.		하이 (덕명)	"	'68.5.1.(라)				'93.3.1.
	부곡 (학포)	"	'86.1.1.(라)					동해 (대동)	"	'89.9.1.(라)				'99.3.1.
	이남	"	'89.9.1.(라)			'94.9.1.		송계 (중생)	"	'70.7.1.(라)				'94.4.1.
	냉천 (성곡)	"	'67.4.1.(라)			'99.3.1.		회화 (동창)	"	'67.4.1.(라)				'98.9.1.
	냉천 (성산)	"	'67.4.1.(라)			'90.3.1.		영현 (봉발)	"	'89.9.1.(라)				'93.3.1.
	냉천 (방리)	"	'71.10.1.(라)			'92.3.1.		거류 (대장)	"	'71.10.1.(라)				'99.9.1.
	대합 (용호)	"	'67.4.1.(라)			'99.3.1.		하일 (장춘)	"	'89.9.1.(라)				'12.3.1.
	유어 (광산)	"	'67.4.1.(라)			'99.9.1.		거류 (화당)	"	'86.1.1.(라)				'95.3.1.
양산	원동 (이천)	"	'67.4.1.(다)	'86.1.1.(나) '89.9.1.(다) '01.1.8.(나)			양지	"	'68.5.1.(라)			'73.3.1.	'96.3.1.	
	쌍포 (분)	"	'68.5.1.(라)			'99.9.1.	개천 (좌련)	"	'89.9.1.(라)				'98.3.1.	
산청	정관 (병산)	"	'68.5.1.(라)		'89.3.1.	'95.3.1. 부산편입	남해	미조 (호도)	도서	'67.4.1.(라)	'68.5.1.(다) '73.3.1.(라) '86.1.1.(다)			'99.3.1.
	화제	"	'68.5.1.(라)		'73.3.1.	미조 (미남)		"	'67.4.1.(라)	'86.1.1.(다)				'99.3.1.
	서생 (대송)	"	'68.5.1.(라)		'73.3.1.	'83.2.15. 울산편입		상주 (노도)	"	'67.4.1.(라)	'68.5.1.(다) '73.3.1.(라) '86.1.1.(다)			'97.3.1.
	장안 (대룡)	"	'71.10.1.(라)		'82.3.1.	'95.3.1. 부산편입		상주 (양아)	벽지	'68.5.1.(라)				'94.3.1.
	두서 (두복) (내와)	"	'67.4.1.(라)	'86.1.1.(다)				상주 (대량)	"	'68.5.1.(라)				'92.3.1.
산청	궁근정 (소호)	"	'67.4.1.(라)	'86.1.1.(다)			해	삼동 (내산)	"	'68.5.1.(라)				'94.3.1.
	길천 (이천)	"	'67.4.1.(라)	'68.5.1.(다)				물건	"	'73.3.1.(라)		'89.9.1.		'99.9.1.
	청량 (신리)	"	'68.5.1.(라)			'96.3.1.		송남 (노구)	"	'67.4.1.(라)				'98.3.1.
	반곡 (대곡)	"	'67.4.1.(라)		'84.3.1.	'84.8.31.		삼남 (가천)	"	'68.5.1.(라)				'97.3.1.
군	삼동	"	'86.1.1.(라)				남명 (남성)	"	'86.1.1.(라)				'94.3.1.	



도서·벽지학교 현황(6)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남	삼 남	"	'86.1.1.(라)			'99.9.1.	하	진 교 (월운)	"	'68.5.1.(라)	'86.1.1.(라)	'73.3.1.	'92.3.1.		
	남 명 (상덕)	벽지	'86.1.1.(라)			'03.3.1.		청 암	벽지	'89.9.1.(라)			'10.3.1.		
	고 현 (갈화)	"	'86.1.1.(라)		'89.9.1.	'99.9.1.		옥중 (두양)	"	'68.5.1.(라)				'98.3.1.	
	북창선	"	'67.4.1.(라)			'99.9.1.		옥중 (북평)	"	'71.10.1.(라)				'98.3.1.	
	서창선	"	'67.4.1.(라)			'99.9.1.		박 달	"	'71.10.1.(라)			'73.3.1.	'94.3.1.	
	광 천	"	'67.4.1.(라)			'99.9.1.		진 교 (고이)	"	'69.6.1.(라)			'73.3.1.	'92.3.1.	
	해	동창선 (진동)	"	'67.4.1.(라)	'93.8.1.(다)		'94.3.1.	동	차 황 (황매)	"	'67.4.1.(라)	'86.1.1.(다) '89.9.1.(라)			'99.3.1.
		동창선	"	'67.4.1.(라) '86.1.1.(라)		'82.3.1.	'99.9.1.		금 서 (방곡)	"	'67.4.1.(라)	'68.5.1.(다) '73.3.1.(라) '86.1.1.(다)			'89.3.1.
		창 선	도서	'67.4.1.(라) '93.8.1.(라)		'82.3.1. '01.1.8.			삼 장 (유평)	"	'67.4.1.(라)	'68.5.1.(다)			'94.3.1.
		송 남	벽지	'67.4.1.(라)		'73.3.1.	'99.9.1.		신 천 (중산)	"	'67.4.1.(라)	'68.5.1.(다) '89.9.1.(라)			'98.3.1.
하		노 량 (대도)	도서	'67.4.1.(라)	'68.5.1.(다) '73.3.1.(라) '86.1.1.(다) '89.9.1.(나)		'09.3.1.		산	신 천 (내대)	"	'68.5.1.(다)			
	왕 성 (의신)	벽지	'67.4.1.(라)	'68.5.1.(다) '86.1.1.(나) '89.9.1.(다)		'91.3.1.	월 성 (둔철)			"	'68.5.1.(다)	'86.1.1.(다) '89.9.1.(라)			'98.3.1.
	화 개 (왕성)	"	'67.4.1.(라)	'86.1.1.(다)			금 호			"	'86.1.1.(라)			'89.9.1.	'94.3.1.
	묵 계	"	'67.4.1.(다)	'01.1.8.(나)			오 부			"	'68.5.1.(라)				
	옥 중 (위태)	"	'71.10.1.(라)	'86.1.1.(다)		'94.3.1.	생 초 (구평)			"	'68.5.1.(라)	'86.1.1.(라)	'82.3.1.	'93.3.1.	
	옥 중 (내촌)	"	'69.6.1.(다)	'73.3.1.(라) '86.1.1.(다)		'91.3.31.	대 포			"	'86.1.1.(라)				'99.9.1.
	적 량 (우계)	"	'68.5.1.(라)			'92.3.1.	삼 장			"	'86.1.1.(라)				
	적 량 (삼화)	"	'68.5.1.(라)			'99.3.1.	금 만 (백곡)			"	'89.9.1.(다)	'93.3.1.(라)			'99.3.1.
	횡 천 (전대)	"	'89.9.1.(라)			'93.3.1.	내 공			"	'68.5.1.(라)	'86.1.1.(라)	'73.3.1.	'94.9.1.	
	궁 향	"	'68.5.1.(라)		'01.1.8.		신 천			"	'86.1.1.(라)				
	동	갈 육	"	'67.4.1.(라)						청	월 성 (방목)	"	'70.7.1.(라) 청 암 (상이)		'82.3.1. '89.9.1. (라)
		청 암 (명사)	"	'73.3.1.(라)			'95.3.1.	입 석 (운리)			"	'68.5.1.(다)	'73.3.1.(라)		'93.3.1.
		청 암 (심곡)	"	'70.7.1.(라)			'93.3.1.	금 만			"	'89.9.1.(라)			'98.3.1.
		청 암 (심곡)	"	'70.7.1.(라)			'93.3.1.	입 석			"	'86.1.1.(라)			'99.9.1.



도서·벽지학교 현황(7)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산	단 성 (목곡)	"	'68.5.1.(라)		'73.3.1.	'89.3.1.	합	백 전 (백운)	"	'67.4.1.(라)	'86.1.1.(라)	'82.3.1.	'96.3.1.	
			'86.1.1.(라)	'89.3.1.					백 운 (봉현)	벽지	'67.4.1.(라)	'86.1.1.(라)	'82.3.1.	'93.3.1.
	소 남 (분)	벽지	'68.5.1.(라)					병 곡 (광월)	"	'71.10.1.(라)				'97.3.1.
청	단 계 (울현)	"	'86.1.1.(라)		'89.3.1.	'92.3.1.	거	북 상 (병곡)	"	'67.4.1.(라)	'68.5.1.(다)			'98.3.1.
	지 품 (척지)	"	'68.5.1.(라)			'94.3.1.		용 암 (개금)	"	'67.4.1.(라)	'68.5.1.(다)			'97.3.1.
양	오 동	"	'70.7.1.(라)		'73.3.1.	'92.3.1.	창	오 계 (정연)	"	'69.6.1.(라)	'86.1.1.(다)			'96.3.1.
	마 천	"	'71.10.1.(라)	'86.1.1.(다) '01.1.8.(라)	'82.3.1.			주 상 (보해)	"	'86.1.1.(라)				'99.3.1.
합	마 천 (삼정)	"	'68.5.1.(라)	'86.1.1.(다)		'94.3.1.	창	개 명	"	'67.4.1.(라)	'68.5.1.(다) '86.1.1.(라)			'98.3.1.
	마 천 (의탄)	"	'70.7.1.(라)	'86.1.1.(다)	'82.3.1.	'99.3.1.		쌍 봉	"	'86.1.1.(라)				'96.3.1.
양	마 천 (등구)	"	'67.4.1.(라)	'86.1.1.(다)		'99.3.1.	창	쌍 봉 (소사)	"	'71.10.1.(라)				'99.3.1.
	금 반 (월평)	"	'70.7.1.(라)	'86.1.1.(다) '89.9.1.(라)		'92.3.1.		북 상 (소정)	"	'68.5.1.(라)				'92.3.1.
합	금 반 (문정)	"	'70.7.1.(라)			'99.9.1.	창	북 상 (월성)	"	'67.4.1.(라)				'93.3.1.
	금 반	"	'12.3.1.(라)					남 상 (임불)	"	'67.4.1.(라)	'68.5.1.(다) '73.3.1.(라)			'94.3.1.
양	대 지 (용추)	"	'68.5.1.(라)	'73.3.1.(라) '86.1.1.(다)		'93.3.1.	창	오 계 (춘진)	"	'67.4.1.(다)	'73.3.1.(라)			'98.3.1.
	광 월 (원산)	"	'67.4.1.(라)	'86.1.1.(다)		'93.3.1.		남 하 (지산)	"	'67.4.1.(라)	'68.5.1.(다) '73.3.1.(라)			'98.3.1.
합	위 림 (옹곡)	"	'68.5.1.(라)			'93.3.1.	창	모 동	"	'67.4.1.(라)	'86.1.1.(라)	'73.3.1.	'99.3.1.	
	팔 령 (무조)	"	'86.1.1.(라)		'89.9.1.	'92.3.1.		신 원	"	'86.1.1.(라)		'01.1.8.		
양	수 동 (도북)	"	'67.4.1.(라)	'86.1.1.(라)	'73.3.1.	'94.3.1.	창	산 수	"	'86.1.1.(라)			'91.3.1.	
	수 동 (용산)	"	'71.10.1.(라)	'86.1.1.(라)	'82.3.1.	'94.3.1.		중 유	"	'67.4.1.(라)				'92.3.1.
합	유 림 (화남)	"	'89.9.1.(라)			'92.3.1.	창	용 현	"	'67.4.1.(라)	'86.1.1.(라)	'73.3.1.	'92.3.1.	
	덕 유 (교육원)	"	'89.9.1.(라) '01.1.8.(다)					울 원	"	'86.1.1.(라)				'96.3.1.
양	안 의 (동도)	"	'67.4.1.(라)			'98.3.1.	창	가 북 (어인)	"	'67.4.1.(라)				'93.3.1.
	안 의 (대지)	"	'71.10.1.(라)	'86.1.1.(라)	'73.3.1. '89.9.1.	'97.3.1.		가 북 (용암)	"	'71.10.1.(라)	'73.3.1.(라)			'97.3.1.
합	서 하 (운정)	"	'73.3.1.(라)	'86.1.1.(라)	'82.3.1.	'95.3.1.	창	가 북 (중촌)	"	'67.4.1.(라)				'94.3.1.
	서 상 (덕남)	"	'67.4.1.(라)			'97.9.1.								
양	서 상 (옥당)	"	'71.10.1.(라)	'86.1.1.(라)	'73.3.1.	'95.3.1.								



도서·벽지학교 현황(8)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구분	지정명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거창	가 조 (도리)	벽지	'67.4.1.(라)	'89.9.1.(라)	'73.3.1.	'92.3.1.	합	쌍 책 (이책)	벽지	'67.4.1.(라)		'89.9.1.	'99.9.1.
	고제	"	'11.3.1.(라)					초 계 (덕곡)	"	'68.5.1.(라)			
합 천	봉 산 (삼덕)	"	'67.4.1.(라)	'86.1.1.(다)		'92.3.1.	천	덕 곡 (학남)	"	'68.5.1.(라)			'98.9.1.
	봉 산 (옥계)	"	'86.1.1.(다)			'99.9.1.		청 덕 (덕진)	"	'68.5.1.(라)			'90.3.1.
	남 정 (장인)	"	'67.4.1.(라)			'93.3.1.		청 덕 (소례)	"	'67.4.1.(라)			'99.3.1.
	봉 산	"	'86.1.1.(라)		'01.1.8.			대 양 (백산)	"	'86.1.1.(라)			'99.3.1.
	가 천	"	'86.1.1.(라)			'88.3.1.		가 회 (대기)	"	'67.4.1.(라)			'91.3.1.
	노 파	"	'86.1.1.(라)			'89.3.1.		도 성	"	'86.1.1.(라)			'94.3.1.
	봉 산 (오남)	"	'86.1.1.(라)			'98.3.1.		대 병	"	'86.1.1.(라)		'89.9.1.	
	동 남	"	'86.1.1.(라)		'89.9.1.	'94.3.1.		유 전	"	'86.1.1.(라)		'89.9.1.	'95.3.1.
	승 산	"	'86.1.1.(라)		'01.1.8.	'19.3.1.		삼 산	"	'86.1.1.(라)			'98.9.1.
	해 인	"	'86.1.1.(라)			'19.3.1.		용 호	"	'71.10.1.(라)		'89.9.1.	'99.9.1.
	울 곡 (항계)	"	'86.1.1.(라)			'91.3.1.		외 토	"	'89.9.1.(라)			'91.3.1.
	영 전 (자강내천)	"	'71.10.1.(라)			'95.3.1.		삼 가 (자양)	"	'89.9.1.(라)			'98.9.1.
	영 전 (계산)	"	'68.5.1.(라)			'92.3.1.							



다. 대응부설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현황

급별	학교명	기간	급별	학교명	기간										
초등	진주 진주(중안)	~'03.2.28.	특수	창원천광	'05.3.1.~'14.2.28. '15.3.1.~'19.2.28. '19.3.1.~'20.2.29.										
	고성 거류	'20.3.1.~'22.2.28.			경남혜림	'03.3.1.~'19.2.28. '19.3.1.~'20.2.29.									
	고성 회화	'17.3.1.~'20.2.29.				진주혜광	'06.3.1.~'19.2.28. '19.3.1.~'20.2.29.								
	김해 김해활천	'14.3.1.~'18.2.28.					양산희망	'14.3.1.~'15.2.28.							
	김해 김해구지	'18.3.1.~'21.2.28.						김해은혜	'05.3.1.~'19.2.28. '19.3.1.~'20.2.29.						
	김해 동광	'02.3.1.~'08.2.29.							경남은광	'06.3.1.~'19.2.28. '19.3.1.~'20.2.29.					
	김해 삼계	'21.3.1.~'23.2.28.								통영잠포	'10.3.1.~'14.2.28.				
	김해 삼성	'08.3.1.~'14.2.28.									창원 한별	'07.3.1.~'09.2.28. '13.3.1.~'15.2.28. '17.3.1.~'19.2.28.			
	마산 봉덕	'08.3.1.~'14.2.28.										김해 김해	'09.3.1.~'11.2.28. '15.3.1.~'17.2.28. '18.3.1.~'20.2.29.		
	마산 산호	'14.3.1.~'18.2.28.											창원 토월	'11.3.1.~'13.2.28. '16.3.1.~'18.2.28. '19.3.1.~'21.2.28.	
	마산 성호	'02.3.1.~'08.2.29.												진주 한울	'09.3.1.~'11.2.28. '17.3.1.~'19.2.28.
	마산 용마	'21.3.1.~'23.2.28.													마산 한사랑
	마산 회원	'18.3.1.~'21.2.28.	김해 장유	'13.3.1.~'15.2.28.											
	사천 노산	'17.3.1.~'20.2.29.		거제 한아름	'15.3.1.~'17.2.28. '19.3.1.~'21.2.28.										
	사천 문선	'11.3.1.~'17.2.28.			진주 진주	'16.3.1.~'18.2.28.									
	사천 용현	'20.3.1.~'22.2.28.				진주 진주누리	'20.3.1.~'22.2.28.								
	산청 단성	'17.3.1.~'20.2.29.					창원 용호	'20.3.1.~'22.2.28.							
	산청 산청	'05.3.1.~'11.2.28.													
	진주 가람	'17.3.1.~'20.2.29.													
	진주 가좌	'11.3.1.~'17.2.28.													
	진주 금산	'04.3.1.~'10.2.28.													
	진주 금성	'19.3.1.~'21.2.28.													
	진주 도동	'10.3.1.~'16.2.29.													
	진주 봉래	'16.3.1.~'19.2.28.													
	진주 서진	'20.3.1.~'22.2.28.													
	진주 정촌	'99.5.1.~'05.2.28.													
	진주 주약	'05.3.1.~'11.2.28.													
	진주 천전	'13.3.1.~'17.2.28.													
	진주 축석	'07.3.1.~'13.2.28. '20.3.1.~'22.2.28.													
	진주 평거	'17.3.1.~'20.2.29.													
	창원 남양	'20.3.1.~'22.2.28.													
	창원 동산	'99.5.1.~'05.2.28.													
	창원 성주	'11.3.1.~'17.2.28.													
	창원 용남	'17.3.1.~'20.2.29.													
	창원 창원신월	'05.3.1.~'11.2.28.													
	통영 충렬	'01.3.1.~'07.2.28.													
	함안 군북	'20.3.1.~'22.2.28.													



라. 한센병 자녀 취학학교 <분교장> 학급 현황

내역 시군별	학교<분교장> 개교일	학급이 있는 학교(편성일 '72.3.1.)	비고
창원			
(울주구)	<농서 성혜>~'64.11.26.		
마산			
진주	<평거, 귀곡>~'85.2.28.>		
(진양)	<독산 신광>~'63.1.20., '98.9.1. 내동신광> <반성 가선>~'85.2.28.> <원당 광명>~'63.3.15., '96.2.29.>	(예하~'84.2.28.혜) 반성(~'11.2.28.) (원당 '96.3.1.~'99.8.31.) (수곡 '99.9.1.~'11.2.28.)	
진해			
(창원군)			
통영			
(통영)	<광도 신애>~'64.3.19.~'98.2.28.>		
사천	<대방실안 영복>~'63.2.28.		
(사천)		동성(~'11.2.28.)	
김해			
(김해)	<이작도요>~'98.3.1.>	대감(~'11.2.28.), 안명(~'11.2.28.), 금동(~'11.2.28.)	
밀양		(운정~'97.2.28.) (무안 '97.3.1.~'98.2.28.)	
거제			
의령		(의령~'89.2.28.), 남산(~'91.2.28.), 용덕(~'11.2.28.), (벽화~'95.2.28.), (부림~'99.2.28.) (송산~'96.2.29.), (정곡~'92.2.28.) 운암(~'91.2.28.), 봉수('87.3.1.~'91.2.28.) 죽전('87.3.1.~'92.2.28.)	
함안		함안(~'11.2.28.), 군북(~'11.2.28.), 칠서(~'91.2.28.), 이룡(~'96.9.30.)	
창녕		명덕(~'11.2.28.), 영산(~'93.2.28.), 모전('97.), 대합('98.~'02.)	
양산		일광(~'95.2.28.)	
고성	<동광 승의원>~'63.4.7.	(고성 '87.2.28.), 동광(~'11.2.28.)	
남해		해양(~'00.2.28.), (성남~'95.2.28.) (광천~'94.02.28.)	
하동	<적량 영신>~'62.9.6., '07.3.1. 폐교>	(횡천~'86.2.28.), (고전~'86.2.28.), (진교~'90.2.28.), (옥종~'89.2.28.) (전대~'90.2.28.), (하동~'90.2.28.) (고남~'91.2.28.), (신흥~'92.2.28.) (매계~'91.2.28.), (북천~'95.2.28.) 횡천-(부덕~'99.2.28.), (악양~'92.2.28.)	
산청	<월성 둔철>~'68.3.12., '87.10.1.>	(오성~'88.2.28.), (덕산~'87.2.28.), 지품('86.1.1.~'99.8.31.), 생초('91.3.1.~'01.2.28.) (산청 '88.3.1.~'11.2.28.)	
함양	<수동 성애> '65.9.1.~'94.3.1.> <상내백 중생> '63.11.3.~'94.3.1.>	수동('94.3.1.~'11.2.28.) 상내백('94.3.1.~'99.8.31.)	
거창	<마리 울리>~'86.2.28.>	(보해~'87.2.28.), (위천~'88.2.28.) (마리~'90.2.28.), (용현~'89.12.1.) (거창~'89.2.28.), (임불~'89.2.28.) (거창~'96.9.1.~'05.2.28.), (아림 '04.3.1.~'11.2.28.) (주성~'88.2.28.), (남하~'87.10.19.) 창동(~'11.2.28.), (화산~'95.2.28.)	
합천		(영전~'90.2.28.), (가회~'89.2.28.) (이책~'99.8.31.), (영전 '94.3.1.~'00.2.28.)	



마. 특수학교 · 학급현황(1)

※ 연도별 신설학교

내역 시군별	특수학교	특 수 학 급										
		'73	'74	'75	'76	'81	'82	'83	'84	'85	'86	'87
창원	창원천광 (85.6.1.)					창원 상남					양곡 (86~91)	
울산			양사		대현	남목 병영						
(울주구)	매아리(80.12.11.) 태연(88.3.1.)		온양		언양					청량		
마산	경남혜림 (69.3.1.)	성호			월영 (76~90)	합포	완월 회원	교방 석전	월포	월성		
진주			봉이		중안	천전				도동	봉곡	
(진양)	진주혜광 (81.3.20.)		문산 (74~80)		대곡	반성		금산				예하 문산
진해			도천		경화			덕산, 대야 중앙		제황	동부	
(창원군)			대산		진동					중리, 신방 반동, 하천		진전 (87~97)
통영			충렬		유영			충무			통영 진남	
(통영)	통영잠포 (08.3.1.)		벽방		원량		산양		원평	광도		
사천		삼천포			문선					대성		
(사천)			사천		곤양					서포		
김해	김해은혜 (02.9.1.)		동광		합성			봉황		활천	삼성, 구봉	
(김해)						대창	장유	대동		대흥	진례, 한림	
밀양		밀양			밀성	수산	예림			삼이진		송진
거제	애광 (79.12.29.)		계룡		거제			일운(83) 장목(83) 하청	옥포 장승포	마전		장목
의령	경남은광 (96.3.1.)		의령		부림						남산	
함안			가야		아이		군북	칠원	함안			
창녕			영산		창녕	이남					대합, 부곡	
양산	양산희망 (11.3.1.)		양산		기장		물금	월내				
고성			대성	고성 (75~80)		회화		고성	하이, 동광		동해, 거류	
남해			남해		해양 (85~81)	고현			창선	미조, 남명	해양	동창선
하동			하동		진교					악양, 옥종		
산청				산청	생초			덕산, 단성 도산			(오부, 단계 (86~90)	
함양			함양		안의				수동, 서상	위성, 마천 백전(85~97)	유림(86~90) 지곡(86~96)	
거창	거창나래 (19.3.1.)		거창		창남		위천	가조	용양		창동, 마리	월천, 주상 (87~90)
합천			합천		초계	삼이		묘산	쌍백	남정, 대양 삼산, 야로		청덕 (87~90)
합계	11	3	21	2	24	13	8	20	12	25	21	9



특수학교 · 학급현황(2)

※ 연도별 신설학교

내역 시군별	특 수 학 급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창원				중앙 성주	남정	반송 용이	토월	양곡	대방	남산	상북, 외동	용호, 은천			
울산		장생포 화진					부산	염포, 선암 월봉, 전하							
(울주구)								두남분교 중남							
마산		교동						봉덕	현동		양덕 구암				
진주					망경, 가람 남강	수정	봉원	정촌, 봉곡, 봉원	정촌	금성					
(진양)															
진해									남산						
(창원군)	하북														
통영									두룡			(벽방)			
(통영)											한려				
사천						대방									
(사천)				용현					용산	(사천)					
김해				삼계 내동				삼방	우암						은혜 9.1.~
(김해)															
밀양	밀주	무안						(삼랑진)				상동			
거제	장평, 수월														
의령	정곡	칠곡	지정							(칠곡) (정곡)					
함안		구혜													
창녕											명덕				
양산	하북	좌천	칠암					덕계		신이 좌삼		좌삼(시설)			
고성														(동광)	
남해	설천	서창선	이동							(서창선)		(동창선8.31.)			
하동															
산청														신안	
함양		위림 (89~94)		(유림)				(위림)		(지곡)	(백전)				
거창				남상, 중앙				(남상중앙)							
합천	용주, 가산, 쌍재 적중(88~90)	문림	가회	송산				울곡(대양) (문림)		(용주) (적중)	(삼산~ '98.8.31.)	영전 (초계, 울곡)			
합계	11	10	4	8	4	4	3	14	7	4	6	5	1		1

※ 2003년 이후는 가산점 인정자 명부 확인



바. 교육부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1)

년도 시군별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창원																			
울산	강남	약사 대현				울산 신정	울산, 신정, 남목									울산	울산		
(울주구)																			
마산	성호 월포	완월 월포		성호	성호 합포	합포				무학 혜림	무학 혜림			산호	산호				
진주	봉래	중앙 배영	천전	천전				수정	수정 부국	부국						혜광	혜광		
(진양)		정춘	정춘	정춘	정춘	정춘													
진해	도천	도천 대야	도천 대야	도천 대야	도천	도천			대야	대야									
(창원군)	천가										진동								
통영		두룡	통영	통영															
(통영)	도산	도산	도산	도산	도산	도산		용남	용남							원평	원평		
사천	삼천포													삼천포	삼천포				
(사천)									사천	사천									
김해	동광					동광	동광												
(김해)		대사	대사	대사	대사														
밀양					명례 밀양	명례	명례	명례	명례									수산	수산
거제					계룡	계룡	계룡				교육청	교육청							
의령	교육 청																		
함안																가야	가야		
창녕						동포	동포		동포	동포	동포		교육청	교육청					
양산	기장					하북	하북		하북	하북									
고성																			
남해																			
하동																하동	하동		
산청				신안	신안	신안		생초	생초			신안	신안						
함양																	함양	함양	
거창									월천	월천									
합천		승산	승산	승산	승산	승산		삼가	삼가										
합계	11	13	8	10	11	13	8	5	11	8	5	2	2	3	3	5	6	2	



교육부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2)

시군별	년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창원	양곡			토월	토월	토월, 용호	용남, 용호	대원, 창원, 동산	대원, 창원				소답 (10.1.~)	소답, (~3.31.)	소답, 자여 (5.1.~)	자여, 용남 (9.1.~)	용남, 대산, 자여(4.30.) 사회	용남 (~8.31.) 대산 사회	
울산						울산, 옥동													
(울주구)																			
마산	성호	성호				해운	해운	합포, 교동, 회원	합포, 교동, 성호	성호							호계	호계	
진주		진주, 혜광	천전, 혜광	천전		도동	정촌, 도동	정촌, 동진	동진							남강	남강, 가좌	남강	
(진양)						문산	문산												
진해					도천	도천		웅천, 계항	웅천										
(창원군)																			
통영								한려, 충무	한려				충무 (10.1.~)	충무 (4.30.~9.30.)			통영	통영	
(통영)									산양										
사천						대방	대방	용산, 삼천포	용산										
(사천)																			
김해								경운	경운					영운		김해, 동광, 우암	삼성, 용산, 동, 부곡 (9.1.~)	삼성, 부곡	장유, 명진, 김해, 안곡 (~8.31.)
(김해)			대동	대동		장유	장유							우암 (9.1.~)	우암	우암 (~8.31.)			
밀양				예림	예림	예림, 백산	백산	밀양	밀양	수산	수산					밀성 (5.1.~)	밀성 (4.30.~)	밀성	
거제								옥포	국산, 옥포	국산	계룡	계룡				고현 (11.1.~)	고현		
의령						용덕	용덕	의령	의령										
함안				칠원	칠원	구해	구해	군북	군북										칠원
창녕						창녕	창녕	명덕					명덕		영산	영산	영산		
양산						덕계	덕계	덕계, 평산	덕계, 평산					양주 (5.1.~)	양주	오봉 (9.1.~)	오봉	오봉 (~8.31.)	
고성						대성	대성	고성	고성										
남해						남명	남명	고현	고현										
하동						옥중	옥중	노량	하동, 노량	하동	하동								
산청						산청	산청	단성, 조암	산청, 단성	산청									
함양						병곡	병곡	안의, 함양	함양, 안의				안의	안의					
거창						창남	창남	창동	창동										
합천	초계	초계				합천	합천	야로	야로										
합계	3	4	3	5	4	23	20	31	28	5	3	2	4	6	7	12	13	13	

* 창원소답 : ~ '04.3.31., '04.5.1.~ * '09년~ 교육부 지정 연구, 시범, 실험학교 없음



사. 도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1)

년도 년도별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창원	창원	창원						창원	사화		반송	남정 반송	용남 용지	천광, 양곡, 용지
울산	울산 장생포	울산	양사		울산		북산		중앙 옥성	양사	신정	수암 신정	전하	울산 전하
(울주구)	언양	언양					언양							
마산				완월	혜림	교방 산호			양덕 내서		월성	월성	복성 합포	월영 합포
진주	도동 배영	배영	중안		금성	중안			망경 평거	망경	중안	배영, 해광, 중앙	천천	상대, 천천
(진양)	문산	문산						문산					해광	
진해	경화 대야	대야					도천	중앙		도천	경화	용동, 경화	제황 덕산	대야,도천 덕산
(창원군)									대산					
통영	두룡 통영	통영					충렬	두룡	통영		유영	충렬 유영	통영	통영
(통영)	광도	광도										도산	도산	
사천	삼천포	삼천포	대방				삼천포				삼천포	문선 삼천포	대성	
(사천)	사천 동성	사천 동성			동성				사천				동성	동성
김해	합성				동광			동광	활천		합성	봉황 합성	구봉 동광	합성 동광
(김해)	대상	대상			대상				대동		대동		장유, 진영, 대창	장유
밀양	밀양 밀성	밀성	삼랑진							밀양	삼랑진 밀성	수산 밀성	밀주	예림 밀주
거제	계룡	계룡						장평	장평 오량		장승포 계룡	계룡	계룡 계제	계룡 계제
의령	덕암	덕암			의령				남산 용덕		의령 칠곡	칠곡	벽화 송산	벽화
함안	아라 가야	가야				가야			군북 가야		가야 군북	군북	함안 아라	군북, 아라
창녕	창녕	창녕		동포							영산 창녕	부곡 창녕	명덕 남지	남지
양산	양산	양산 기장		영천		기장			하북	양산	월내	월내	신진, 일광, 기장	신진 기장
고성	대성	대성 구만						고성	대흥	고성	고성	고성	고성	회화 회화
남해	남해	남해 설천	해양	해양	해양	남해			창선		남해	해양 남해	고현	남해 고현
하동	하동 악양	악양			하동		악양		하동	진교	하동	하동	노량	하동 노량
산청	신안 산청	산청									덕산 산청	산청	도산	단계 도산
함양	함양	함양		수동					함양 마천	안의	함양	함양	위성	병곡 위성
거창	거창 창남	창남					거창		소정	창동	창남	거창 창남	거창 가조	거창, 가조
합천	삼가 합천	삼가 합천			삼가				해인		가산 합천	쌍백 합천	남정	초계, 남정, 삼가
합계	36	29	5	5	10	7	6	7	26	9	29	35	38	42



도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2)

년도 지역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창원	천관대원	중앙대원	유목	창원목	사파	반송			웅남대원	대방,사화,천광 반송,웅남,유목 창원사파	웅남,사화,내동 남산,상북특수 교위(유,초)	남산,웅지 대방,웅양	유곡, 의동 유곡, 의동 유곡, 의동	신방,명서,안남 도계,유목,대산 유곡,경남천광	대산반송 사화남양 남정안남 대방상남 유곡(11.1.~)	반송,웅남,상남 대원,유목,성주 신일,경남천광 (02.11.~03.28.)
울산	양정양	신중양	아북전	서부	옥동	울산	울산	강남	삼천중앙	영정,동부 서부,남부						
(울주군)	청량	농소량	연양	은양	응촌		연양			연양						
마산	구알호	상남호	고동,마성 고동,마성	월성			해운	양덕 화원	평해 화원	교방,구암 석전,남동	구암,팔룡,서 호,합포,화원	성호,봉덕 가포	진동,팔룡 경남,해림	합성,합성 합성,합성	월성,상남,월성 합성,합성,합성	중리,교방,교 동,합포(특)
진주	정촌석	천촌석			중안	천진				중안,동진 봉곡	진주해광 반성	망경,천진	평기,봉래 중앙	봉곡,강	예하금성, 이반성,평 거전주해광	금성,가람 봉원
(진양)			문산	금산	금산											
진해	경화	도천		동부	도천	도천				경화	대야, 제황	경화, 대야	도천, 응동	도천, 중동	덕산,대야	남산,경화 도천(11.1.)
(창원군)	신방	신방	진반동	신방				중리								
통영	두룡	두룡	충렬	두룡	두룡	통영				유영	합리, 하소			유영, 진남	충무,벽방, 광도	충무,광도 충남,진남 (11.1.)
(통영)	광도			광도	신양		광도	원량	한산, 호도		삼양(공리 문교포함)	사랑, 도산	원량 사랑	원평, 원량		
사천			노산						노산	사천	문선,노산 삼천포	문선	노산	문선,대성 남양	대성,대방	사천,동성
(사천)	근양	근양		사천	동성	동성	서포	사천		근명	근양,근명		사천, 정동		사천,서포	
김해		봉황	합성 대동		동광 활천	동광 활천		합성		구봉,의동 신어	구봉,신어 불황		동광, 어방	동광,우암 영문,구봉	어방,우암 장유,구봉	어방,장유 활천(1.1.~)
(김해)	장유 대창	장유 대창							진례 신어		한림	장유,신어 어방	금동, 진례	금동		
밀양	삼량 진수산	고계 수산	초동		안인	안인	밀양			반월, 산내	밀양, 산내	백산,수산, 하성	부북, 수산	밀양,부북, 부안	무안,예림 밀양(특)	밀주,예림 수산
거제	계룡,계룡 계룡,계룡	동부 장평	동부 국산	거제	거제	장목 계룡	동부 계룡	장평	계룡	우포,장평 신현	계룡,장목 국산,능포	계룡,장목, 마전,수월,연초	거제, 연초	우포,능포, 장승포	마전,국산	마전,국산, 장평(02.11.1. ~03.28.)
의령	의령 용덕	부림 덕	부림 덕	의령 지정	의령	남산	남산	의령	부림	의령,남산		화정, 칠곡	부림,용덕 (은평,남산)	유곡, 남산	유곡,칠곡	용덕,은평 유곡(02.9.1. ~03.28.)
함안	가야 칠원	칠원	함안	아라 구혜	아라	가야 근북	가야	가야	가야	근북	함안	칠원	가야, 칠원	가야, 칠원	아라,함안 가야	함안,칠원 아라
창녕	동포	부곡 동포	영산 명덕	영산	남지	명덕		창녕	명덕, 남지	영산	영산, 명덕	부곡	동포,창녕 부곡	창녕,영산, 동포,교육청	남지,영산, 명덕	창녕,남지
양산	하북, 좌천	물류, 금곡	서창	하북		양주	양주	양산	서창	서창, 양주	평산, 신기	상북, 신기	범어, 상북	양산,범어, 서창	물금,서남	물금,서남
고성	거류	동광, 거류	대성 회화				고성	대성	고성	고성	회화	회화	대성, 회화	하이, 회화	동해	회화,대성
남해	금남명	해양 남명	창선	남해 해양	동상 선	고현		남해	실천	실천, 이동	남해, 고현	남해, 이동	도마,남해 이동	실천, 해양	실천,창선 남해	남해
하동	진교, 옥중	옥중	진정	횡천	진교	하동	하동	옥중	노량	진교, 하동	진교, 갈곡	하동,옥중 약양	진교, 옥중	북천,화개, 능형	약양,궁항, 진교	진교,약양
산청	산청 단성	단계 단성	생초		산청		단성	덕산			단성	대포,신안 산청	대포,금서 신안	생비량, 금서,생초	산청,단성, 덕산	삼장
함양	함양 위랍	함양 위랍	함양 의					백전	안의	안의, 마천	지곡	마천(동구, 의반),위성,지곡	수동,지곡	함양, 위성	위성,수동 안의	수동,안의 함양
거창	창남	창동	거창 위천	가조 마리	월천 가조	창동			거창	거창	거창	거창, 위천	월천,신원 마리	거창,월천, 주상	마리,가조	마리
합천	묘산	영묘산	초계				남정	삼가	합천	해인, 초계	삼가, 야로	초계, 삼가	덕곡, 합천	남정, 합천	삼가	합천
합계	41	40	33	23	20	19	15	16	27	51	51	51	52	69	69	52



도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3)

년도 지역	'03	'04	'05	'06	'07	'08
창원	대월, 유목, 성주, 신월, 웅남안남, 경남천광, 안민, 온천(7.1.~)	웅남, 평산, 온천, 안민, 봉림, 용지, 명도	안민, 평산, 웅남, 봉림, 용지, 토월, 삼정자(4.1.~)온천, 명도, 대산, 신방(운동종목)	대방, 삼정자, 토월, 안남, 온천, 소담, 신방(운동종목)	대방, 남산, 대원, 도계, 외동, 동산(운동종목), 봉림(운동종목), 명곡, 대암, 화양, 평산, 삼정자, 토월, 유목(운동종목), 온천(운동종목), 남정, 웅남, 내동	남산, 자여, 성주, 일동, 용호, 외동, 평산, 남정, 사파, 경남천광, 삼정자, 토월, 대원, 남양, 화양, 신방, 내동, 대암, 명곡
마산	합포(특), 교방, 회원, 봉덕, 해운, 교동, 구암, 상일(10.1.~)	월영, 상일, 회원, 중리, 양덕, 진동,	월영, 중리, 양덕, 진동, 완월, 중앙, 해운, 용마(운동종목), 교동(운동종목), 광려(운동종목)	신월, 삼계, 호계, 합포, 합성, 봉덕, 상일, 교동(운동종목), 용마(운동종목), 해운(~5.31.)	교방, 신월, 합성, 합포, 석진, 북성	내서, 신월, 교방, 전안, 진동, 구산
진주	가람, 배영, 중앙, 용우, 문산	문산, 천전, 봉래, 배영, 중앙	반성, 중앙, 신진, 혜광학교, 정촌, 가람(운동종목)	봉원, 축석, 가좌, 신진, 혜광학교, 반성, 가람(운동종목)	신진, 봉래, 정촌, 배영, 망경, 봉원(운동종목), 선화, 중앙, 문산	신진, 배영, 집평, 신안, 정촌, 천전, 금곡, 두문, 문산, 송정
진해	남산, 경화, 동부, 도천	용원, 중앙, 동부, 웅천(연도, 수도분교)	용원, 중앙, 안골포, 도천, 남산, 경화(운동종목)	덕산, 안골포, 안청, 경화(운동종목)	안청, 중앙, 석동(운동종목), 도천, 경화, 웅동	도천, 안골포, 웅동
통영	한려, 진남, 웅남	유영, 원평, 산양(학림, 곤리, 풍화, 화양)	원평, 유영, 진남, 충무(운동종목)	두룡, 한려, 통영, 진남, 충무,	두룡, 충렬, 인평, 남포, 벽방, 유영, 원평	진남, 충렬, 인평, 두룡, 충무, 유영, 한려, 산양, 원평, 죽림
사천	문선, 노산, 동성	문선, 노산, 용산, 곤양	용산, 서포, 삼천포	노산, 삼천포, 곤양, 삼성, 사천, 문선(운동종목)	노산, 남양, 용현, 사천, 문선(운동종목), 삼천포(운동종목), 서포, 정동	동성, 문선, 삼천포, 대방, 정동, 노산
김해	가야, 경운, 경남은혜, 활천, 금동, 계동, 월산	활천, 계동, 경운, 부곡, 한림, 월산, 금동, 경남은혜	부곡, 한림, 장유, 대감, 외동, 가야(운동종목), 영운(운동종목)	가야(운동종목), 구산(운동종목), 진영대청(운동종목), 장유, 월산, 김해부곡, 주석, 계동, 석봉, 안명, 금동, 용산	계동, 봉명, 장유, 진례, 구봉, 덕정(운동종목), 대청, 능동, 한림, 월산, 주석, 구산(운동종목), 진영대청(운동종목), 주촌, 진영대홍, 금동, 삼문	봉명, 계동, 대청, 이작, 생림, 동광, 합성, 석봉, 주석, 신안, 한림, 월산, 덕정, 금동, 삼문
밀양	밀주, 밀양	밀양, 예림, 산외	수산, 예림, 무안, 밀주, 밀양(운동종목)	수산, 밀주, 부북, 무안	수산, 밀양, 부북, 미리벌, 산내, 삼랑진	산내, 미리벌, 삼랑진, 밀성
거제	아주, 장평	아주, 거제, 중앙	옥포, 거제, 중앙, 양지, 진목, 신현(운동종목)	일운, 옥포, 중곡, 계룡, 신현(운동종목), 진목(운동종목)	일운, 장평, 거제, 아주, 중곡(운동종목), 창호, 기성, 계룡, 고현	장평, 외포, 옥포, 신현, 국산, 계룡, 거제, 고현, 수월, 진목
의령	의령, 부림	의령, 남산	의령, 남산	용덕, 부림, 남산(운동종목)	지정, 가래, 용덕, 남산(운동종목), 정곡, 의령, 경남은광	부림, 공류, 용덕, 의령
함안	칠원, 가야	가야, 칠원, 군북, 산인	칠원, 아라, 가야(운동종목), 예곡(운동종목)	구해, 가야, 아라, 예곡(운동종목)	군북, 칠원, 가야, 관동, 함안	아라, 군북, 월촌, 가야, 호암
창녕	창녕	명덕, 동포, 영산	명덕, 동포, 창녕	명덕, 부곡	명덕, 도천, 남지, 창녕(운동종목), 부곡, 동포	명덕, 도천, 대지, 고암, 창녕, 동포
양산	서남, 백동, 양산	백동, 중부, 물금, 삼성	신기, 삼성, 덕계, 어곡, 천성	상북, 신기, 서남, 어곡, 중부	상북, 신명, 중부, 덕계, 삼성, 대운	삼성, 상북, 중부, 대운, 양주
고성	개천, 고성, 대성(7.1.~)	고성, 개천, 회화, 대성	회화, 동해, 대성	하일, 상리	회화, 상리, 고성, 동광, 영오	고성, 회화, 대성, 영오
남해	남해, 남명	창선, 해양, 남명, 이동	이동, 창선	고현, 창선	남해, 미조, 해양, 설천	해양, 남해, 남명, 설천
하동	하동, 옥중	하동, 옥중, 진교	진교, 공항, 양보	진교, 하동, 약양, 양보	하동, 진교, 횡천, 약양, 고전, 고남, 노량, 공항	고전, 고남, 진정, 횡천, 양보하동, 적량, 공항
산청	삼장, 산청	산청, 단계, 단성	단계, 단성, 덕산(운동종목)	단계, 신안, 덕산(운동종목)	단계, 덕산, 도산, 단성	덕산, 신안, 단성
함양	함양	위림, 수동	위림, 서상, 함양	위성, 서상, 안의	함양, 수동, 위림, 서상	함양, 서상, 금반, 위림
거창	거창	거창, 창남	가조, 창남, 거창(운동종목)	아림, 가조, 창동, 창남(운동종목)	아림, 거창(운동종목), 창남, 위천, 창동	아림, 거창, 창동
합천	야로, 합천	초계, 야로, 남정	초계, 남정, 합천	삼가, 대병, 합천	대병, 삼가, 송산, 봉산, 가산	대병, 용주, 가산, 초계, 합천, 송산
합계	54	77	92	96	145	135(운동종목시범 없음)



도지정 연구·시범학교(4)

년도 지역	'09		'10	'11
	' 09.3.1. ~ ' 10.2.28.	' 09.9.17. ~ ' 10.2.28. (5개월12일)		
창원 (창원)	반송, 명곡, 남정, 남양, 평산, 창원, 남산, 사파, 신방, 동산(운동종목), 온천(운동종목), 외동(운동종목)	내동, 대암, 봉강	반송, 삼정자, 사화, 용호, 유목, 용남, 토월, 안남, 자여, 양곡, 외동, 봉림, 북면, 온천 대암('10.9.1.~'11.2.28.)	남양, 사화, 삼정자, 신등, 안민, 양곡, 온천, 용호, 우암, 평산 대암('10.9.1.~'11.8.31.)
창원 (마산)	완월, 안계, 전안, 중리, 상일, 삼계, 해운, 석전, 호계(운동종목)	진전, 진동, 현동	전안, 진동, 삼계, 완월, 우산, 교동, 호계	구암, 삼계, 상일, 중리, 진동, 하북, 합성, 교방('11.9.1.~)
창원 (진해)	안골포, 동부, 안청, 웅천	도천, 웅동, 장북, 용원	웅천, 덕산, 동부, 안청	경화, 대야, 석동, 웅동, 장북, 안골포
진주	남강, 선학, 금성, 배영, 평거, 문산, 가람, 가좌	망경	남강, 가람, 금호, 선학, 금성, 신진, 정촌, 신안, 가좌, 대곡, 배영, 봉곡	가람, 봉곡, 수정, 신진, 진주
통영	충무, 도산, 남포, 용남진남, 유영, 한려(~8.31.), 신양(~8.31.)	죽림, 인평, 충렬	충무, 도산, 한산, 인평, 용남, 한려 충렬('10.9.1.~'11.2.28.)	도산, 죽림, 충무, 통영 충렬('10.9.1.~'11.8.31.)
사천	사천, 동성, 삼성, 곤양, 문선, 남양, 수양	삼천포, 노산, 용산	사천, 대성, 수양, 삼성, 삼천포, 대방	곤양, 대방, 동성, 사천, 삼천포, 용산, 정동(특수학급)
김해	능동, 동광, 봉명, 봉황, 신천, 이북, 금병, 대청, 신안, 석봉, 영운(운동종목)	신어, 구봉, 진영, 대흥	능동, 김해동광, 용산, 덕정, 금동, 안명, 이작, 김해부곡, 경남은혜, 주석, 장유, 진영대창	계동, 내동, 대감, 대중, 대동, 대청, 봉황, 부곡, 석봉, 수남, 영운, 우암, 월산, 율하, 주석, 주촌, 진영대창, 합성
밀양	수산, 예림, 산내남명, 태룡, 밀양	밀성, 삼랑진	밀성, 밀양, 미리벌('10.9.1.~'11.2.28.)	밀양, 송진, 태룡, 산동 미리벌(' 10.9.1.~' 11.8.31.)
거제	제산, 중앙, 계룡, 삼룡수월, 진목, 일운(운동종목), 중곡	아주, 거제 고현, 외포	송정, 외포, 양지, 계룡, 수월, 거제중앙, 동부, 중곡, 신현, 삼룡('10.9.1.~'11.2.28.)	마전, 명사, 외간, 송덕, 신현, 양지, 연초, 일운, 중곡, 진목, 창호 삼룡(' 10.9.1.~' 11.8.31.)
양산	하북, 양주, 어곡, 북정대운, 신양	물금, 상북, 황산	백동, 하북, 양주, 중부, 오봉, 서남, 북정, 신양	백동, 북정, 삼량, 성산, 신양, 어곡, 황산
의령	남산, 지정, 궁류, 경남은광, 부림	의령, 정곡	남산, 의령	대의, 의령, 화정
함안	아라, 함안, 대산, 가야	칠원	아라, 범수, 칠원	범수, 산인, 호암, 관동
창녕	창녕, 유어, 계창, 명덕	영산, 동포	영산, 창녕	명덕, 영산
고성	고성, 상리, 하일, 대성	회화, 개천, 삼산	고성, 상리, 개천, 대흥	개천, 동광, 영오, 하이
남해	고현도마, 성명, 삼동, 미조	창선, 설천	상주, 해양, 남해	도마, 삼동, 지족
하동	양보, 고남, 진교, 화개, 하동(~8.31.), 적량(~8.31.)	적량, 하동	양보, 궁항, 악양, 쌍계	악양, 옥종, 화개
산청	단성, 신안, 덕산	차황, 오부	생초	금서, 단성, 산청
함양	금반, 함양, 위성	마천, 유림	금반, 함양, 위성, 서상	안의, 위성, 함양
거창	창동, 아림, 가조	창남, 주상	거창, 위천	거창, 월천, 창남
합천	남정, 삼가, 청덕, 가산(~8.31.), 초계(~8.31.)	합천, 대병, 영전	남정, 해인	초계, 합천
합계	116	50	초등 110, 특수1, 계111	초등113, 특수1, 계114



도지정 연구·시범학교(5)

년도 지역	'12	'13	'14	'15
창원 (창원)	자여, 명도, 우암, 평산, 신등, 명곡, 삼정자, 용남, 중동, 소담, 대암	유목, 자여, 명도, 우암, 남정, 반송, 대암, 창원전광, 대산, 명서	유목, 명도, 우암, 남정, 자여, 사파, 신방, 외동, 대암, 토월, 반송, 온천, 창원, 용남	자여, 신방, 반송, 안민, 북면, 봉림, 용남, 화양, 대방
창원 (마산)	교방, 삼계, 상일, 복성, 호계	교방(-8.31.), 마산신월 중리, 석전, 산호, 상일, 진전, 마산중앙	안계, 중리, 마산신월, 반동, 가고파, 합포, 회원, 호계	안계, 우산, 경남혜림
창원 (진해)	대야, 풍호, 응동, 안골포, 장천, 장복	자은, 응동, 석동, 장복	자은	
진주	가람, 남강, 봉곡, 동진, 천전, 정촌, 문산, 신안, 진주해광, 내동	가람, 남강, 예하, 내동, 집현, 신학, 주약, 초전	가람, 남강, 금호, 문산, 신안, 정촌	금호, 배영
통영	인평, 남포, 충렬, 죽림	유영, 인평, 죽림, 충무, 진남, 통영, 한산	유영, 두룡, 원평, 한려, 죽림, 충무, 충렬, 통영잠포	두룡, 한려, 통영잠포
사천	용현, 용산, 수양, 사남	용현, 동성, 사천, 대성, 삼천포, 사천용산, 사남, 수양	용현, 용산, 삼천포	
김해	올하, 구산, 삼문, 주석, 김해봉황, 석봉, 덕정, 수남, 생림, 김해동광, 사남, 진영금병, 대청, 김해내동, 진영대흥, 능동	올하, 수남, 구산, 삼문, 김해봉황, 주석, 한림, 계동, 대진, 김해신명, 덕정, 장유, 김해내동	한림, 대진, 신어, 관동, 삼방, 김해신안, 김해신명, 김해외동, 대동, 김해합성, 석봉, 경운, 분성, 주촌, 덕정	관동, 삼방, 김해내동, 칠산
밀양	수산, 밀성, 삼랑진	밀성, 예림, 수산, 밀주	예림, 밀주	수산, 초동
거제	양지, 능포, 승덕, 장목, 삼룡	마전, 계룡, 아주, 제산, 진목, 양지, 장목, 사등	외포, 거제, 계룡, 장목, 창호, 제산, 장평, 하청, 국산, 일운, 삼룡	거제, 장목, 창호, 장평, 송정, 중곡, 거제중앙
양산	북정, 어곡, 양산, 화계, 삼랑, 동산, 성산, 황산, 백동	천성, 황산, 원동, 양산	황산, 서창, 신양, 어곡, 백동, 오봉, 상북	어곡, 서남
의령	부림, 대의, 화정, 가례, 의령	부림, 지정, 용덕	가례, 남산	정곡
함안	아라, 칠원, 산인, 가야	아라, 칠원, 대산	칠원	
창녕	동포, 부곡	창녕, 도천, 동포	남지	명덕
고성	동해, 개천, 대성, 삼산	영오, 방산, 고성, 대흥	거류, 회화	거류
남해	삼동, 남해, 성명	해양	이동	지족
하동	악양, 하동, 북천, 쌍계	북천, 진교	적량, 고전, 악양, 하동, 궁항	
산청	산청, 신안, 덕산	산청, 덕산, 단계, 도산	생초	산청
함양	백전, 위성	서상, 백전	서상, 위성	서하
거창	거창, 창동	거창, 웅양, 아립	복상, 창남	
합천	합천, 남정	합천, 영진	가산, 남정, 합천, 쌍백, 대병, 삼가	합천, 초계
합계	초102, 특1 계103	초99, 특1 계100	초99, 특1 계100	초38, 특2 계39



도지정 연구·시범학교(6)

년도 지역	'16	'17	'18	'19	'20
창원 (창원)	안민, 북면, 화양, 우암, 창원, 명도, 양곡, 온천, 봉곡	창원, 양곡, 온천, 창원천광	창원천광, 토월	토월, 신방	신방
창원 (마산)	우산, 석전, 경남혜림	석전			
창원 (진해)		용동	용동		
진주	배영, 금호, 선학	진주해광			
통영	총렬, 충무	총렬, 두룡, 진남	진남	두룡, 통영잠포	두룡, 통영잠포
사천	수양	수양	용현	용현, 삼천포	삼천포
김해	김해내동, 칠산, 진영대흥, 수남, 진영대창, 김해합성, 율하	진영대흥, 수남, 김해합성, 율하, 대진	대진, 관동, 김해은혜	관동, 김해은혜, 김해동광	김해동광
밀양	예림	예림, 미리벌	미리벌		
거제	거제중앙, 송정, 진목, 마전	마전, 양지, 제산	양지, 거제, 옥포	거제, 옥포, 신현, 기성	신현, 기성
양산	어곡, 서남, 덕계, 동산, 북정	덕계, 동산, 북정, 양산희망	양산	양산, 가남	가남
의령	정곡, 남산, 의령	남산			부림
함안					
창녕	명덕, 동포, 도천	동포			
고성					
남해	지족				
하동	쌍계, 하동		하동	하동	
산청	산청				
함양	서하, 금반				
거창		창남	창남		
합천			합천	합천	
합계	초46, 특1 계47	초25, 특3 계28	초14, 특2 계16	초15, 특2 계17	초8, 특1 계9



아. 꿈나르미학교

년도 지역	'12	'13	'14
창원 (창원)	우암		
창원 (마산)			
창원 (진해)	안청		
진주	천전		금곡
통영			
사천	용현		
김해			진영금병
밀양			수산
거제			승덕
양산	황산		
의령			
함안	호암		호암
창녕	창녕		
고성	하일		
남해	해양		
하동			
산청	삼장		삼장
함양			
거창			
합천			
합계	10개교		6개교



자. 도지정 시범유치원(1)

구분 년도 시군별	문교부지정		본 도 지 정																			
	'83	'86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창원			양곡교 병설	합일교 병설 양지유치원									반송교 병설	남목교 병설	남목교 병설	남정교 병설	(교육부) 창원한별	(교육부) 창원한별			한별 유치원	
마산			무학교 병설	문화유치원		개나리유치원								합포교 병설								
진주				삼일유치원											평거교 병설	축석교 병설					술속나라유치원	
(진양)																						
진해			용동교 병설	제일유치원																		
(창원군)																						
통영																	원평교 병설					
(통영)	산양교 병설	산양교 병설																				
사천																						근양초 병설
(사천)																						
김해																			(사립) 수인사		김해유치원	김해유치원
(김해)														장유교 병설								
밀양									상동교 병설						밀주교 병설							
거제																					한아름유치원	
의령						용덕교 병설																
함안							중앙교 병설	중앙교 병설														
창녕										명덕교 병설	명덕교 병설							창녕교 병설				
양산										기장교 병설	기장교 병설											
(울주구)			온양교 병설						응촌교 병설													
고성							회화교 병설	회화교 병설					동광교 병설					울천교 병설				
남해			창선교 병설																		남명초 병설	남명초 병설
산청														산청교 병설					신안교 병설			
하동																						
함양												안의교 병설	안의교 병설									천령유치원
거창				거창유치원											창동교 병설							
합천				쌍백교 병설																		
계	1	1	3	6	2	2	2	2	2	2	2	2	2	4	3	3	3(특수)	교육부도1	교육부도1	2	4	3



도지정 시범유치원(2)

구분 년도 시군별	교육부 지정	본 도 지 정												
		'08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창원		석화, 노벨	노벨						한별	한사랑				
마산				코오롱 한샘	코오롱 한샘									
진해					중앙병									
진주		한울	한울										한울	
통영											유영병	통영		
사천				사천										
김해				수남병		주석병	김혜유							
밀양								밀양병						
거제									한아름					
양산											신양병			
의령														의령유
함안						함안								
창녕														
고성													고성	
남해														
하동			악양											하동유
산청														
함양		천령												
거창	거창유				거창유									
합천							용주병 대병병 가회병			남정병				
계		4	3	3	3	2	5	2	2	2	2	2	2	2



도지정 시범유치원(3)

연도 지역	'15	'16	'17	'18	'19	'20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통영		통영유	통영유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송덕병	송덕병	송덕병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거창유	거창유							
합천												
계		2										



차. 교육부지정 급식 시범학교

내역 시군별	도시벽지형	농촌형	도시형	비 고
창원				1. 적용시기: '79.1.1.~'82.3.19. 근거: 교직 200-1('80.1.4.) 교직 200-1('83.1.13.) 2. 적용대상: 교감 및 담임전원, 급식위원 3. 밀양명례는 연구학교이지만 시범 급식학교로 확대 적용
울산				
마산				
진주	귀곡	정촌	진주교대부곡	
(진양)				
진해			도천	
(창원군)	천가			
통영				
(통영)	옥동, 하소, 추봉	도산		
사천	늑도, 신수도			
(사천)	가천			
김해	용산			
밀양	고례	명례		
거제	외포, 오미, 창호	계룡		
의령	천곡			
함안		칠원		
창녕	용호			
양산	이천			
(울주구)	신리			
고성	대장			
남해	물건, 북창선			
하동	목계, 왕성			
산청	오부	신안		
함양	용산, 광월			
거창	춘진			
합천	용호	계남, 승산		
합계	27	7	2	



카.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현황(1)

()안은 분교장

- ※ '95.3.1.~'98.2.28.: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에 주민등록 있고, 실 거주하는 교원 반드시 가산점 인정자 명부 등재여부 확인
- ※ '97.3.1. 이후 도서·벽지와 농어촌교육진흥지역근무 택일 불가(그 이전에는 가능함)
- ※ '98.3.1. 이후: 당해지역 학교 근무자 전원
- ※ '09.1.1. 이후: 가지역(도서·벽지제외한 읍·면지역), 나지역(기 지정된 동지역, 인구 7만이상 읍·면지역) 구분 적용
- ※ '14.1.1. 이후: 가지역(군의 면지역), 나지역(읍·시의 면지역), 다지역(기 지정된 동지역, 인구 7만 이상 읍·면지역) 구분 적용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창원	감계	'17.3.1.(나)					진주	내동(신광)	'95.3.1.(가)				'08.3.1.	
	대산	'95.3.1.(가)	'14.1.1.(나)					단목	'95.3.1.(가)					'06.9.1.
	봉강	'95.3.1.(가)	'14.1.1.(나)					대곡	'95.3.1.(가)	'14.1.1.(나)				
	북면	'95.3.1.(가)	'14.1.1.(나)					대암	'95.3.1.(가)					'99.9.1.
	북면(송산)	'95.3.1.(가)	'14.1.1.(나)					덕오	'95.3.1.(가)					'09.3.1.
	북면(화천)	'95.3.1.(가)				'99.9.1.		두문	'95.3.1.(가)					'09.3.1.
	무동	'14.5.1.(나)						문산	'95.3.1.(가)	'14.1.1.(나)				
	신등	'95.3.1.(가)	'14.1.1.(나)					미천	'95.3.1.(가)	'14.1.1.(나)				
	신방	'95.3.1.(가)	'14.1.1.(나)					반성	'95.3.1.(가)	'14.1.1.(나)				
	온천	'95.3.1.(가)	'14.1.1.(나)					사봉	'95.3.1.(가)	'14.1.1.(나)				
	우암	'95.3.1.(가)	'14.1.1.(나)					송정	'95.3.1.(가)					'09.3.1.
	일동	'95.3.1.(가)	'14.1.1.(나)		'19.3.1.			수곡	'95.3.1.(가)	'14.1.1.(나)				
자여	'99.9.1.(가)	'14.1.1.(나)				안간	'95.3.1.(가)					'07.3.1.		
화양	'95.3.1.(가)	'14.1.1.(나)				예하	'95.3.1.(가)	'14.1.1.(나)						
마산	가포	'02.1.1.(가)	'09.1.1.(나)	'14.1.1.(다)			명석/용우	'95.3.1.(가)	'14.1.1.(나)				교명변경	
	감천	'95.3.1.(가)	'09.1.1.(나)	'14.1.1.(다)			원당	'95.3.1.(가)					'99.9.1.	
	광려	'01.3.1.(가)	'09.1.1.(나)	'14.1.1.(다)			이반성	'95.3.1.(가)	'14.1.1.(나)		'19.3.1.			
	구산	'95.3.1.(가)	'14.1.1.(나)				장재	'02.1.1.(가)	'09.1.1.(나)	'14.1.1.(다)	'15.3.1.			
	반동	'95.3.1.(가)	'14.1.1.(나)		'19.3.1.		지수	'95.3.1.(가)	'14.1.1.(나)					
	삼계	'99.3.1.(가)	'09.1.1.(나)	'14.1.1.(다)			야반성(진산)	'95.3.1.(가)					'99.3.1.	
	상일	'99.3.1.(가)	'09.1.1.(나)	'14.1.1.(다)			진성	'95.3.1.(가)	'14.1.1.(나)					
	안계	'02.9.1.(가)	'09.1.1.(나)	'14.1.1.(다)			진주해광	'95.3.1.(가)	'14.1.1.(나)					
	양촌	'95.3.1.(가)				'99.9.1.	집현	'95.3.1.(가)	'14.1.1.(나)					
	진전(여항)	'95.3.1.(가)				'99.9.1.	한평	'01.1.8.(가)	'14.1.1.(나)				'18.3.1.	
	옥봉	'95.3.1.(가)				'99.9.1.	웅천(명동)	'02.1.1.(가)	'09.1.1.(나)	'14.1.1.(다)			'14.3.1.	
	우산	'95.3.1.(가)	'14.1.1.(나)				안골포	'04.9.1.(가)	'09.1.1.(나)	'14.1.1.(다)				
	진전(이창)	'95.3.1.(가)				'99.9.1.	안청	'02.1.1.(가)	'09.1.1.(나)	'14.1.1.(다)				
	전안	'07.3.1.(가)	'09.1.1.(나)	'14.1.1.(다)			용원	'02.1.1.(가)	'09.1.1.(나)	'14.1.1.(다)				
	중리	'95.3.1.(가)	'09.1.1.(나)	'14.1.1.(다)			웅동	'02.1.1.(가)	'09.1.1.(나)	'14.1.1.(다)				
	진동	'95.3.1.(가)	'14.1.1.(나)				웅천	'02.1.1.(가)	'09.1.1.(나)	'14.1.1.(다)				
	진전	'95.3.1.(가)	'14.1.1.(나)				진해신항	'17.3.1.(다)						
	하북	'95.3.1.(가)	'14.1.1.(나)				광도	'95.3.1.(가)	'14.1.1.(나)					
현동	'02.1.1.(가)	'09.1.1.(나)	14.1.1.(다)			광도(신애)	'95.3.1.(가)					'98.3.1.		
호계	'02.9.1.(가)	'09.1.1.(나)	14.1.1.(다)			남포	'02.1.1.(가)	'09.1.1.(나)	14.1.1.(다)					
진주	관봉	'95.3.1.(가)	'14.1.1.(나)				도산	'95.3.1.(가)	'14.1.1.(나)					
	금곡	'95.3.1.(가)	'14.1.1.(나)				도원	'95.3.1.(가)					'99.3.1.	
	금산	'95.3.1.(가)	'14.1.1.(나)				벽방	'01.1.8.(가)	'14.1.1.(나)					
	금호	'08.3.1.(가)	'14.1.1.(나)				산양	'95.3.1.(가)	'14.1.1.(나)					
	내동	'95.3.1.(가)	'14.1.1.(나)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현황(2)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통영	한려(영원)	'95.3.1.(가)	'14.1.1.(나)			'21.3.1.	김해	대진	'95.3.1.(가)	'14.1.1.(나)			
	용남	'95.3.1.(가)	'14.1.1.(나)					대청	'05.3.1.(가)	'09.1.1.(나)			'13.7.1.
	원평	'95.3.1.(가)	'14.1.1.(나)					덕정	'05.9.1.(가)	'09.1.1.(나)			'13.7.1.
	장문	'95.3.1.(가)				'99.9.1.		삼문	'02.9.1.(가)	'09.1.1.(나)			'13.7.1.
	죽림	'07.3.1.(가)	'14.1.1.(나)					생림	'95.3.1.(가)	'14.1.1.(나)			
	제석	'15.3.1.(나)						석봉	'04.3.1.(가)	'09.1.1.(나)			'13.7.1.
	화양	'95.3.1.(가)				'07.3.1.		수남	'95.3.1.(가)	'09.3.1.(나)			'13.7.1.
	화양(마남)	'95.3.1.(가)				'98.3.1.		울하	'10.3.1.(나)				'13.7.1.
통영잠포	'08.3.1.(가)	'14.1.1.(나)				신천	'95.3.1.(가)	'14.1.1.(나)			'14.3.1.		
사천	건흥	'95.3.1.(가)				'99.9.1.	안명	'95.3.1.(가)				'14.1.1.	
	곤명	'95.3.1.(가)	'14.1.1.(나)			'12.3.1.	월산	'01.3.1.(가)	'09.1.1.(나)			'13.7.1.	
	곤양	'95.3.1.(가)	'14.1.1.(나)				이북	'95.3.1.(가)	'14.1.1.(나)				
	남양	'09.1.1.(가)	'09.1.1.(나)	'14.1.1.(다)			이작	'95.3.1.(가)				'14.1.1.	
	대성	'09.1.1.(가)	'09.1.1.(나)	'14.1.1.(다)			이작(도요)	'95.3.1.(가)				'98.3.1.	
	동성	'95.3.1.(가)	'14.1.1.(나)				장유	'95.3.1.(가)	'09.1.1.(나)			'13.7.1.	
	사남	'95.3.1.(가) '10.9.1.(가)	'14.1.1.(나)			'99.9.1.	주동	'95.3.1.(가)	'14.1.1.(나)				'19.3.1.
	사천	'95.3.1.(가)	'14.1.1.(나)				주석	'02.9.1.(가)	'09.1.1.(나)			'13.7.1.	
	삼성	'95.3.1.(가)	'14.1.1.(나)				주촌	'95.3.1.(가)	'14.1.1.(나)				
	서포	'95.3.1.(가)	'14.1.1.(나)		'19.3.1.		진례	'95.3.1.(가)	'14.1.1.(나)				
	선진	'95.3.1.(가)				'12.3.1.	진영금병	'06.3.1.(가)	'14.1.1.(나)				
	수양	'07.9.1.(가)	'14.1.1.(나)				진영대창	'99.3.1.(가)	'14.1.1.(나)				
	완사	'95.3.1.(가)				'12.3.1.	진영대흥	'99.3.1.(가)	'14.1.1.(나)				
	용현	'95.3.1.(가)	'14.1.1.(나)				진영중앙	'15.3.1.(나)					
	정동	'95.3.1.(가)	'14.1.1.(나)				진영장동	'21.3.1.(나)					
	축동	'95.3.1.(가)	'14.1.1.(나)				칠산	'02.1.1.(가)	'09.1.1.(나)	'14.1.1.(다)			
	삼천포	'17.9.1.(다)					한림	'95.3.1.(가)	'14.1.1.(나)				
	문선	'17.9.1.(다)					한림(가생)	'95.3.1.(가)					'09.3.1.
	노산	'17.9.1.(다)					관동	'13.3.1.(나)				'13.7.1.	
	대방	'17.9.1.(다)					밀양	삼량진	'95.3.1.(가)	'14.1.1.(나)			
용산	'17.9.1.(다)					송진		'95.3.1.(가)	'14.1.1.(나)				
김해은혜	'02.9.1.(가)	'09.1.1.(나)	'14.1.1.(다)			송진		'95.3.1.(가)	'14.1.1.(나)				
계동	'02.9.1.(가)	'09.1.1.(나)		'13.7.1.		안태		'95.3.1.(가)					'99.9.1.
한림(금곡)	'95.3.1.(가)				'99.9.1.	부북		'95.3.1.(가)	'14.1.1.(나)				
금동	'95.3.1.(가)			'14.1.1.		상동(안인)		'95.3.1.(가)					'99.3.1.
금산	'95.3.1.(가)	'14.1.1.(나)				사포		'95.3.1.(가)	'14.1.1.(나)				
김해부곡	'02.9.1.(가)	'09.1.1.(나)		'13.7.1.		상동		'95.3.1.(가)	'14.1.1.(나)				
김해신안	'04.9.1.(가)	'09.1.1.(나)		'13.7.1.		산외		'95.3.1.(가)	'14.1.1.(나)				
나전	'95.3.1.(가)				'99.3.1.	단산		'95.3.1.(가)					'09.3.1.
능동	'04.9.1.(가)	'09.1.1.(나)		'13.7.1.									
대감	'95.3.1.(가)	'14.1.1.(나)											
대동	'95.3.1.(가)	'14.1.1.(나)											
대중	'95.3.1.(가)	'14.1.1.(나)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현황(3)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 지)	변경일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 지)	변경일 (급 지)	변경일 (급 지)	해제일	폐교일
밀양	범평	'95.3.1(가)				'98.3.1	거제	연초	'95.3.1(가)	'14.1.1(나)			
	연금	'95.3.1(가)				'99.9.1		오량	'95.3.1(가)	'14.1.1(나)			
	상남	'95.3.1(가)	'14.1.1(나)					오비	'01.1.8(가)	'14.1.1(나)			
	초동(반월)	'95.3.1(가)				'99.9.1		옥포	'02.1.1(가)	'09.1.1(나)	'14.1.1(다)		
	산내	'95.3.1(가)	'14.1.1(나)					외간	'95.3.1(가)	'14.1.1(나)			
	내진	'95.3.1(가)				'99.9.1		외포	'95.3.1(가)	'14.1.1(나)			
	산내남명	'95.3.1(가)			'10.3.1			일운	'95.3.1(가)	'14.1.1(나)			
	태룡	'95.3.1(가)	'14.1.1(나)					장목	'95.3.1(가)	'14.1.1(나)			
	산동	'95.3.1(가)			'10.3.1			장승포	'02.1.1(가)	'09.1.1(나)	'14.1.1(다)		
	예림	'95.3.1(가)	'14.1.1(나)					장평	'99.3.1(가)	'09.1.1(나)	'14.1.1(다)		
	수(하남대사)	'95.3.1(가)				'13.3.1		재산	'08.3.1(가)	'09.1.1(나)	'14.1.1(다)		
	봉황	'95.3.1(가)				'99.9.1		중곡	'99.3.1(가)	'09.1.1(나)	'14.1.1(다)		
	백산	'95.3.1(가)	'14.1.1(나)			'14.3.1		진목	'02.3.1(가)	'09.1.1(나)	'14.1.1(다)		
	수산	'95.3.1(가)	'14.1.1(나)					하청	'95.3.1(가)	'14.1.1(나)			
	월산	'95.3.1(가)				'99.9.1		가남	'17.3.1(나)				
	초동	'95.3.1(가)	'14.1.1(나)					가양	'18.3.1(나)				
	무안	'95.3.1(가)	'14.1.1(나)					가촌	'20.3.1(나)				
	청도	'95.3.1(가)	'14.1.1(나)					금오	'20.3.1(나)				
거제	거제고현	'05.9.1(가)	'09.1.1(나)	'14.1.1(다)			대운	'05.9.1(가)	'09.1.1(나)	'14.1.1(다)			
	거제용소	'21.3.1(다)					덕계	'95.3.1(가)	'09.1.1(나)	'14.1.1(다)			
	거제중앙	'03.3.1(가)	'09.1.1(나)	'14.1.1(다)			동면	'95.3.1(가)				'11.3.1	
	거제	'95.3.1(가)	'14.1.1(나)				동산	'95.3.1(가)	'14.1.1(나)				
	계룡	'99.3.1(가)	'09.1.1(나)	'14.1.1(다)			물금	'95.3.1(가)	'14.1.1(나)				
	일운(주좌)	'95.3.1(가)	'14.1.1(나)			'99.9.1	백동	'01.9.1(가)	'09.1.1(나)	'14.1.1(다)			
	국산	'02.1.1(가)	'09.1.1(나)	'14.1.1(다)			범어	'95.3.1(가)	'14.1.1(나)				
	기성	'95.3.1(가)	'14.1.1(나)				상북	'95.3.1(가)	'14.1.1(나)				
	내곡	'15.3.1(다)					서남	'97.9.1(가)	'14.1.1(나)				
	농포	'02.1.1(가)	'09.1.1(나)	'14.1.1(다)			서창	'95.3.1(가)	'09.1.1(나)	'14.1.1(다)			
	대금	'95.3.1(가)	'14.1.1(나)			'98.3.1	소토	'95.3.1(가)	'14.1.1(나)				
	동부	'95.3.1(가)	'14.1.1(나)				신명	'04.3.1(가)	'09.1.1(나)	'14.1.1(다)			
	둔덕	'95.3.1(가)	'14.1.1(나)			'99.9.1	어곡	'02.1.1(가)	'09.1.1(나)	'14.1.1(다)			
	마전	'02.1.1(가)	'09.1.1(나)	'14.1.1(다)			영천	'95.3.1(가)	'14.1.1(나)				
	명사(다대)	'01.1.8(가)	'14.1.1(나)			'07.3.1	오봉	'02.3.1(가)	'14.1.1(나)				
	사등	'95.3.1(가)	'14.1.1(나)				용연	'95.3.1(가)	'14.1.1(나)				
	삼룡	'95.3.1~'99.2.28 '07.9.1(가)	'09.1.1(나)	'14.1.1(다)			웅상	'95.3.1(가)	'09.1.1(나)	'14.1.1(다)			
	상동	'15.3.1(다)					원동	'95.3.1(가)	'14.1.1(나)		'14.1.1		
	송정	'95.3.1(가)	'14.1.1(나)				좌삼	'95.3.1(가)	'14.1.1(나)		'19.3.1		
	수월	'95.3.1(가)	'09.1.1(나)	'14.1.1(다)			중산	'15.3.1(나)					
	송덕	'95.3.1(가)	'14.1.1(나)				천성	'99.9.1(가)	'09.1.1(나)	'14.1.1(다)			
	송덕(학산)	'95.3.1(가)	'14.1.1(나)			'99.9.1	평산	'96.9.1(가)	'09.1.1(나)	'14.1.1(다)			
	신현	'99.3.1(가)	'09.1.1(나)	'14.1.1(다)			하북	'95.3.1(가)	'14.1.1(나)				
	아주	'02.1.1(가)	'09.1.1(나)	'14.1.1(다)			화계	'95.3.1(가)	'14.1.1(나)				
	거제양정	'18.9.1(다)					황산	'08.3.1(가)	'14.1.1(나)				
	양지	'04.3.1(가)	'09.1.1(나)	'14.1.1(다)			회야	'21.3.1(다)					
							성산	'09.3.1(가)	'14.1.1(나)				
							양산희망	'11.3.1(가)	'14.1.1(나)				
						석산	'13.3.1(가)	'14.1.1(나)					
						신주	'15.3.1(나)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현황(4)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의령	의령	'99.3.1.(가)	'14.1.1.(나)			함안	칠서	'95.3.1.(가)			
	남산	'99.3.1.(가)	'14.1.1.(나)				칠서(이룡)	'95.3.1.(가)			
	벽화	'95.3.1.(가)			'99.9.1.		칠북	'95.3.1.(가)			'15.8.31
	가례	'95.3.1.(가)					칠북(이령)	'95.3.1.(가)	칠서(이령) '15.9.1.		
	칠곡	'95.3.1.(가)					칠원	'95.3.1.(가)	'15.1.1.(나)		
	대의	'95.3.1.(가)					유원	'95.3.1.(가)	'15.1.1.(나)		
	화정	'95.3.1.(가)					예곡	'95.3.1.(가)	'15.1.1.(나)		
	용덕	'95.3.1.(가)					산인	'95.3.1.(가)			
	용덕(덕암)	'95.3.1.(가)			'00.3.1.		문암	'95.3.1.(가)			
	정곡	'95.3.1.(가)					외암	'95.3.1.(가)		'14.1.1	
	지정	'95.3.1.(가)					호암	'07.9.1.(가)	'15.1.1.(나)		
	낙서	'95.3.1.(가)		'99.3.1.		창녕	창녕	'99.3.1.(가)	'14.1.1.(나)		
	부림	'95.3.1.(가)					명덕	'99.3.1.(가)	'14.1.1.(나)		
	궁류	'95.3.1.(가)		'10.3.1.			창락	'95.3.1.(가)			'07.3.1.
	유곡	'95.3.1.(가)		'05.3.1.			창남	'95.3.1.(가)			'96.3.1.
	유곡(송산)	'95.3.1.(가)			'97.3.1.		남지	'99.3.1.(가)	'14.1.1.(나)		
	은광	'96.3.1.(가)					남지(반포)	'95.3.1.(가)			'99.3.1.
함안	가야	'99.3.1.(가)	'14.1.1.(나)				동포	'99.3.1.(가)	'14.1.1.(나)		
	아라	'99.3.1.(가)	'14.1.1.(나)				남곡	'95.3.1.(가)			'03.3.1.
	중양	'95.3.1.(가)	'14.1.1.(나)				고암	'95.3.1.(가)			
	함안	'95.3.1.(가)					냉천창녕성산	'95.3.1.(가)			교명변경
	군북	'95.3.1.(가)					대합	'95.3.1.(가)			
	군북(사촌)	'95.3.1.(가)			'99.3.1.		모전	'95.3.1.(가)			'98.3.1.
	월촌	'95.3.1.(가)		'19.3.1.			구룡	'95.3.1.(가)			'99.3.1.
	범수	'95.3.1.(가)					이방	'95.3.1.(가)		'14.1.1.	
	우거	'95.3.1.(가)			'99.3.1.		이방(현창)	'95.3.1.(가)			'98.3.1.
	관동	'95.3.1.(가)			'12.3.1.		장천	'95.3.1.(가)		'14.1.1.	
	문현	'95.3.1.(가)			'97.3.1.	유어	'95.3.1.(가)				
	대산	'95.3.1.(가)				유어(회룡)	'95.3.1.(가)			'97.3.1.	
	대산(부목)	'95.3.1.(가)			'98.9.1.	대지	'95.3.1.(가)				
	서촌	'95.3.1.(가)			'99.3.1.	대학	'95.3.1.(가)			'99.9.1.	
	구혜	'95.3.1.(가)			'07.3.1.	계성	'95.3.1.(가)			'99.3.1.	
					영산	'95.3.1.(가)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현황(5)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지정명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창녕	월령	'95.3.1.(가)			'99.9.1.	고성	거류(대장)	'95.3.1.(가)			'99.9.1.
	장마	'95.3.1.(가)					거류	'95.3.1.(가)			
	도일	'95.3.1.(가)			'07.3.1.		동광	'95.3.1.(가)			
	도천	'95.3.1.(가)					대성(광일)	'95.3.1.(가)			'99.3.1.
	도일(송진)	'95.3.1.(가)			'95.9.1.		방산	'95.3.1.(가)			
	길곡	'95.3.1.(가)				남해	남해	'99.3.1.(가)	'14.1.1.(나)		
	부곡	'95.3.1.(가)					해양	'99.3.1.(가)	'14.1.1.(나)		
	수다	'95.3.1.(가)			'99.9.1.		이동	'95.3.1.(가)			
	계창	'95.3.1.(가)					이동(다초)	'95.3.1.(가)			'03.3.1.
고성	고성	'99.3.1.(가)	'14.1.1.(나)				성남	'95.3.1.(가)			'99.9.1.
	철성	'95.3.1.(가)	'14.1.1.(나)				상주	'95.3.1.(가)		'14.1.1.	
	대성	'99.3.1.(가)	'14.1.1.(나)				삼동	'95.3.1.(가)			
	울천	'95.3.1.(가)	'14.1.1.(나)				물건	'95.3.1.(가)			'99.9.1.
	삼산	'95.3.1.(가)					평산	'95.3.1.(가)			'98.3.1.
	삼산(병산)	'95.3.1.(가)			'96.3.1.		성명	'95.3.1.(가)			
	삼오	'95.3.1.(가)			'99.9.1.		성명(대서)	'95.3.1.(가)			'98.9.1.
	하일	'95.3.1.(가)		'14.1.1.			남상	'95.3.1.(가)			'99.9.1.
	하이	'95.3.1.(가)					성명(중현)	'95.3.1.(가)			'01.3.1.
	하이(봉현)	'95.3.1.(가)			'99.9.1.		고현	'95.3.1.(가)			
	월흥	'95.3.1.(가)			'99.3.1.		도마	'95.3.1.(가)			
	상리	'95.3.1.(가)					고현(갈화)	'95.3.1.(가)			'99.9.1.
	상동	'95.3.1.(가)			'99.9.1.		설천	'95.3.1.(가)			
	대흥	'95.3.1.(가)					진목	'95.3.1.(가)			'99.9.1.
	양지	'95.3.1.(가)			'99.3.1.		설천(덕신)	'95.3.1.(가)			'11.3.1.
	송계	'95.3.1.(가)			'97.3.1.		지족	'95.3.1.(가)			
	영현	'95.3.1.(가)				이동(난령)	'95.3.1.(가)			'99.9.1.	
	영오	'95.3.1.(가)				미조	'95.3.1.(가)		'14.1.1.		
	영오(영동)	'95.3.1.(가)			'98.9.1.	미조(호도)	'95.3.1.(가)			'99.3.1.	
	개천	'95.3.1.(가)				송남	'95.3.1.(가)			'99.9.1.	
구만	'95.3.1.(가)				남명	'95.3.1.(가)		'19.3.1.			
회화	'95.3.1.(가)				삼남(가천)	'95.3.1.(가)			'99.9.1.		
마암	'95.3.1.(가)				남명(상덕)	'95.3.1.(가)			'03.3.1.		
삼락	'95.3.1.(가)			'99.3.1.	북창	'95.3.1.(가)			'99.9.1.		
동해	'95.3.1.(가)				동창	'95.3.1.(가)			'99.9.1.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현황(6)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지정명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남해	광천	'95.3.1.(가)			'99.9.1.	산청	고읍	'95.3.1.(가)			'99.3.1.	
	창선	'01.1.8.(가)					금서	'95.3.1.(가)				
하동	하동	'99.3.1.(가)	'14.1.1.(나)				매촌	'95.3.1.(가)				'99.9.1.
	신기	'95.3.1.(가)			'07.3.1.		매촌(특곡)	'95.3.1.(가)				'98.3.1.
	홍룡	'95.3.1.(가)			'99.9.1.		대포	'95.3.1.(가)				'99.9.1.
	화개	'95.3.1.(가)					덕산	'95.3.1.(가)				
	쌍계	'95.3.1.(가)					단성	'95.3.1.(가)				
	화개(부덕)	'95.3.1.(가)			'99.9.1.		단성(남사)	'95.3.1.(가)				'98.3.1.
	매계	'95.3.1.(가)			'98.3.1.		신안	'95.3.1.(가)				
	축지	'95.3.1.(가)			'99.9.1.		월성	'95.3.1.(가)				'97.3.1.
	적량	'95.3.1.(가)					도산	'95.3.1.(가)				
	적량(영신)	'95.3.1.(가)			'07.3.1.		생비량	'95.3.1.(가)				
	횡천	'95.3.1.(가)					생비량(송계)	'95.3.1.(가)				'99.3.1.
	고전	'95.3.1.(가)					단계	'95.3.1.(가)				
	고전(고남)	'95.3.1.(가)			'21.3.1.		범물	'95.3.1.(가)				'99.9.1.
	고하	'95.3.1.(가)			'05.3.1.		함양	함양	'99.3.1.(가)	'14.1.1.(나)		
노량(김양)	'95.3.1.(가)			'07.3.1.	위성	'99.3.1.(가)		'14.1.1.(나)				
진정	'95.3.1.(가)				위림	'95.3.1.(가)		'14.1.1.(나)				
노량	'95.3.1.(가)				석복	'95.3.1.(가)					'99.9.1.	
진교	'95.3.1.(가)				팔령	'95.3.1.(가)					'99.9.1.	
양포	'95.3.1.(가)			'99.9.1.	금반(휴천)	'95.3.1.(가)					'98.3.1.	
양보	'95.3.1.(가)				금반	'95.3.1.(가)				'12.3.1.		
운암	'95.3.1.(가)			'99.9.1.	유림	'95.3.1.(가)						
북천	'95.3.1.(가)				대응	'95.3.1.(가)					'99.9.1.	
북천(대아)	'95.3.1.(가)			'97.3.1.	수동	'95.3.1.(가)						
옥중	'95.3.1.(가)				상내백	'95.3.1.(가)					'99.9.1.	
궁항	'01.1.8.(가)				지곡	'95.3.1.(가)						
악양	'95.3.1.(가)				배재	'95.3.1.(가)					'99.3.1.	
묵계(청암)	'10.3.1.(가)				안의	'95.3.1.(가)						
산청	산청	'99.3.1.(가)	'14.1.1.(나)			안의(대지)	'95.3.1.(가)				'97.3.1.	
	지품	'95.3.1.(가)			'99.9.1.	서하	'95.3.1.(가)					
	차황	'95.3.1.(가)				서하(봉진)	'95.3.1.(가)				'99.9.1.	
	오부(오성)	'95.3.1.(가)			'96.3.1.	서상	'95.3.1.(가)					
	생초	'95.3.1.(가)				백전	'95.3.1.(가)			'14.1.1.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현황(7)

()안은 분교장

시군	학교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시군	학교명	지정명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폐교일		
함양	병곡	'95.3.1.(가)				합천	청덕	'95.3.1.(가)					
거창	거창	'99.3.1.(가)	'14.1.1.(나)				청덕(낙진)	'95.3.1.(가)				'99.9.1.	
	창남	'99.3.1.(가)	'14.1.1.(나)				적중	'95.3.1.(가)					
	창동	'99.3.1.(가)	'14.1.1.(나)				대양	'95.3.1.(가)					
	월천	'95.3.1.(가)	'14.1.1.(나)				쌍백	'95.3.1.(가)					
	주상	'95.3.1.(가)					삼가	'95.3.1.(가)					
	완대	'95.3.1.(가)			'97.3.1.		가회	'95.3.1.(가)					
	웅양	'95.3.1.(가)					대병	'95.3.1.(가)					
	하성	'95.3.1.(가)			'99.9.1.		용주	'95.3.1.(가)					
	고제	'95.3.1.(가)		'11.3.1.			용호	'95.3.1.(가)				'99.9.1.	
	북상	'95.3.1.(가)					봉산	'01.1.8.(가)			'14.1.1.		
	위천	'95.3.1.(가)					송산	'01.1.8.(가)			'14.1.1.	'19.3.1.	
	마리	'95.3.1.(가)					유치원 현황						
	남상	'95.3.1.(가)					*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급지에 따름						
	오계	'95.3.1.(가)			'98.3.1.		창원	진달래	'18.9.1.(나)				
	남상중앙	'95.3.1.(가)			'99.9.1.		마산	현동숲	'20.9.1.(다)				
	남하	'95.3.1.(가)					진해	진해	'10.3.1.(나)	'14.1.1.(다)			
	가조	'95.3.1.(가)						곰내	'20.3.1.(다)				
	가산	'95.3.1.(가)			'96.3.1.		통영	광도	'14.3.1.(나)				
	석강	'95.3.1.(가)			'99.9.1.			통영	'08.3.1.(가)	'14.1.1.(나)			
	가북	'95.3.1.(가)		'14.1.1.		사천	사천	'03.9.1.(가)	'14.1.1.(나)				
가북(중촌)	'95.3.1.(가)			'94.3.1.	선진		'14.3.1.(나)						
아림	'04.3.1.(가)	'14.1.1.(나)			김해	장유	'12.3.1.(나)			'13.7.1.			
신원	'01.1.8.(가)		'14.1.1.			진영	'21.3.1.(나)						
거창나래	'19.3.1.(가)				밀양	밀양	'15.9.1.(나)						
합천	합천	'99.3.1.(가)	'14.1.1.(나)			거제	한아름	'99.3.1.(가)	'09.1.1.(나)	'14.1.1.(다)			
	남정	'99.3.1.(가)	'14.1.1.(나)				거제	'20.3.1.(다)					
	묘산	'95.3.1.(가)				양산	양산	'15.3.1.(나)					
	가산	'95.3.1.(가)			'19.3.1.		오봉	'19.3.1.(나)					
	야로	'95.3.1.(가)		'19.3.1.			물금	'21.3.1.(나)					
	야로(월광)	'95.3.1.(가)			'99.9.1.	의령	의령	'12.9.1.(가)	'14.1.1.(나)				
	울곡	'95.3.1.(가)			'99.9.1.	함안	함안	'05.3.1.(가)	'14.1.1.(나)				
	영전	'95.3.1.(가)				창녕	창녕	'09.3.1.(가)	'14.1.1.(나)				
	초계	'95.3.1.(가)				고성	고성	'96.3.1.(가)					
	계남	'95.3.1.(가)			'99.9.1.	남해	남해	'03.3.1.(가)	'14.1.1.(나)				
	쌍책	'95.3.1.(가)				하동	하동	'11.3.1.(가)	'14.1.1.(나)				
	쌍책(이책)	'95.3.1.(가)			'99.9.1.	산청	산청	'19.3.1.(가)					
						함양	천령	'01.3.1.(가)	'14.1.1.(나)				
						거창	거창	'05.3.1.(가)	'14.1.1.(나)				
					합천	합천	'12.3.1.(가)	'14.1.1.(나)					

**타. 준벽지학교 현황**

- ※ 2014.1.1.이후 실적 인정 <신설 2012.7.11.>
- ※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도서·벽지 근무 경력, 농어촌진흥학교 근무경력, 교육감 소속교육기관 파견근무경력 가산점과는 중복사용 불가
- ※ 도서·벽지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과는 택일(합산불가)
- ※ 준벽지학교 재지정 및 신규지정 기간: 2019.3.1.~2024.2.29.(5년 주기 재평가)

인사구역	학교명	최초지정일	재지정일	해제일	폐교일
창원	일동초	2019.3.1.			
마산	반동초	2019.3.1.			
진주	이반성초	2019.3.1.			
사천	서포초	2019.3.1.			
김해	금동초	2014.1.1.	2019.3.1.		
	안명초	2014.1.1.	2019.3.1.		
	이작초	2014.1.1.	2019.3.1.		
양산	원동초	2014.1.1.	2019.3.1.		
	좌삼초	2019.3.1.			
함안	외암초	2014.1.1.	2019.3.1.		
	월촌초	2019.3.1.			
창녕	이방초	2014.1.1.	2019.3.1.		
	장천초	2014.1.1.	2019.3.1.		
고성	하일초	2014.1.1.	2019.3.1.		
남해	미조초	2014.1.1.	2019.3.1.		
	상주초	2014.1.1.	2019.3.1.		
	남명초	2019.3.1.			
함양	백전초	2014.1.1.	2019.3.1.		
거창	신원초	2014.1.1.	2019.3.1.		
	가북초	2014.1.1.	2019.3.1.		
합천	봉산초	2014.1.1.	2019.3.1.		
	승산초	2014.1.1.			2019.3.1.
	합천가야초	2019.3.1.			
	야로초	2019.3.1.			



파.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한국사 연수 인정 목록

〈원격연수〉

연번	콘텐츠명	차시	연수원명	대상 시기
1	美(아름답게) 完成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전근대사-	30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2	美(아름답게) 完成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근현대사-	30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	근대, 현대
3	美(아름답게) 完成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60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4	송내관의 박물관기행	30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5	선택과 집중 초코집 한국사	60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6	한자와 논술로 배우는 우리역사	30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7	논술로 배우는 생생 우리 역사	15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8	정사와 야사를 관통하는 한국사	30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9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사 이미지 노트 1	30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10	만만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0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11	만만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실전편)	60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12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사 이미지 노트2	30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	근세, 근대, 현대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것만 기억하라!	60	유니텔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14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사의 이해	30	카운피어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15	한번에 끝내는 한국사	60	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16	설민석의 조선왕초실록	30	티치빌원격교육연수원	근세
17	최태성의 한 눈에 사로잡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0	티치빌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18	장릉 선생과 함께 하는 한국사 맞추열전	30	티치빌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19	눈으로 배우고 이야기로 즐기는 한국사	60	티치빌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20	수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한국사	30	티치빌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21	최태성-이윤석의 역사저널 그날, 조선편	30	티치빌원격교육연수원	근세
22	국가공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번에 끝내기	40	한국교원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23	살아있는 한국사, 역사스페셜	30	한국교원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24	설민석의 백설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0	한국교원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25	설민석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상)	30	한국교원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26	설민석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하)	30	한국교원연수원	근대, 현대
27	그뎨 왜? 이야기로 풀어보는 한국사 30선	30	한국교원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2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주 완성(개념정리+기출문제 풀이)	47	한국교원캠퍼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2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완벽 대비	30	한국교원캠퍼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30	숲을 보는 한국사(검정시험 완벽대비)	60	한국교원캠퍼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31	곰뽕과 함께 잡는 두 마리 토끼! (한국사+논술)	30	한국교원캠퍼스	고대, 중세, 근세
3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주 단기 완벽정리! (고급과정)	15	한국교원캠퍼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33	류성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0	한국교원캠퍼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3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론·기출문제 한방에 끝내기	30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35	적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 근현대사	30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	근대, 현대
36	적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 전근대사	30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37	그림으로 이해하고 테마로 정리하는 통합 한국사!	60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38	선택과 집중! 한눈에 정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0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39	한눈에 쓱쓱 우리 역사 이야기	30	중앙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40	뚝뚝! 한국사능력검정	15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41	색다른 한국사 I	15	중앙교육연수원	
42	색다른 한국사 II	15	중앙교육연수원	
43	색다른 한국사 I, II	30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류성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 과정은 인정되지 않음



〈집합연수〉

① 2015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대상 시기: 한국사 전시기)

순	연수 과정	대상	연수시간	주관기관(이수증 발급기관)	인정여부
1	역사교원 단기 연수	초·중등	30	국사편찬위원회	인정
2	동아시아속의 한국사	초등	30	동북아역사재단	인정
		중등	60		
3	독도 교원 연수	초·중등	15	동북아역사재단	인정
4	독도 탐방 연수	초·중등	18	동북아역사재단	인정
5	공감 한국학	초·중등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정
6	역사교원 심화 연수	중등	7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	인정

② 2016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대상 시기: 한국사 전시기)

순	연수 과정	대상	연수시간	주관기관(이수증 발급기관)	인정여부
1	역사교원 단기 연수	초·중등	30	국사편찬위원회	인정
2	동아시아속의 한국사	초등	30	동북아역사재단	인정
		중등	60		
3	독도 교원 연수	초·중등	15	동북아역사재단	인정
4	독도 탐방 연수	초·중등	18	동북아역사재단	인정
5	공감 한국학	초·중등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정
6	역사교원 심화 연수	중등	2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	인정

③ 2017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대상 시기: 한국사 전시기)

순	연수 과정	대상	연수시간	주관기관	인정여부
1	역사교원 단기 연수	초등	30	국사편찬위원회	인정
		중등			
2	동아시아속의 한국사	초등	30	동북아역사재단	인정
		중등			
3	독도 교원 연수	초·중등	30	동북아역사재단	인정
4	공감 한국학	초등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정
		중등			
5	역사교원 심화 연수	초등	1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	인정
		중등			

※ 역사교원 심화 연수(120시간)는 향후 60시간 이하 과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

Ⅱ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 서식 목록
2. 인사서류 제출경로
3. 대상별 제출서류
4. 인사카드(전체) 출력 및 제출방법
5. 인사서류 제출일자
6. 서식 및 작성요령



1. 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식명	법정서식번호	형식	페이지
〈서식1〉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한글	p.82
〈서식2〉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	엑셀	p.83
〈서식3〉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별지 제4호의2서식)	엑셀	p.85
〈서식4〉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별지 제4호의2서식)	엑셀	p.87
〈서식5〉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별지 제4호의2서식)	엑셀	p.89
〈서식6〉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별지 제4호의3서식)	엑셀	p.90
〈서식7〉	2020.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일람표		엑셀	p.91
〈서식8〉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자기실적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한글	p.92
〈서식9〉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3호서식)	엑셀	p.93
〈서식10〉	2020.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성적 평정 일람표		엑셀	p.94
〈서식11〉	승진(자격)후보자 평정표		엑셀	p.95
〈서식12〉	경력평정표	(별지 제1호서식)	엑셀	p.96
〈서식13〉	연수성적평정표	(별지 제5호서식)	엑셀	p.97
〈서식14〉	가산점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엑셀	p.98
〈서식15〉	직무연수 실적표		엑셀	p.99
〈서식16〉	2021.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엑셀	p.100
〈서식17〉	2021.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엑셀	p.101
〈서식18〉	교(원)감 승진후보자 명부	(별지 제6호의2서식)	엑셀	p.102
〈서식19〉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엑셀	p.103
〈서식20〉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교(원)감 자격, 교(원)감 승진)		엑셀	p.104
〈서식21〉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 (교(원)장 자격, 교(원)장 승진, 장학(교육연구)관 승진)		엑셀	p.104
〈서식22〉	2021. 교(원)감 자격연수대상후보자 예상점수 분포표(특수교감 포함)		엑셀	p.105
〈서식23〉	근무평정 총괄표		엑셀	p.106
〈서식24〉	가산점평정자료(인정자명부)		엑셀	p.107

※ 서식 탑재: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자료실 탑재함



2. 인사서류 제출경로

구분	서식번호	서식명	법정서식번호	제출경로	제출내용		형식	페이지
					파일	출력물		
근무 성적 평정 및 다면 평가	교사	<서식1>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자체 보관		○	한글	p.82
		<서식2>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	학교→교육지원청		○	엑셀	p.83
		<서식3>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별지 제4호의2서식]	자체 보관		○	엑셀	p.85
		<서식4>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별지 제4호의2서식]	자체 보관		○	엑셀	p.87
		<서식5>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별지 제4호의2서식]	학교→지원청		○	엑셀	p.89
		<서식6>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별지 제4호의3서식]	학교→지원청		○	엑셀	p.90
	<서식7> 2020.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일람표		학교→지원청(기관)→도	○	○	엑셀	p.91	
	교(원)감, 장학(교육 연구)사	<서식8>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자기실적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지원청, 기관 보관		○	한글	p.92
		<서식9>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3호서식]	학교→지원청(기관)→도		○	엑셀	p.93
		<서식10> 2020.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 일람표		학교→지원청(기관)→도	○	○	엑셀	p.94
교사 교감	<서식23> 근무평정 총괄표		학교→지원청(기관)→도		○	엑셀	p.106	
자격 및 승진	평정표	<서식11> 승진(자격)후보자 평정표		학교→지원청(기관)→도		○	엑셀	p.95
		<서식12> 경력평정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지원청(기관)→도		○	엑셀	p.96
		<서식13> 연수성적평정표	[별지 제5호서식]	학교→지원청(기관)→도		○	엑셀	p.97
		<서식14> 가산점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학교→지원청(기관)→도		○	엑셀	p.98
		<서식15> 직무연수 실적표		학교→지원청(기관)→도		○	엑셀	p.99
	명부	<서식16> 2021.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학교→지원청(기관)→도	○	○	엑셀	p.100
		<서식17> 2021.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학교→지원청(기관)→도	○	○	엑셀	p.101
		<서식18> 교(원)감 승진후보자 명부	[별지 제6호의2서식]	학교→지원청(기관)→도	○	○	엑셀	p.102
		<서식19>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학교→지원청(기관)→도	○	○	엑셀	p.103
	근무 성적 일람표	<서식20>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 (교(원)감 자격, 교(원)감 승진)		학교→지원청(기관)→도	○	○	엑셀	p.104
		<서식21>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 (교(원)장 자격, 교(원)장 승진)		학교→지원청(기관)→도	○	○	엑셀	p.104
초등 교(원)감 자격연수대상 점수 분포표	<서식22>	2021. 교(원)감 자격연수대상 후보자 예상점수 분포표		학교→지원청(기관)→도 (업무메일 제출)	○		엑셀	p.105
가산점 평정자료	<서식24>	2020. 가산점평정자료(인정자명부)		학교→지원청→도	○		엑셀	p.107



가. 파일저장 및 폴더생성 방법

1) 파일저장 방법

- 가) 학교→교육지원청: 학교고유번호-학교명-서식번호-약칭
- 나) 교육지원청→도: 교육지원청고유번호-시·군명-서식번호-약칭
- 다) 직속기관→도: 직속기관명(경남생략)-서식번호-약칭

[예시]

- ▶ 학교→교육지원청: 1-창원초-7-2020.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일람표
- ▶ 교육지원청→도: 18-합천-16-2021.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 ▶ 직속기관→도: 교육연수원-10-2020.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 일람표

2) 파일 저장할 폴더 생성 방법

상위 폴더명	하위 폴더명	저장해야 할 서식	비고
2021. 교원인사	1. 교사급근평	〈서식 7〉	
	2. 교(원)감근평	〈서식 10〉	직급별 구분 작성
	3. 장학(교육연구)사급근평	〈서식 10〉	"
	4. 교(원)감자격	〈서식 16, 20〉	"
	5. 교(원)감승진	〈서식 18, 20〉	"
	6. 교(원)장자격	〈서식 17, 21〉	"
	7. 교(원)장승진	〈서식 19, 21〉	"
	8. 장학(교육연구)관급승진	〈서식 19, 21〉	"
	9. 장학(교육연구)사교장전직	〈서식 19〉	"

나. 제출 방법

1) 시행문: 업무관리시스템(총 1건)으로 제출, 본문에 통계 현황이 나타나게 작성

[예시]

- ▶ 2020.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일람표 제출
- ▶ 2020. 교(원)감, 장학(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일람표 제출
- ▶ 2021. 교육공무원 승진(전직), 자격 서류 제출

2) 파일: 업무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3) 출력물: 날인, 직인, 확인하여 우편(인편) 제출

다. 유의사항

- 1) 파일의 양식과 시트명 변경 불가→에러 발생(모든 파일은 프로그램으로 취합)
- 2) 제출내용이 파일, 출력물 어떤 것인지 확인
- 3) 모든 서식파일은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파일을 사용



3. 대상별 제출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점

1. 모든 명부는 고점자 순으로 작성
2. 해당되는 곳에 직인 반드시 날인
3. 일람표, 명부 등은 매 장마다 간인(間印: 결침도장) 날인
4. 직급별, 직렬별로 별지 작성
5. 상동 또는 (〃)기호 사용 금지
6. 나이스 인사기록 출력물 제출시
 - 임의로 수정 불가(간인 생략)
7. 제출서류를 파일과 출력물 중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
 - 파일: 업무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8. 출력물은 반드시 클립 사용
 - 스태이플러 사용 금지
9. 서식 파일 탑재한 곳
 -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자료실

가.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1) 제출서류 및 제출경로

서식 번호	서식명	제출시 순서	제출경로	파일 형식	제출물		비고
					파일	출력물	
<서식1>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자체 보관	한글		○	p.82
<서식2>	교사근무성적평정표		학교→교육지원청	엑셀		○	p.83
<서식3>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자체보관	엑셀		○	p.85
<서식4>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자체보관	엑셀		○	p.87
<서식5>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학교→교육지원청	엑셀		○	p.89
<서식6>	교사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학교→교육지원청	엑셀		○	p.90
<서식7>	2020.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일람표	2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p.91
<서식23>	2020. 근무평정 총괄표	1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p.106

2) 교사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프로그램 활용

가) 홈페이지 탑재: 각종 서식 중 근평 및 다면평가 폴더



나.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

1) 제출서류 및 제출경로

서식 번호	서식명	제출시 순서	제출경로	파일 형식	제출내용		유의사항
					파일	출력물	
〈서식8〉	교(원)감 자기실적평가서		학교→교육지원청	한글		○	교육지원청 보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자기실적평가서		소속기관 보관	한글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보관
〈서식9〉	교(원)감 근무성적평정표	3	학교→교육지원청→도	엑셀		○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표	5	교육지원청, 기관→도	엑셀		○	
〈서식10〉	2020. 교(원)감, 근무성적평정일람표	2	학교→교육지원청→도	엑셀	○	○	
	2020.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4	교육지원청, 기관→도	엑셀	○	○	
〈서식23〉	2020. 근무평정 총괄표	1	학교→교육지원청→도	엑셀		○	

2)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고점자 순으로 작성

(초·중등 남·여 전원 1부, 초등 남·여 전원 1부 제출)

다.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평정

1) 제출서류 및 제출경로

서식 번호	서식명	제출시 순서	제출경로	파일 형식	제출내용		유의사항
					파일	출력물	
〈서식11〉	교(원)감 자격후보자 평정표	3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프로그램파일 * 파일명 서식11~15 자격(승진)평정표 (프로그램)
〈서식12〉	경력평정표	4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3〉	연수성적평정표	5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4〉	가산점평정표	6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5〉	직무연수 실적표	7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6〉	2021.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1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서식20〉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 (교(원)감 자격, 교(원)감 승진)	2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출력물	나이스 출력물: 인사카드(전체)	8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	

2) 대상 후보자 자격기준: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3) 도교육청에서 예상점수 분포표를 취합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의 최저점수 제시

**라.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평정**

1) 제출서류 및 제출경로

서식 번호	서식명	제출시 순서	제출경로	파일 형식	제출내용		유의사항
					파일	출력물	
<서식11>	교(원)장 자격후보자 평정표	3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프로그램파일 * 파일명 서식11~15 자격(승진)평정표 (프로그램)
<서식12>	경력평정표	4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3>	연수성적평정표	5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4>	가산점평정표	6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5>	직무연수 실적표	7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7>	2021.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1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서식21>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 (교(원)장 자격)	2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출력물	나이스 출력물: 인사카드(전체)	8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	

2) 대상 후보자 자격기준: 교(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마. 교(원)감 승진후보자 평정

1) 제출서류 및 제출경로

서식 번호	서식명	제출시 순서	제출경로	파일 형식	제출내용		유의사항
					파일	출력물	
<서식11>	교(원)감 승진후보자 평정표	3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프로그램파일 * 파일명 서식11~15 자격(승진)평정표 (프로그램)
<서식12>	경력평정표	4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3>	연수성적평정표	5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4>	가산점평정표	6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5>	직무연수 실적표	7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8>	교(원)감 승진후보자 명부	1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서식20>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 (교(원)감 승진)	2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출력물	나이스 출력물: 인사카드(전체)	8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	

2) 대상후보자 자격기준: 해당 자격 소지자 전원



바.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평정

1) 제출서류 및 제출경로

서식 번호	서식명	제출시 순서	제출경로	파일 형식	제출내용		유의사항
					파일	출력물	
<서식11>	교(원)장 승진후보자 평정표	3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프로그램파일 * 파일명 서식11~15 자격(승진)평정표 (프로그램)
<서식12>	경력평정표	4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3>	연수성적평정표	5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4>	가산점평정표	6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5>	직무연수 실적표	7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서식19>	2021.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1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서식21>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 (교장 승진, 장학(교육연구)관 승진)	2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	
출력물	나이스 출력물: 인사카드(전체)	8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	

2) 대상 후보자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제출

사. 장학(교육연구)사의 교장 전직 평정

1) 제출서류 및 제출경로

서식 번호	서식명	제출시 순서	제출경로	파일 형식	제출내용		유의사항
					파일	출력물	
<서식11>	교(원)장 승진후보자 평정표 (근평기재 금지-근평은 도에서 입력함)	3	교육지원청(직무)관 및 도 부서 →초등교육과	엑셀		○	* 프로그램파일 * 파일명 서식11~15 자격(승진)평정표 (프로그램)
<서식12>	경력평정표	4	교육지원청(직무)관 및 도 부서 →초등교육과	엑셀		○	
<서식13>	연수성적평정표	5	교육지원청(직무)관 및 도 부서 →초등교육과	엑셀		○	
<서식14>	가산점평정표	6	교육지원청(직무)관 및 도 부서 →초등교육과	엑셀		○	
<서식15>	직무연수 실적표	7	교육지원청(직무)관 및 도 부서 →초등교육과	엑셀		○	
<서식19>	2021. 교(원)장 승진후보자 명부 (근평과 함께 기재금지-근평과 합계는 도에서 입력함)	1	교육지원청(직무)관 및 도 부서 →초등교육과	엑셀	○	○	
출력물	나이스 출력물: 인사카드(전체)	8	교육지원청(직무)관 및 도 부서 →초등교육과			○	

2) 대상후보자 자격기준: 『교장자격소지 장학(교육연구)사』



아. 초등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 예상 점수 분포표

1) 제출서류 및 제출경로

서식 번호	서식명	제출경로	파일 형식	제출내용		유의사항
				파일	출력물	
<서식22>	2021. 교(원)감 자격연수대상후보자 예상점수 분포표(유치원, 초등특수 포함)	학교→교육지원청(기관)→도	엑셀	○		추진일정표의 제출일자 준수

2) 제출기한 및 방법

가) 학교→교육지원청: 2021.2.9.(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업무메일

나) 특수학교, 교육지원청→도교육청: 2021.2.16.(화)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업무메일

3) 유의사항: 정확하게 작성할 것, 교육전문직원은 제외

4. 인사카드(전체) 출력 및 제출방법

가. 나이스/인사기록/기본사항/개인번호[(대문자S+숫자9), (예:S101010111)]

나. 나이스/인사기록/기본사항/근무사항/인사카드구분/인사카드(전체)

*나이스 ‘인사카드(전체)’ 출력(A4 단면 인쇄)



다. 출력물 제출

1) 교(원)감이 인사기록카드 “2부” 출력

○ 학교에서는 날인 및 간인하지 말 것

※ 경력사항, 연수사항, 가산점 및 직무연수 이수실적 현황판 표시

2) 교육지원청(인사기록카드 출력하지 않음)

○ 학교에서 제출한 인사기록카드 첫 페이지 하단에 원본대조필만 날인 후 1부 제출(1부 지원청 보관)

라. 나이스 인사기록 및 출력물 임의로 수정 절대 불가

1)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偽造變造罪)형법 제235조

2) 변조한 내용 발견 시 대상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것

※ 교감,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장학사는 서류제출자의 인사기록 내용이 정확한지 철저히 확인할 것

※ 서류제출일자를 기준으로 각종 이수증, 상장 등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교감은 나이스 출력물에 파랑색으로 내용을 수기 추가(추가한 부분에 직인 날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등)를 첨부하되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학교→교육지원청→도)



5. 인사서류 제출일자

순	업무내용	경로 및 처리기관	제출(완료) 일자
1	작성방법 연수회 개최(학교)	학교 자체	2021.1.29.(금)이전
2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예상 점수 분포표 제출 <서식22> ※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학교→교육지원청	2021.2.9.(화)
		특수학교, 교육지원청→도교육청	2021.2.16.(화)
3	교사, 교(원)감 근무성적평정 자료	학교→교육지원청	2021.2.9.(화)
4	교사, 교(원)감, 장학(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 자료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도교육청	2021.2.18.(목)
5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000.00점 이상 서류제출 안내	홈페이지 탑재	2021.2.19.(금)
6	가산점평정자료(파일)	학교→교육지원청 특수학교→도교육청	2021.2.9.(화)
7	가산점평정자료(취합파일)	교육지원청→도교육청	2021.2.16.(화)
8	가산점평정자료 NEIS 등재	교육지원청	2021.2.19.(금)
9	가산점 인정자 명부 배부	도교육청→교육지원청	2021.3월초
10	교(원)장 승진, 교(원)장 자격 교(원)감 승진, 교(원)감 자격 서류 제출	학교→교육지원청	2021.3.2.(화)
		특수학교,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도교육청	2021.3.5.(금)
11	본청·직속기관 장학관 승진·교장자격 서류 제출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2021.3.5.(금)

※ 도교육청 제출 일자는 엄수(교육지원청 제출일자는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서식2〉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앞쪽)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① 평정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 대상자 성명		평정사항 평정요소	근무수행 태도 ④ 교육 공무원으로 서의 태도 (10점)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 정 점	⑩ 환 산 점	⑪ 총 점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비 고

1.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 × 2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 × 40/100
2.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 목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해야 하며,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라목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목에 가산할 수 있다.
 - 가. 수(95점 이상) 30퍼센트
 - 나.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 다.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 라. 양(85점 미만) 10퍼센트



※ 평정사항(예시)

(뒤쪽)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교사	1.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시키는가?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는가?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가?
		나. 생활지도(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도록 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가?
		다. 전문성 개발(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서식3〉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6.12.30.〉

(제1쪽)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가대상자 소속		평가대상자 성명	평가사항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가점	⑩ 환산점
			태도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점)		
		평가요소	④ 교육 공무원 으로서의 태도 (10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비고

1. 환산점 = 평가점 × 32/100
2. 다면평가자는 다음 각 목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해야 하며, 평가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라목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목에 가산할 수 있다.
 - 가. 수(95점 이상) 30퍼센트
 - 나.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 다.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 라. 양(85점 미만) 10퍼센트
3.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 평가사항(예시)

(제2쪽)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사	1.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시키는가?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는가?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가?
		나. 생활지도(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 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도록 지도 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 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지도 하는가?		
	다. 전문성개발(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비고			

※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영양·보건·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제2호 가목에 따른 학습지도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서식4〉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6.12.30.〉

(제1쪽)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가사항 평가요소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⑧ 평가점	⑨ 환산점
			④ 학습 지도 (30점)	⑤ 생활 지도 (30점)	⑥ 전문성 개발 (10점)	⑦ 담당 업무 (30점)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비고

1. 환산점 = 평가점 × 8/100
2.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 한다.



※ 평가사항(예시)

(제2쪽)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 (30점)	1) 주당 수업시간		
			2) 수업공개(연구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등) 횟수		
			3) 교내외 수업컨설팅 횟수		
			4) 학습지도 곤란도(통합수업 지도/복식학급 지도/학습부진아 지도/다학년 지도/다교과 지도/보강수업)		
		나. 생활지도 (30점)	1) 학생 또는 학부모 상담실적		
			2) 생활지도 곤란도(담임/비담임)		
			3) 학년 곤란도		
		다. 전문성개발 (10점)	1) 연수이수 실적		
			2) 수업동아리 및 교과연구회 활동 실적		
			3) 연구대회 및 연구개발 실적		
		라. 담당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다문화·탈북학생 지원/방과후학교 운영/자유학기제 운영)		
			2) 업무 추진 실적(보직/학년대표/교과대표/일반교사)		
		비고			

※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서식6〉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2.11.6.〉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① 평정기간	② 평정 분포비율	③ 조정자	④ 확인자	⑤ 평정자	
. . .부터 . . .까지	◦ 수(95점 이상) 30% ◦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 양(85점 미만) 10%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점수 및 순위		⑥ 환산점	⑦ 총점	⑧ 조정점	⑨ 순위
평정 종류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 대상자 성명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7>

2020.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일람표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일련 번호	지역	소속	성명	생년 월일	나이스번호	평정자		확인자		다면 평가점	총점	조정점	순위
						평정점	한산점	평정점	한산점				

<작성요령>

- 남·여 혼합 작성
- 교육장 직인 날인 누락 유의(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 일련번호는 지역의 전체교사 수에 따라 연번 기재
- 지역은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통영, 사천”과 같이 지역명으로 기재
- 소속은 “삼정자, 창원, 한별, 김해봉황”과 같이 교명만 기재하고 “상동”, “/” 표시 불가
- 학교는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할 것
- 성명은 한글로 기재(띄어쓰기 불가)
- 생년월일은 “000000”, 나이스개인번호는 “S101010111” 기재
- 순위는 학교의 근무성적 순위로 기재
- 일람표의 여백은 이하 빈칸 기재



〈서식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제1쪽)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표										
① 평정기간		② 조정자			③ 확인자		④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 대상 자 소 속	평정 대상자 성명	평정사항	근무수 행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 정 점	⑩ 환 산 점	⑪ 총 점	⑫ 조 정 점	⑬ 순 위
		평정요소	⑤ 교육 공무원 으로 서의 태도 (20점)	⑥ 교육 활동 및 교육 연구 지원 (40점)	⑦ 교원 지원 (20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작성요령〉

○ 교(원)감

- 평정자: 교(원)장, 확인자: 교육장, 조정자: 과장(창원, 김해 국장)

○ 장학(교육연구)사

- 평정자: 인사담당 과장(국장), 확인자: 교육장, 조정자: 부교육감 단, 장학(교육연구)사의 경우, 창원과 김해의 평정자는 소속 국장

• 초·중등 남·여(혼합 전원) 1부

• 초등 남·여(혼합) 1부

※ 평정자의 환산점=평정점×50/100, 확인자의 환산점=평정점×50/100

※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 (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 (85점 미만) 10퍼센트



<서식10>

2020.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근무성적평정 일람표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일련 번호	지역	소속	성명	생년 월일	나이스 개인번호	평 정 자		확 인 자		총 점	조정점	순위
						평정점	환산점	평정점	환산점			

<작성요령>

- 남·여 혼합 작성
- 교육장 직인 날인 누락 유의(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 일련번호는 지역의 전체 교(원)감 수에 따라 연번 기재
- 지역은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통영, 사천”과 같이 인사구역명으로 기재
- 소속은 “삼정자, 창원, 한별, 김해봉황”과 같이 교명만 기재하고 “상동”, “ ” 표시 불가
- 성명은 한글로 기재(띄어쓰기 불가)
- 생년월일은 “000000”, 나이스개인번호는 “S123456789” 기재
- 성별은 “남·여”로 기재
- 정렬순서는 학교의 근무성적 순위대로 정리
- 일람표 아래의 빈칸은 ‘이하 빈칸’ 으로 기재



〈서식11〉 () 승진(자격)후보자 평정표

학교번호	1		지역	창원				
소속	창원 창원초등학교		직위	교사	성명	한글 오승진	성별	남
나이(번호생일)	S123456789	721024	자격증취득일	2002-01-29	소지자격증	초1정 아 제4666호		
최종학력	진주교육대학교		전공과목	초등	상응직경력			
한국사관련	자격증유무		유	연수이수여부			이수	
전화번호	학교	055-123-4567		총경력	21.06			
	휴대폰	010-1234-5678		생활근거지	창원시 대방동			
근무성적	구분 연도	소속 (평정년도 소속)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합산점	환산점비율	환산점	비고	
	2016년	마산 무학초		100.00	33%	33		
	2017년	진해 제황초		90.00				
	2018년	창원 소담초		100.00	33%	33		
	2019년	김해 김해봉황초		96.00				
	2020년	창원 창원초		100.00	34%	34		
	계			100.00			점	
경력평정	기본경력	64.000		초과경력	6.000	계	70.000	
연수성적 평정 점	교육성적	자격연수	직무연수	계	연구실적	3.000	계	29.975
		8.975	18.000	26.975				
가산점평정점	계			(6.404)점				
				평정점 합계		206,379점		
작성자인	1차 확인	2차 확인		유의사항				
오승진 (인)	창원초등학교장 이교장 (인)	초등교육과장 박과장 (인)		1. 작성자인: 본인 성명(인) 2. 1차 확인: 학교-교장, 전문직-업무담당(장학사) 3. 2차 확인: 창원, 김해-초등교육과장 창원, 김해 제외-교육지원과장, 직속기관-부(과)장				

〈작성요령〉

- 학교번호 입력
- 지역은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통영”과 같이 인사구역으로 입력
- 소속은 지역과 정식학교명을 입력 예) 창원 창원초등학교, 거제 동부초울포분교장
- 직위를 입력 예) 교사,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 생년월일 “000000” 나이스개인번호는 “S123456789”
- 소지자격은
 - 가) 자격증 취득일은 소지자격에 대한 취득일 입력 예) 2015-07-03
 - 나) 소지자격은 초1정, 유1정, 초등교감, 초등교장, 유원감, 유원장, 특수교감, 특수교장과 같이 띄어쓰기 없이 입력
 - 다) 자격증번호는 제1234호의 형식으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 예)제1234호
- 최종학력은 최종졸업대학의 정식명칭을 입력 예) 진주교육대학교
- 전공과목은 초등, 유치원, 특수와 같이 입력
- 상응직 경력은 교감 및 전문직만 입력, 교사는 기재하지 않음
- 총경력은 매년 2월말 기준으로 ‘년, 월’로 입력[승진규정 제9조의 경력]
 - 예) 20년 6개월일 경우 → 20.06, 23년 10개월일 경우 → 23.10
- 근무성적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의 합산점을 반드시 모두 입력, 유리한 3년 자동 으로 계산함. 소속 학교명은 시군명 ○○초와 같이 입력 (예) 마산 무학초
 - 장학(교육연구사)은 근무성적 입력 금지: 본청에서 입력함
- 한국사 능력 검증은 자격증 혹은 직무연수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란에 입력
 - 반드시 인정범위(pp.69~70) 확인. 나이스 등재내용을 증빙자료로 함(미등재시 관련자료 별첨)



〈서식1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6.〉

경력평정표						
1. 평정대상자						
○ 소속: 창원 창원초등학교 ○ 직위: 교사 ○ 성명: 오승진(인)						
2. 경력평정						
경력별	근무처 직명	재직기간	재직 월/일수	월/일 평정점	평정점 합 계	
기본 경력	'가'경력	창원창원 명서 사회 소담, 창녕영산, 부곡초 교사	2006.3.1.~2021.2.28.	월: 180 일:	월: 0.3555 일:	640.000
	'나'경력			월: 일:	월: 일:	
	'다'경력			월: 일:	월: 일:	
	소계			월: 일:		
초 과 경 력	'가'경력	고성고성 동해초 교사	2001.3.1.~2006.2.28.	월: 60 일:	월: 0.1000 일:	60.000
	'나'경력			월: 일:	월: 일:	
	'다'경력			월: 일:	월: 일:	
	소계			월: 일:		
합계			월: 일:		70.000	
3. 평정자·확인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정자	창원 창원초등학교		교(원)감	김교감	(인)	
확인자	창원 창원초등학교		교(원)장	이교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요령〉

- 경력: [승진규정 제9조의 경력] P.10
 - 가, 나, 다 경력 확인 철저
- 근무처는 최근 학교명부터 기록
- 기본경력은 2021.2.28.을 기준으로 최근경력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의 경력
- 재직 월/일수는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에 따라 계산
- 월, 일평정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관련 [별표1, 2]의 조건표대로 기재(pp.10~12)
- 평정점의 기록
 - 기본, 초과경력 소수 넷째자리까지 표기
 - 합산점은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정자와 확인자의 날인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



〈서식13〉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1.6.〉

연수 성적 평정표									
1. 평정대상자									
○ 소속: 창원 창원초등학교			○ 직위: 교사			○ 성명: 오승진 (인)			
2. 교육성적평정									
교육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성적 또는 환산성적		평정점			
자격연수	초1정	1994.07.01 1994.09.09	180시간	99		8.975			
직무연수	과학실험	2014.07.30 2014.08.10	60시간	98		6.000			
직무연수	교육과정	2013.07.28 2013.08.10	60시간			6.000			
직무연수	창의성교육	2012.01.10 2012.01.20	60시간			6.000			
계						26.975			
3.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									
대회주관기관	대회명	입상일자	전국 규모			시·도 규모			평정점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남교총	연구논문	1997.12.05					0.75		0.750
경남교육청	평가문항	1985.12.09				1.00			1.000
계						1.00	0.75		1.750
4. 학위취득 실적평정									
석·박사구분	직무관련구분	학위명	학위수여기관	학위취득일자		평정점			
석사	직무관련	교육학	경상대학교	1992.02.20		1.500			
	기타								
박사	직무관련								
	기타								
5. 연수성적평정점		29.975							
6. 평정자·확인자 성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정자	창원 창원초등학교		교(원)감	김교감		(인)			
확인자	창원 창원초등학교		교(원)장	이교장		(인)			

〈작성요령〉

- 교육성적 및 연수대회 입상실적, 학위취득 평정점 기재 유의(소수 3위까지)
- 자격연수와 직무연수(2011.1.1. 이후)의 명칭을 간략하게 기록
 - 자격연수: 초교장, 유원장, 초교감, 유원감, 초1정, 유1정
 - 직무연수: 교육기자재, 전임지도자, 교육평가, 지도자전문, 유년대상급, 과학, 새마을
 - ※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 실적과 교육성적평정 직무연수 실적은 중복 사용할 수 없음
- 평정점 소수 3위까지
-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최근실적 부터 기록
 - 대회명: 전국연구논문, 전국자료전, 도연구논문, 예능경진, 형성평가, 학습지도 등
- 나이스 인사기록과 일치 확인



〈서식1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6.〉

가산점 평정표						
1. 평정대상자 ○ 소속: 창원 창원초등학교 ○ 직위: 교사 ○ 성명: 오승진						
2. 공통가산점 평정						
가산점 종류	근무기관 (연수기관 등)	근무기간 (연수기간 등)	평정대상 기 간	평정기준	평정점	평정점 합 계
직무연수실적						1,000
연구학교(교육부)	창원양곡		1991.03.01 1993.02.28	월: 24 일:	월: 0,021 일:	0,504
학교폭력예방	창원창원		2013.01.01 2016.02.29	월: 일:	월: 일:	0,400
소계						1,904
3. 선택가산점 평정						
가산점 종류	근무기관 (연수기관 등)	근무기간 (연수기간 등)	평정대상 기 간	평정기준	평정점	평정점 합 계
도서(가)	통영원량 (갈도)		1985.03.01 1988.02.28	월: 36 일:	월: 0,125 일:	2,000
농어촌(나)	마산호계		1995.03.01 1999.12.31	월: 58 일:	월: 0,012 일:	0,696
농어촌(다)	마산호계		2014.01.01 2014.02.28	월: 2 일:	월: 0,012 일:	0,024
농어촌(다)	마산중리 마산상일		2014.03.01 2017.11.30	월: 45 일:	월: 0,012 일:	0,530
보직교사	창원양곡		1990.03.01 1995.02.28	월: 60 일:	월: 0,021 일:	1,250
소계						4,500
4. 가산점 평정 합계(2+3)						6,404
5. 평정자확인자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평 정 자	창원 창원초등학교	교(원)감	김교감	(인)		
확 인 자	창원 창원초등학교	교(원)장	이교장	(인)		

〈작성요령〉

-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해서 기록
-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될 경우 공통가산점이 우선
- 공통가산점 기재순서: 직무연수실적, 연구시범학교(교육부),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실적
- 선택가산점 기재순서: 도서벽지, 농어촌학교, 보직교사, 장학사, 한센병자녀학교, 특수학교, 연구시범(도), 국가기술자격증, 교육기관파견, 전국소체, 영재, 발명, 청소년단체, 경로효행, 학력향상, 준벽지 순으로 입력 ⇒ 프로그램에서 점검하기(상한점 조정하여 평정점 합계 기록)
- 도서·벽지 및 농어촌은 급지(급지가 다를 경우 칸 구분), 연구시범은 지정구분(교육부, 도) 명기
- 가산점 마다 상한점이 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은 정확하게 기록, 평정점은 조정하여 기록
- 나이스 인사기록과 일치 확인



<서식15>

직무연수 실적표

소속: 창원 창원초등학교

직위: 교사

성명: 오승진 (인)

순	연 수 명	연수기간	연도	이수시간	학 점	평정점
1	알기 쉬운 교직실무	2013.05.02~ 2013.05.15	2013	60	4	0.08
2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2012.10.05~ 2012.10.18	2012	60	4	0.08
3	영상자료제작 및 교육방송활용	2011.08.02~ 2011.08.12	2011	60	4	0.08
4	발명교육담당자직무연수	2010.07.20~ 2010.07.30	2010	60	4	0.08
5						
6						
7						
8						
9						
10						
11						
12						
13						
14						
계						0.32

<작성요령>

-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 이수 실적을 기록(상한점 1.0-학점당 0.02점, 연 0.08점)
- 계는 1.00에 맞도록 작성
- <서식13>연수성적평정표에서 직무연수성적으로 평정한 직무연수(3개)는 중복 사용 불가
- 직무연수실적의 연수과정은 최근 실적부터 기록
- 연수기간, 연도, 이수시간, 학점, 평정점을 정확하게 기재
 - 연수 시작 연도와 연수 이수 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료일 기준
- 나이스 인사기록 원본과 일치 확인



<서식16>

2021.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나이 스번호	소지 자격증	자격 취득 년월일	상용직 경력	평정요소별성적					합 계	한국사 관련		
									경력	근무 성적	연 수				가산점	자 격 증	연 수
											자 격	직 무	연 구				
1													0.000				
2													0.000				
3													0.000				
4													0.000				
5													0.000				
6													0.000				
7													0.000				
8													0.000				
9													0.000				
10													0.000				

<작성요령>

- 소속은 (인사구역명+학교명) 예) 창원 창원상남, 마산 상일, 진주 봉원, 김해 진영금병, 거제 장승포 등
- 직위, 성명, 생년월일(나이스개인번호), 소지자격증, 자격취득년월일, 상용직 교육경력은 <서식11>작성요령과 동일
- 상용직 교육경력
 - 교(원)감 연수대상: 상용직 교육경력 2021.2.28.까지(전문직만)/교사는 기재하지 않음
- * 경력이 19년 9개월: 19.09로 기록
- 명부 작성 후 공란은 「이하 빈칸」
- 매 장마다 간인 날인
- 고점자 순으로 작성



〈서식17〉

2021.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나이 스번호	소지 자격증	자격 취득 년월일	상용직 경력	평정요소별성적					합 계	
									경력	근무 성적	연 수				가 산 점
											자 격	직 무	연 구		
1														0.000	
2														0.000	
3														0.000	
4														0.000	
5														0.000	
6														0.000	
7														0.000	
8														0.000	
9														0.000	
10														0.000	

〈작성요령〉

- 소속은 (인사구역명+학교명) 예) 창원 창원상남, 마산 상일, 진주 봉원, 김해 진영금병, 거제 장승포 등
- 직위, 성명, 생년월일(나이스개인번호), 소지자격증, 자격취득년월일, 상용직교육경력
은〈서식11〉작성요령과 동일
- 상용직 교육경력
 - 교(원)장 연수대상: 상용직 교육경력 2021.2.28.까지
 - * 경력이 19년 9개월: 19.09로 기록
- 명부 작성 후 공란은 「이하 빈칸」
- 매 장마다 간인 날인
- 고점자 순으로 작성



〈서식20〉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

(교(원)감자격연수대상자, 교(원)감승진후보자)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순번	소속	직명	성명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합계	비고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환산점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환산점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환산점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환산점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환산점		
1															
2															

〈작성요령〉

- 교감승진후보자, 원감승진후보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원감자격연수대상자: 직위별 작성
-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직인 누락 없도록 유의, 해당연도는 모두 학년도로 명기함
- 소속은 (인사구역명+학교명) 예) 창원 창원상남, 마산 상일, 진주 봉원, 김해 진영금병, 거제 장승포 등
- 전 기간 근무성적은 모두 기입하고, 유리한 3년에만 환산점을 기록(지원청 반드시 대조)

〈예시〉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근무성적	환산점	근무성적	환산점	근무성적	환산점	근무성적	환산점	근무성적	환산점
98		100	33.000	99		100	33.000	100	34.000

〈서식21〉

2018, 2019, 2020.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일람표

(교(원)장자격연수대상자, 교(원)장승진후보자, 장학(연구)관 승진후보자)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순번	소속	직명	성명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합계	비고
				근무성적 평정	환산점	근무성적 평정	환산점	근무성적 평정	환산점		
1											
2											



〈서식22〉

2021. 초등교감 자격연수 대상후보자 예상 점수 분포표

소속기관 ()

자연수 \ 소수점	0~	1~	2~	3~	4~	5~	6~	7~	8~	9~	계
205											
206											
207											

※ 해당 점수란에 2021.3.31.기준 예상 점수 대상자의 인원수 정확하게 기재

2021. 유치원원감 자격연수 대상후보자 예상 점수 분포표

소속기관 ()

자연수 \ 소수점	0~	1~	2~	3~	4~	5~	6~	7~	8~	9~	계
204											
205											
206											
207											

2021. 특수(초등)교감 자격연수 대상후보자 예상 점수 분포표

소속기관 ()

자연수 \ 소수점	0~	1~	2~	3~	4~	5~	6~	7~	8~	9~	계
205											
206											
207											



<서식23>

2020. (초등교사, 교(원)감) 근무평정 총괄표

○○초등학교장(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1. 평정 대상 수

직 위 별	교 감			교 사		
	남	여	계	남	여	계
평정대상자 (2021.2.28.현재)						
평 정 제 외 자 수						
평정제외자 성명 및 사유					

2. 교사 근무성적 분포 상황

근 무 성 적	단 계	수	우	미	양	비 고
	조 정 점					

* 각 란에는 인원 수 기입

작성자 직 교감(장학사) 성명 인



<서식24>

2020학년도

가 산 점 평 정 자 료

(기간: 2020.3.1.~2021.2.28.)

입력 순서	가산점평정 자료명	입력 순서	가산점평정 자료명
1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공통)	8	교육기관파견
2	학교폭력예방및해결(공통)	9	농어촌지역학교
3	도서벽지학교	10	전국소체금메달획득
4	준벽지학교	11	영재교육원담임
5	특수학교(급) 담임	12	발명영재교육지도
6	연구시범학교	13	특수교육센터
7	보직교사		



가산점 평정자료 작성요령

1. 기 간: '20.3.1.~'21.2.28.

※ 제외되는 기간: 휴직, 직위해제, 정직

2. 가산점 영역별 코드번호 및 비교란 입력 방법

가산점 영역별 코드번호 및 비교란 입력 방법			
입력순서	가산점영역	코드번호	비교란 입력방법
1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공통)	112	천진학교파견/소담초등학교
2	학교폭력예방및해결(공통)	114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소담초등학교
3	도서벽지학교	213	도서다급지/한산초등학교/12개월
4	준벽지학교	223	준벽지학교/안명초등학교/12개월
5	특수학교(급) 담임	216	특수학급담임/소담초등학교/6개월
6	연구시범학교	220	도지정/진로영역/소담초등학교/12개월
7	보직교사	211	연구부장/소담초등학교/12개월
8	교육기관파견	223	산촌유학교육원파견/소담초등학교/12개월
9	농어촌지역학교	215	농어촌가급지/화양초등학교/12개월
10	전국소체금메달획득	301	전국소체금메달/육상/소담초등학교/2018.5.9.
11	영재교육원담임	305	창원영재교육원담임/소담초등학교/12개월
12	발명영재교육지도	301	진주발명영재교육지도/진주초등학교/12개월
13	특수교육센터	223	특수교육센터/창원교육지원청/12개월

3. 제출 완료일

가. 학교 → 교육지원청: 2021.2.9.(화) “파일만 제출”

나.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2021.2.16.(화) “파일만 제출”

4. 참고사항

가. 해당되는 인정 대상자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교육지원청 확인 철저)

나. 모든 용지는 A4 복사용지 규격

다. 임의서식 사용 불가

라. 원본은 반드시 1부 이어야 함

마. 특수학교 및 진주교대부설초도 작성하여 도교육청으로 제출



【가산점 평정 자료 양식】

2020학년도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자료(초등학교)										
경상남도○○교육지원청(직인)										
연번	지역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나이스 개인번호	코드 번호	시작일	종료일	비고
1	창원	소담초등학교	기간제교사	봉선화	680225	S123456789	220	20200301	20210228	도지정/교육과정영역/소담초등학교/12개월
2	창원	소담초등학교	초등교사	진달래	680000	S123456789	211	20200301	20210228	연구부장/소담초등학교/12개월
3	창원	소담초등학교	초등교사	연산홍	680000	S123456789	301	20200301	20210228	전국소체금메달/육상/소담초등학교/2018.5.9.
4	창원	소담초등학교	초등교사	동백꽃	680000	S123456789	305	20200301	20210228	창원영재교육원담임/소담초등학교/12개월
5	창원	소담초등학교	초등교사	모란	680000	S123456789	301	20200301	20210228	창원발명영재교육지도/소담초등학교/12개월
6	마산	가고파초등학교	초등교사	개나리	680000	S123456789	114	20200301	20210228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가고파초등학교
7	마산	가고파초등학교	초등교사	산수유	680000	S123456789	223	20200301	20210228	산촌유학교육원파견/가고파초등학교/12개월
8	진해	덕산초등학교	영양교사	해바라기	680000	S123456789	220	20200301	20210228	도지정/교육과정영역/덕산초등학교/12개월
9	진주	진주초등학교	교감	해당화	680000	S123456789	220	20200301	20210228	도지정/교육과정영역/진주초등학교/12개월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1. 지역은 인사구역명을 입력(진주, 사천, 창원, 마산, 진해로 구분해서 입력)
2. 소속은 학교정식명칭으로 입력하고 학교명의 가나다 순(順)으로 입력(유치원 · 초등 · 특수학교 별도 작성)
3. 직위는 교감, 원감, 유치원, 초등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기간제교사로 입력
4. 생년월일 정확하게 입력(확인철저)
5. 나이스개인번호 "S101010111" (대문자S+숫자 9자리) 정확하게 입력(확인철저)
6. 코드번호는 "가산점 영역별 코드번호 및 비고란 입력 방법"에 맞게 정확하게 입력
7. 시작일(20200301)과 종료일은(20210228) 숫자로 입력
8.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뺀 기간을 입력
(휴직 등으로 경력이 나누어진 경우는 나누어서 입력)
9. 양식변경은 불가함. 단, 행 추가만 가능
10. 누락된 경우 추가 등재가 불가하니 해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기간제교사 포함)
11. 위 가산점 평정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 입력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한 후 2021.2.19.(금)까지 탑재 바람

Ⅲ

근무성적평정

1. 교사 다면평가
2. 교사 근무성적평정



1. 교사 다면평가

가. 다면평가 개요

1) 의의

교사에 대하여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합산하여 승진에 반영함으로써 교사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2) 실시 근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2 ~ 제28조의9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함

3) 평가 기준

다면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식1>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함

4) 적용 대상: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 각급 학교: 유치원, 초·중·고 및 이와 동등급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5) 평가 기관

○ 단설유치원 교사, 초등교사(특수포함),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원로교사

: 각급 학교(유치원)

※ 초등, 초등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단위학교 내 통합근무성적 평정(초등교육과-9901(2018.7.13.))

○ 병설유치원 교사: 교육지원청

※ 성과급은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 지침에 따라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및 전문상담 등)는 단위학교 내 일반교사와 함께 평가하되, 일반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2개월 이상 근무 기간 제교사는 다면평가 실시



나. 추진 절차

1) 기관별 추진 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 순회교사, 기관배정교사 다면평가 계획 수립
- 각급 학교: 소속 근무교사 다면평가 계획 수립

2) 사전연수

-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및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 ◇ 교원평가제도 개선 주요내용
- ◇ 다면평가 의의 및 내용, 일정, 방법, 결과처리 등
 - 평가요소 및 기준(정성평가와 정량평가)
 - 다면평가 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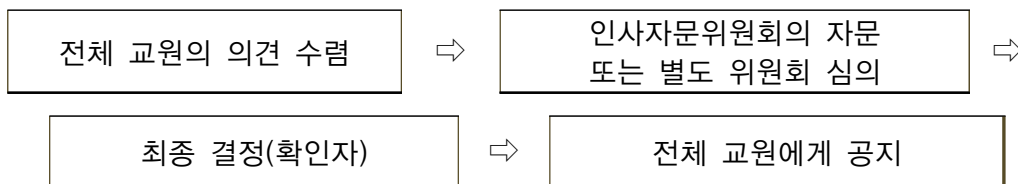
활용 구분	반영 비율		비 고
	정성평가	정량평가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평정	32%	8%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및 전문상담 등)는 단위학교 내 일반교사와 함께 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20%	80%	

- ◇ 강조할 사항
 -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장치를 사전에 공지
 - 다면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대외 보안(다면평가 결과 비공개)

3) 정량(定量)평가 세부 기준 마련

- 정량평가의 평가내용은 기관(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해당 기관(학교)에서 정함
- 평가내용 및 세부기준은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인자가 결정하되,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과정을 거쳐야 함
- 결정된 세부기준에 따라 단위학교별 <서식28>(정량평가)교사 자기실적평가서 마련

◇ 평가내용 및 세부기준 마련 절차(예시)





4)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 선정
 - 3명 이상 7명 이하의 동료교사로 구성(위원장 제외 인원)
 - 다면평가자를 선정하기 전 학년초에 학년별, 연령별,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대표성 있는 자로 구성(비교과 교사 1명이상 참여 권장)
 - 제한자: 휴직, 파견, 직위해제, 징계처분 중인 자, 계약직 교원
 - 교육지원청은 관할 교육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로 구성
- 역할
 -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 마련
 - 정성(情性)평가 학습지도와 관련된 평가지표 추가·삭제 및 수정(단, 영양·보건·전문상담 또는 사서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한정)
 - 정량(定量)평가 평가지표 추가·삭제 및 수정

5) 다면평가자 구성

- 위원 구성
 -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으로 구성
 - 다면평가관리위원회와 다면평가자가 중복 가능하되 별도로 구성
 - 소규모 학교일 경우 교사 전원이 참여 가능
 - 평가기간 직전에 선정

6) 다면평가 실시

-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의한 다면평가 실시

가) 평가요소 및 평가점

구분	평가사항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평가점	환산점
	근무수행 태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 업무		
	평가요소	교육공무원 으로서의 태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 업무	
	평가점	10	40	30	5	15	100
							32

※ 환산점 = 평가점 × 32/100

※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비교과 교사에 대하여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나) 평가 방법

- 평가점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자 개개인은 평가대상자의 다면평가점을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춰 상대평가 실시
-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는 이를 ‘미’에 가산
- 평가를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평가실시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 동안 평가 진행
- 다면평가자는 사전에 제출받은 평가대상자의 자기실적평가서 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평소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 실시
- 평가자수가 4인 이상일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산출

다) 분포비율 및 측정기준

평가 등급	비율	수준	설 명
수 (95점 이상)	30%	탁월	모든 기대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매우 우수함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	우수	기대수준을 대부분 충족시키며 일부에서는 기대수준을 훨씬 뛰어넘음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	보통	기대수준을 충족시킴
양 (85점 미만)	10%	미흡 또는 부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혀 도달하지 못함

○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의한 다면평가 실시

가) 평가요소 및 평가점

구분	평가사항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평가점	환산점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평가요소							
평가점		30	30	10	30	100	8

※ 환산점 = 평가점 × 8/100

나) 평가방법

- 정량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세부 점수기준 산정 자료 입력
- 평가자수가 4인 이상일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산출



7) 제출 및 보관 서류

서식번호	서식명	제출여부	비고
〈서식25〉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자별 평가표	학교보관	p.118
〈서식26〉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요소별 집계표	학교보관	p.119
〈서식3〉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학교보관	p.85
〈서식27〉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요소별 집계표	학교보관	p.120
〈서식28〉	정량(定量)평가 교사 자기실적평가서(예시)	학교보관	p.121
〈서식4〉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학교보관	p.87
〈서식5〉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출력물제출)	학교→교육지원청	p.89
〈서식29〉	다면평가자 서약서	학교보관	p.122
〈서식30〉	파견교사 근무실적 요청 자료(예시)		p.130



〈서식26〉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요소별 집계표

- 평가요소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 -

평가대상자		다면평가자별 평가점					계	평균 (10점)
연번	성명	김갑돌	박을순	홍길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 집계표는 다면평가 각 요소별로 작성(5개 요소)
- 다면평가자별 평가점은 〈양식1〉의 해당 평가 요소별 평가점을 그대로 기재
- ‘계’는 다면평가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계(평가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만 적용)
- ‘평균’은 ‘계÷다면평가자수(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 제외)’



<서식27>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요소별 집계표

- 평가요소 : 학습지도(30점) -

평가대상자		다면평가자별 평가점					계	평균 (30점)
연번	성명	김갑돌	박을순	홍길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 집계표는 다면평가 각 요소별로 작성(4개 요소)
- ‘계’ 는 다면평가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계(평가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만 적용)
- ‘평균’ 은 ‘계 ÷ 다면평가자수(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 제외)’



<서식28>

[정량평가]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예시]

성명 : (인)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및 세부 기준	배점	실적내용	평정점
가. 학습 지도 (30점)	1) 주당 수업시간			
	2) 수업공개 횟수			
	3) 교내외 수업컨설팅 횟수			
	4) 교내외 교과연구회 실적			
	소 계			
나. 생활 지도 (30점)	1) 학생 또는 학부모 상담실적			
	2) 생활지도 곤란도(담임/비담임)			
	3) 학년 곤란도(상/중/하)			
	소 계			
다. 전문성 개발 (10점)	1)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			
	2) 장학 자료 개발			
	3) 공연 및 전시회 참가			
	4) 학생경연대회 지도			
	5) 학술지 게재			
	6) 교육관련 학회 등 활동 실적			
	소 계			
라. 담당 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상/중/하)			
	2) 업무 추진			
	소 계			
총 점				



2. 교사 근무성적평정

가. 근무성적평정 개요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제출하게 하고, 다음의 기준과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함

-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나. 근무성적평정 및 요소별 점수 조정

-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p.83)에 따르고,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p.90)에 따름
- 교사 근무성적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평정자(교감) 20%, 확인자(교장) 40%로 환산한 후 합산(60점)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교사	교(원)감	교(원)장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소속과장	교육장
교감 미배치교 교사	교(원)장	교육장

-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점수 조정은 요소 중 “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5점)”, “담당업무(15점)”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요소별로 5점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 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를 동일하게 해야 하며, 90점을 초과하면 안 됨

다. 교사, 교감 등 근무성적평정 감점 처리 요령

- 근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8조의2내지 제28조의9, 제40조
 - 감사16160-173(2003.4.28.)
 - 중등교육과-62829(2009.11.25.)
 - 감사관-2634(2016.4.18.)



○ 신분상 처분에 따른 감점 기준

○ 행정행위 발생일이 2003.5.1. 이후인 경우

- 주의: 2건당 0.1점 감점 (추가건당 0.05 감점)
- 경고: 1건당 0.2점 감점
- 불문경고: 1건당 0.5점 감점
- 견책: 1건당 1점 감점
- 감봉: 1건당 2점 감점
- 정직: 1건당 3점 감점
- 강등: 1건당 5점 감점
- 감점은 “총점” 이 아닌 “조정점” 에서 감점 처리함

※ 신분상 처분 적용기준은 행정행위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하며, 처분 적용기간은 2020.3.1. ~ 2021.2.28.까지임. 따라서 당해 학년도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 평정 감점 적용

○ 근무성적평정 감점 처리 유의할 점

- 신분상 처분에 따른 감점 대상자는 ‘조정점’ 에서 감점하며, 원 조정점과 감점 후의 조정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기함

【예시】 평가대상인원이 52명인 학교에서 순위가 3위(수) 99.40점인 자가 금년도에

- 주의 2건 처분을 받은 자일 경우, ‘조정점’ 에서 0.1점을 감점하여 99.30점이 됨
* 기재 방법 : ~~99.40~~(주의 2건) 99.30
- 경고 처분을 받은 자일 경우, ‘조정점’에서 0.2점을 감점하여 99.20점이 됨
* 기재 방법 : ~~99.40~~(경고) 99.20

- 신분상 처분에 따른 감점 대상자는 변경된 조정점에 따라 평어 및 순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총점’ 에 기재된 점수에 의해 평어 및 순위를 산출함
- 4대 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는 상위 30% 근무 성적 평정점 부여 금지(감사관-2634. 2016.4.18.)
- 신분상 처분으로 인해 조정점에서 감점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점’의 분포비율이 강제 배분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예시】 평가대상인원이 52명인 학교에서 ‘⑦총점’에 따른 순위가 16위인 자가 금년도에

- 견책 처분을 받은 자일 경우, ‘⑨순위’에는 ‘16(수)’가 기재되지만, 이 교사의 ‘⑧조정점’은 1점이 감점되어 ~~95.50~~(견책) 94.50로 기재
* 해당 교사의 평어는 ‘수’로 기재되지만 실제로는 ‘우’에 해당하는 조정점을 받게 되며, 해당 학교에서 사실상 ‘수’에 해당하는 조정점을 받는 교사는 15명(29%)이며, ‘우’에 해당하는 조정점을 받게 되는 교사는 22명(42%)이 됨
(결과적으로 총점과 순위는 변하지 않으며, 조정점만 감점됨)



【예시】

[별지 제4호의3서식]

학교명: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제28조의3제1항관련)							
① 평 정 기 간		② 평정분포 비율(조정점)		③ 조 정 자	④ 확 인 자	⑤ 평 정 자	
2020.3.1.부터 2021.2.28.까지		◦ 수(95점 이상) 30% ◦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 양(85점 미만) 10%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대상자		종류 점수 등		⑥ 합산점	⑦ 총점	⑧ 조정점	⑨ 순위
소 속	성명	평정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99.50	100.00	1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99.21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98.75	99.30 99.40 (주의 2건)	3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97.56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 · ·	· · ·	· · ·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95.42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94.89	94.90	17	
		다면평가					

※ <서식7>2020.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일람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감점 처리함



마.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조건표

평정 인원	내역				평정 인원	내역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30%	40%	20%	10%		30%	40%	20%	10%
	95이상	90이상	85이상	85미만		95이상	90이상	85이상	85미만
1	1				26	8	10	5	3
2	1	1 (복수교감 예외)			27	8	11	5	3
3	1	1	1		28	8	11	6	3
4	1	2	1		29	9	11	6	3
5	2	2	1		30	9	12	6	3
6	2	2	1	1	31	9	13	6	3
7	2	3	1	1	32	10	13	6	3
8	2	3	2	1	33	10	13	7	3
9	3	3	2	1	34	10	14	7	3
10	3	4	2	1	35	11	14	7	3
11	3	5	2	1	36	11	14	7	4
12	4	5	2	1	37	11	15	7	4
13	4	5	3	1	38	11	15	8	4
14	4	6	3	1	39	12	15	8	4
15	5	6	3	1	40	12	16	8	4
16	5	6	3	2	41	12	17	8	4
17	5	7	3	2	42	13	17	8	4
18	5	7	4	2	43	13	17	9	4
19	6	7	4	2	44	13	18	9	4
20	6	8	4	2	45	14	18	9	4
21	6	9	4	2	46	14	18	9	5
22	7	9	4	2	47	14	19	9	5
23	7	9	5	2	48	14	19	10	5
24	7	10	5	2	49	15	19	10	5
25	8	10	5	2	50	15	20	10	5



평정 인원	내역				평정 인원	내역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30%	40%	20%	10%		30%	40%	20%	10%
	95이상	90이상	85이상	85미만		95이상	90이상	85이상	85미만
51	15	21	10	5	71	21	29	14	7
52	16	21	10	5	72	22	29	14	7
53	16	21	11	5	73	22	29	15	7
54	16	22	11	5	74	22	30	15	7
55	17	22	11	5	75	23	30	15	7
56	17	22	11	6	76	23	30	15	8
57	17	23	11	6	77	23	31	15	8
58	17	23	12	6	78	23	31	16	8
59	18	23	12	6	79	24	31	16	8
60	18	24	12	6	80	24	32	16	8
61	18	25	12	6	81	24	33	16	8
62	19	25	12	6	82	25	33	16	8
63	19	25	13	6	83	25	33	17	8
64	19	26	13	6	84	25	34	17	8
65	20	26	13	6	85	26	34	17	8
66	20	26	13	7	86	26	34	17	9
67	20	27	13	7	87	26	35	17	9
68	20	27	14	7	88	26	35	18	9
69	21	27	14	7	89	27	35	18	9
70	21	28	14	7	90	27	36	18	9



평정 인원	내역	수	우	미	양	평정 인원	내역	수	우	미	양
		30%	40%	20%	10%			30%	40%	20%	10%
		95이상	90이상	85이상	85미만			95이상	90이상	85이상	85미만
91		27	37	18	9	114		34	46	23	11
92		28	37	18	9	115		35	46	23	11
93		28	37	19	9	116		35	46	23	12
94		28	38	19	9	117		35	47	23	12
95		29	38	19	9	118		35	47	24	12
96		29	38	19	10	119		36	47	24	12
97		29	39	19	10	120		36	48	24	12
98		29	39	20	10	121		36	49	24	12
99		30	39	20	10	122		37	49	24	12
100		30	40	20	10	123		37	49	25	12
101		30	41	20	10	124		37	50	25	12
102		31	41	20	10	125		38	50	25	12
103		31	41	21	10	126		38	50	25	13
104		31	42	21	10	127		38	51	25	13
105		32	42	21	10	※ 작성기준: 평정인원에 분포 비율을 곱하여 정수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단 소수점 이하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올림한다.(5명까지는 예외) 2. 반올림한 수가 전체인원 초과시에는 가장 작은 소수 첫째 자릿수를 버린다. 3. 0.5가 2항목일 때는 상위평정을 반올림한다. 4. 소수점 첫째 자릿수가 모두 0.4이하시는 0.4를 올림한다.					
106		32	42	21	11						
107		32	43	21	11						
108		32	43	22	11						
109		33	43	22	11						
110		33	44	22	11						
111		33	45	22	11						
112		34	45	22	11						
113		34	45	23	11						



바. 평정대상 인원별 동일 평정등급 내 평정점간 점수 배분표

◆ “수” 평정점 (100.0 ~ 95.0)

“수” 평정 대상 인원	평정점간 점수차	평 정 점
1명	.	.
2~5명	0.9 점	100.0 ~ 96.4
6명	0.8 점	100.0 ~ 96.0
7명	0.7 점	100.0 ~ 95.8
8명	0.6 점	100.0 ~ 95.8
9~10명	0.5 점	100.0 ~ 95.5
11~12명	0.4 점	100.0 ~ 95.6
13~16명	0.3 점	100.0 ~ 95.5
17~25명	0.2 점	100.0 ~ 95.2
26~50명	0.1 점	100.0 ~ 95.1

◆ “미” 평정점 (89.9 ~ 85.0)

“미” 평정 대상 인원	평정점간 점수차	평 정 점
1명	.	.
2~5명	0.9 점	89.9 ~ 86.3
6명	0.8 점	89.9 ~ 85.9
7명	0.7 점	89.9 ~ 85.7
8명	0.6 점	89.9 ~ 85.7
9명	0.5 점	89.9 ~ 85.9
10~12명	0.4 점	89.9 ~ 85.5
13~16명	0.3 점	89.9 ~ 85.4
17~24명	0.2 점	89.9 ~ 85.3
25~49명	0.1 점	89.9 ~ 85.1

◆ “우” 평정점(94.9 ~ 90.0)

“우” 평정 대상 인원	평정점간 점수차	평 정 점
1명	.	.
2~5명	0.9 점	94.9 ~ 91.3
6명	0.8 점	94.9 ~ 90.9
7명	0.7 점	94.9 ~ 90.7
8명	0.6 점	94.9 ~ 90.7
9명	0.5 점	94.9 ~ 90.9
10~12명	0.4 점	94.9 ~ 90.5
13~16명	0.3 점	94.9 ~ 90.4
17~24명	0.2 점	94.9 ~ 90.3
25~49명	0.1 점	94.9 ~ 90.1

◆ “양” 평정점 (84.9 ~)

“양” 평정 대상 인원	평정점간 점수차	평 정 점
1명	.	.
2명 이상	1.0 점	84.9 점 이하



<서식30> 파견교사 근무실적 요청 자료(예시)

○○초등학교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파견교사) 근무실적 제출 요청

1. 근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0조(평정의 예외) 제3항
2. 귀 기관에 파견 중인 교육공무원(파견교사)의 근무실적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위	성명	파견기관	근무실적 요청 기간	비고

붙임 1. 파견교사 근무실적 1부.

2. 교사 자기실적평가서(승진규정 제28조의2 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의2서식]) 1부. 끝.

IV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1. 초등·특수·보건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2. 유치원(특수)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경상남도 초등·특수·보건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2001.12.31.)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17호(개정 2008.06.30.)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호(개정 2009.08.28.)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호(개정 2010.01.27.)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15호(개정 2010.08.23.)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57호(개정 2010.11.30.)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1-8호(개정 2011.07.07.)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1-13호(개정 2011.11.14.)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2-13호(개정 2012.07.11.)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2-225호(개정 2012.10.23.)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3-3호(개정 2013.3.1.)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3-11호(개정 2013.6.27.)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304호(개정 2014.01.23.)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134호(개정 2015.05.12.)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6-22호(개정 2016.05.25.)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22호 (개정 2017.1.10.)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8-11호 (개정 2018.7.17.)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9-16호 (개정 2019.7.8.)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0-15호 (개정 2020.7.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30495호, 2020.2.28. 일부개정) 제41조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대상자의 명부 작성에 필요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는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
등교원(보건교사 포함)에게 적용한다.

1.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
2.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3.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4.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달한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5.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달한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제3조(가산점) ①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
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
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③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④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명부조정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⑤ 징계 처분(불문경고 포함)에 이르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산점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산점의 징계처분 시
효가 경과한 경우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

(2020.3.1. 이후 가산점 취득부터 적용)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서 이수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무연수 15시간을 0.02점으로 하고, 평정기간별로 0.08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총 상한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 실적 학점, 부전공 과목, 해외 연수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14.1.31.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2.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3.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제4조(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서 이수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무연수 15시간을 0.02점으로 하고, 평정기간별로 0.0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상한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 실적 학점, 부전공 과목, 해외 연수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14.1.31.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2.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3.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시행일: 2022.4.1.]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3장 선택가산점

제5조(선택가산점)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도서·벽지학교 근무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상한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1997년 2월 28일 이전 근무실적 월평정점은 가지역 0.12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417점), 나지역 0.096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32점), 다지역 0.066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22점), 라지역 0.037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23점)으로 하고
2. 1997년 3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실적 월평정점은 가지역 0.084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28점), 나지역 0.06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227점), 다지역 0.050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67점), 라지역 0.034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13점)으로 하며
3. 1998년 1월 1일 이후 근무실적 월평정점은 가지역 0.04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4점), 나지역 0.034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13점), 다지역 0.02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83점), 라지역 0.017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7점)으로 한다.
4. 2006년 3월 1일 이후 타 시·도 전입자는 제3호의 월평정점에 준하고 상한점은 2.0을 초과할 수 없다.
5.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 준벽지학교 근무 경력 점수와는 택일하여 사용한다. (합산 불가) <신설 2012.7.11>

② 농어촌진흥학교 근무 경력 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7.11]

1. 1995.3.1.~1998.2.28.(가산점인정자명부등재자)와 1998.3.1. 이후 해당지역근무자의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
2. 2009.1.1.~2013.12.31. 근무자는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여 월평정점은 가지역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 나지역 0.01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4점)

가. 가지역: 읍·면지역(도서·벽지 제외)



- 나. 나지역: 기 지정된 동지역, 인구 7만 이상인 읍·면 지역(매년1월1일 기준)
3. 2014.1.1.이후는 가, 나, 다지역으로 구분하여 월평정점은 가지역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 나지역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 다지역 0.01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4점)으로 한다. 단, 교감은 가, 나, 다 구분없이 월 0.01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4점)으로 한다.(2022.3.1.이후 실적부터)〈개정 2020.7.13.〉
- 가. 가지역: 군의 면지역 학교
- 나. 나지역: 읍지역, 시의 면지역 학교
- 다. 다지역: 기 지정된 동지역, 인구 7만 이상인 읍·면 지역 학교(매년1월1일 기준)
- ※ 도서·벽지학교, 준벽지학교는 제외
- ③ 보직교사 근무 경력의 월평정점은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7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 경력의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한센병환자자녀의 학교 및 학급담당 근무 경력은 2011.2.28.까지의 근무실적에 한하여 월평정점은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초등학교원의 경우 제6항과 합산하여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평정점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할 경력은 월평정점 0.009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3점)으로 하되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항과 합산하여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특수학급 가산점평정규정 개정(1994.9.22.) 이전에 특수학급을 담당할 자와 1994.9.22.이전에 특수학급을 담당하여 계속 근무한 자는 1995.2.28.까지 특수학교 근무자와 동일한 점수인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을 부여한다.〈개정 2014.1.23.〉
- 단, 2017.1.1부터 특수학교 근무 경력 및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할 경력의 가산점은 특수교사에게만 부여한다.[일반교사 임용 후 특수교사 자격취득자(중복자격 교사는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단서조항신설 2014.1.23.〉
- ⑦ 교육감지정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 근무 경력과 교육실습 협력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 교육실습 대용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 꿈나르미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은 구분하여 평정하고, 제4조 제1항의 ‘교육부장관지정연구(시범·실험학교 포함)



학교' 가산점과 합산하여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1>

1. 교육감지정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근무한 자의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으로 한다.
 2. 특수교원의 교육실습협력학교 근무 경력의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교육실습 대응학교 가산점을 포함하여 0.72점으로 한다.
 3. 초등교원의 교육실습협력학교 근무 경력의 월평정점은 0.017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7점)으로 하며, 교육대학부설학교 가산점을 포함하여 상한점은 1.25점으로 하되, 2007년 2월 28일 이전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7점)으로 한다.
 4. 교육실습 대응(부설학교포함)학교 근무 경력은 월평정점을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7점)으로 한다.
 5. 교육감지정 꿈나르미학교 근무 경력의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으로 한다. <신설 2012.7.11.>
- ⑧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자격별로 [별표1]과 같이 평정하되,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 평정한다.
- ⑨ 경상남도교육감이 발령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 연구, 수련, 행정 등) 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파견 근무한 교원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에 따라 평정하며, 상한점은 제4조 제2항의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과 합산하여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에 파견근무한 교원의 가산점 월평정점은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7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연수, 연구, 수련, 행정 등)에 파견근무한 교원의 가산점 월평정점은 0.010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35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우포생태교육원에 파견근무한 교사의 가산점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으로 하고, 상한점은 0.3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파견되어 교육과 관련된 업무(교재연구, 강의, 특강, 연수 등)를 직접 수행한 교원의 가산점 월 평정점은 0.017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7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4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⑩ 체육유공교원과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경로·효행 교육공무원, 학력향상 우수학교 유공교사, 영재교육원의 담임교사 및 발명교실 지도교사, 30학급 이상 학교 근무 교감에 대한 경력 및 실적 가산점은 다음 각 호 1과 같이 평정하고, 상한점은 0.5 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7.13.>
1.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초등학교 학생의 지도자에게는 연 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상한점은 0.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0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 학년도에 동일 실적으로 획득한 연구실적평정점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강사(발명영재교육 강사 제외)로 임명되어 연 34시간 이상 영재교육을 지도하고, 6개월 이상 학급 담임을 맡아 지도한 자는 월평정점 0.0084점(1개월 미만의 경우 1일 0.0003점)을 부여하고 상한점은 0.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학년도에 제10항 제3호와 실적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인정하며, 제10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11>
 3. 발명영재교육 지도교사에게는 월평정점 0.0084점(1개월 미만의 경우 1일 0.0003점)을 부여하고 상한점은 0.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학년도에 제10항 제2호와 실적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인정하며, 제10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 학년도에 동일 실적으로 획득한 연구실적평정점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11>
 4. 위 제3호의 발명영재교육 지도교사라 함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의 수업을 연 34시간 이상 지도한 교사로서, 발명영재학급 학생 실적물 전시회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동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을 직접 지도한 지도교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을 획득한 학생을 직접 지도한 지도교사 포함)로 한정한다.
2013.12.31. 이전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동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을 직접 지도한 지도교사로 한다.
단,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을 획득한 학생이란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 학생 또는 발명영재학급 지도교사 소속학교의 재학생이며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



진대회 금상을 수상한 학생으로, 수상 후 동일연도에 동일 학생·동일 작품으로 출원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학생에 한한다.

등록 확정된 작품에 대한 가산점 승인 결정은 출원 연도 기준으로 1건을 인정하며, 가산점 승인연도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등록된 연도이며, 발명영재학급 학생 실적물 전시회 효력은 동일한 이름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공문이 경상남도교육청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2013년도에 출원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을 획득한 학생의 발명영재학급 지도교사 가산점 승인 결정은 출원 연도 기준으로 1건을 인정하며, 가산점 승인 연도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등록된 연도에 한한다. <개정 및 단서조항신설 2012.7.11, 개정 2013.6.27.>

5.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에게는 2014.12.31.까지의 실적에 한하여 연 0.04점(월 0.0034)을 부여하고 상한점은 0.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0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이라 함은 [별표 2]에 의한다.
 6. 경상남도교육감이 시상하는 「경로·효행상」을 수상한 교육공무원에게는 2012.2.29.까지의 실적을 인정하되, 1회에 한하여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제10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평정기준일(12.31.) 현재 학력향상 공적에 따라 전체 학교급별 국·공립학교수의 20% 이내의 학력향상우수학교(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우수학교 수 산정) 교육감표창을 받은 학교의 교사 정원의 25%까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가산점 부여 인원 산정하되, 반올림을 해도 1명이 되지 않는 학교도 1명에게 가산점 부여) 연 0.05점(월 0.00417점)을 부여하고 상한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0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파견근무 경력과 본 가산점이 중복될 시 택일하며, 학년도의 전 기간(3월1일~다음해 2월말일) 파견근무 교사는 본 가산점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휴직 및 파견 등으로 현임교에서 학생을 지도하지 않은 기간은 가산점 부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6.27.>
 8. 교감의 30학급 이상 학교 근무 경력 점수는 월평정점 0.0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33점)으로 한다.(2021.3.1. 이후 실적부터) <신설 2020.7.13.>
- ⑩ 준벽지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2014.1.1. 이후) <신설 2012.7.11.>
1. 초등교원은 월평정점 0.010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33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6점으로 한다.



2. 당해 연도 특수학교(급) 담당 가산점과는 중복사용 불가하다.
 3. 도서벽지 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과는 택일하여 사용한다.(합산불가)
 4. 준벽지 지정 학교는 [별표3]에 의한다.
- ⑫ 특수교육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4조②항 및 제5조⑨항과 합산하여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2017.3.1. 이후 실적)〈신설 2016.5.25.〉
1. 월평정점 0.0084점 일평정점은 0.0003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4점으로 한다.
 2. 전입 후 3년 이내의 연속 근무 경력 중 최초 1년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 ⑬ 그 밖에 교육발전과 교육과정운영·생활지도·특별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예고하여 시행한다.

제6조(중복 경력 허용 범위)가산점의 중복 경력 허용 범위는 다음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 ② 가산점 중복 경력 인정 대상은 다음 각 호마다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1. 「연구학교 유공 경력」, 「교육실습협력학교 유공 경력」, 「꿈나르미학교 유공 경력」
〈개정 2012.7.11.〉
 2. 「보직교사 근무 경력」 과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 담당 경력」
 3.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근무 경력」
 4. 「도서·벽지학교 근무 경력」 과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 담당 경력」
 5. 「도서·벽지학교 근무 경력」 과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6. 「한센병 환자 자녀 학급 담당 경력」 과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7. 「농어촌진흥학교 근무 경력」 과 「한센병환자 자녀 학교(급) 담당 경력」
 8. 「농어촌진흥학교 근무 경력」 과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9. 〈삭제〉
 10. 「준벽지학교 근무 경력」 과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신설 2012.7.11.〉
 11. 「농어촌진흥학교 근무 경력」 과 「30학급 이상 학교 근무 교감 경력」 〈신설 2020.7.13.〉



부칙(2008.6.26. 인사위-1464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 이 규정은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23. 인사위-1125)

제1조 (시행일) ① 제5조(선택가산점) 제9항 4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9항 4호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일 당시 이미 파견 근무 중인 자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7.29. 인사위-12426)

제1조(시행일) ① 제5조(선택가산점) 제9항 제5호 규정, 제10항 제5호, 제6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9항 제5호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일 당시 이미 파견 근무 중인 자는 2009년 5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8.20. 인사위-03)

제1조(시행일) ① 제5조(선택가산점) 제10항 제7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5. 인사위-15320)

제1조(시행일) ①제5조(선택가산점) 제11항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4. 인사위-10)

제1조(시행일) ①제5조(선택가산점) 제12항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7. 인사위-13792)

제1조(시행일) 제5조 제9항 제6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24. 인사위-5109)

제1조(시행일) ① 제5조 제10항 제5호, 제6호, 제8호의 규정은 2012.6.1.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13항의 규정은 2012.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1. 인사위-13799)

제1조(시행일) ① 제5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항, 제14항, 제6조 제2항 제1호, 제9호, 제13호의 규정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10항 제4호 규정은 2013.2.1.부터 시행한다.

③ 제5조 제7항 제5호의 규정은 2012학년도 이후 최종 꿈나르미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0.23. 인사위-225)

제1조(시행일) ① [별표1]국가자격 소지자 가산점 3. 워드프로세스 단일등급 자격증(구1급)은 2012.1.1.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선택가산점 제5조(선택가산점) ②항 중·고등학교의 다지역 단서조항은 2013.3.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11. 인사위-666)

제1조(시행일) ① 제5조 제10항 2호 및 3호의 규정은 2013.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7. 인사위-14270)

제1조(시행일) ① 제5조 제9항 5호, 제10항 4호, 7호의 신설, 개정규정은 2014.3.1부터 시행하고,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 인사위-2014-01)

제1조(시행일) ① 제5조 제6항 단서조항은 2017.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15. 인사위-171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5. 인사위-1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0. 인사위-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7. 인사위-2018-3호)

제1조(시행일) ① 제5조 제11항 4호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8. 인사위-201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3. 인사위-2020-6호)

제1조(시행일) ① 제1조의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4.1.부터 시행한다.

③ 제5조제2항제3호는 2022.3.1.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④ 제5조제10항, 제5조제10항제8호, 제6조제2항제11호는 2021.3.1.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⑤ [별표1]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가산점의 개정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가산점

대상자격	평정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및 2012.1.1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단일등급 자격증(구1급)<개정 2012.10.23.> 4.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p>0.50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 3.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 4.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자격증 	<p>0.30점</p>



[별표 2]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제5조(선택가산점)⑩항 5호의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이라 함은 가산점 평정 기준 시기(2010.3.1.)부터 3년 이상(비연속 허용) 청소년단체에 등록되고, 학교 교무부장상의 청소년단체를 3년 이상(비연속 허용) 직접 지도해야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등록 후 경남교육청 주관 야영수련직무연수 또는 해당 청소년단체 지도자연수(경남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에 한함)를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단, 원격연수는 제외), 소속학교의 청소년단체 대(단)원을 연간 100시간 이상 지도한 교원으로 한정하고, 지도시간 인정범위와 청소년단체 가입학생수별 가산점부여 지도교원 수는 아래와 같다.

[지도시간 인정 범위]

-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1명당 최소 10명 이상의 가입학생을 지도한 경우 지도시간 인정 (지역 및 중앙 단위 행사도 인정)
- 숙박포함 1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32시간까지 지도시간 인정
- 학교단위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회의(연간지도계획에 의거한 회의) 및 청소년단체 지역(지구)·중앙 단위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도 지도시간으로 인정함(1일 최대 2시간이내, 연5회까지 인정함)
- 지도시간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의 경우 지도시간에서 제외]

-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시간
- 특별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간
- 순수 청소년 단체활동이 아닌 시간

[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원 수]

청소년단체별 가입학생 수	지도교원배정 가능인원 수	가산점부여 지도교원 수	비고
20~50명 (단, 6학급 이하 학교 10명~50명)	2	1	※ 학생수는 단체별 등록시점을 기준 으로 함
51명~80명	3	2	
81명~120명	4	2	
121명이상	5	2	

[가산점 부여 예]

2010.3.1.~2014.12.31.까지 5년간 연속 지도(0.074점)	2010.3.1.~2014.12.31.까지 4년간 비연속 지도(0.034점)
- 2013.3.1.~12.31. 월0.0034×10개월=0.034 - 2014.1.1.~12.31. 월0.0034×12개월=0.04(상한)	- 2014.3.1.~12.31. 월0.0034×10개월=0.034



[별표3] <신설 2012.7.11., 개정 2018.7.17.>

준벽지학교 지정 현황

인사구역	학교명(23교)	
	재지정(14교)	신규지정(9교)
창원		일동초
마산		반동초
진주		이반성초
사천		서포초
김해	금동초, 안명초, 이작초	
양산	원동초	좌삼초
함안	외암초	월촌초
창녕	이방초, 장천초	
고성	하일초	
남해	미조초, 상주초	남명초
함양	백전초	
거창	신원초, 가북초	
합천	봉산초	합천가야초, 야로초

※ 위 준벽지학교 재지정 및 신규지정 기간: 2019.3.1.~2024.2.29.



경상남도 유치원(특수)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9-17호 (제정 2019.7.8.)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0-16호 (개정 2020.7.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30495호, 2020.2.28., 일부개정) 제41조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대상자의 명부 작성에 필요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는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과 유치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교원에게 적용한다.

1.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원감
2. 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3.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4.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달한 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5.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달한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제3조(가산점) ①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 ②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에 있는 원감은 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 ③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 ④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명부조정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 ⑤ 징계 처분(불문경고 포함)에 이르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산점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산점의 징계처분 시효가 경과한 경우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 (2020.3.1. 이후 가산점 취득부터 적용)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 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유치원(시범·실험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 2022.4.1.] 제4조제1항, 제2항
- ③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서 이수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무연수 15시간을 0.02점으로 하고, 평정기간별로 0.08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총 상한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 실적 학점, 부전공 과목, 해외 연수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선택가산점

제5조(선택가산점)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도서·벽지학교의 병설유치원 근무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상한점은 2.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1. 1997년 2월 28일 이전 근무실적 월평정점은 가지역 0.12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417점), 나지역 0.096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32점), 다지역 0.066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22점), 라지역 0.037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23점)으로 하고
 2. 1997년 3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실적 월평정점은 가지역 0.084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28점), 나지역 0.06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1일 0.00227점), 다지역 0.050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67점), 라지역 0.034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13점)으로 하며
3. 1998년 1월 1일 이후 근무실적 월평정점은 가지역 0.04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4점), 나지역 0.034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113점), 다지역 0.02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83점), 라지역 0.017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7점)으로 한다.
 4. 2006년 3월 1일 이후 타 시·도 전입자는 제3호의 월평정점에 준하고 상한점은 2.0을 초과할 수 없다.
 5.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 준벽지학교의 병설유치원 근무 경력 점수와는 택일하여 사용한다.(합산 불가) <신설 2012.7.11.>
- ② 농어촌진흥유치원 근무 경력 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7.11.]
1. 1995.3.1.~1998.2.28.(가산점인정자명부등재자)와 1998.3.1. 이후 해당지역근무자의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
 2. 2009.1.1.~2013.12.31. 근무자는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여 월평정점은 가지역 0.015점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 나지역 0.01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4점)
 - 가. 가지역: 읍·면지역(도서·벽지 제외)
 - 나. 나지역: 기 지정된 동지역, 인구 7만 이상인 읍면 지역(매년1월1일 기준)
 3. 2014.1.1.이후는 가, 나, 다지역으로 구분하여 월평정점은 가지역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 나지역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 다지역 0.01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4점)으로 한다.
단, 원감은 가, 나, 다 구분없이 월 0.01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4점)으로 한다.(2022.3.1.이후 실적부터)
 - 가. 가지역: 군의 면지역 유치원
 - 나. 나지역: 읍지역, 시의 면지역 유치원
 - 다. 다지역: 기 지정된 동지역, 인구 7만 이상인 읍·면 지역 유치원(매년1월1일 기준)
- ※ 도서·벽지학교의 병설유치원, 준벽지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제외
- ③ 보직교사 근무 경력의 월평정점은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7점)



으로 하고,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 경력의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한센병환자자녀의 유치원 및 학급담당 근무 경력은 2001.7.6.까지의 근무실적에 한하여 월평정점은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평정점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월평정점 0.009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3점)으로 하되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항과 합산하여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수학급 가산점평정규정 개정(1994.9.22.) 이전에 특수학급을 담당한 자와 1994.9.22. 이전에 특수학급을 담당하여 계속 근무한 자는 1995.02.28.까지 특수학교 근무자와 동일한 점수인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6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4.1.23.>

단, 2017.1.1부터 특수학교 근무 경력 및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의 가산점은 특수교사에게만 부여한다.[일반교사 임용 후 특수교사 자격취득자(중복자격 교사)는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서조항신설 2014.1.23.>

- ⑦ 교육감지정 연구유치원(시범·실험유치원 포함) 근무 경력과 교육실습 협력유치원 근무 경력 가산점, 교육실습 대용학교 근무 경력은 구분하여 평정하고, 제4조 제1항의 교육부장관지정연구(시범·실험유치원 포함)유치원 가산점과 합산하여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1.>

1. 교육감지정 연구유치원(시범·실험유치원 포함)근무한 자의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으로 한다.
2. 특수교원의 교육실습협력학교(유치원) 근무 경력의 월평정점은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교육실습 대용학교 가산점을 포함하여 0.72점으로 한다.
3. 교육실습협력유치원 근무 경력의 월평정점은 0.017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7점)으로 하며, 상한점은 0.72점으로 한다.
4. 교육실습 대용학교 근무 경력은 월평정점을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7점)으로 한다.

- ⑧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자격별로 [별표1]과 같이 평정하되,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 평정한다.
- ⑨ 경상남도교육감이 발령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 연구, 수련, 행정 등) 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파견 근무한 교원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에 따라 평정하며, 상한점은 제4조 제2항의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과 합산하여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연수, 연구, 수련, 행정 등)에 파견근무한 교원의 가산점 월평정점은 0.010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35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파견되어 교육과 관련된 업무(교재연구, 강의, 특강, 연수 등)를 직접 수행한 교원의 가산점 월 평정점은 0.017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57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4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⑩ 경상남도교육감이 시상하는 「경로·효행상」 을 수상한 교육공무원에게는 2012.2.29.까지의 실적을 인정하되, 1회에 한하여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⑪ 준벽지학교의 병설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2014.1.1. 이후)〈신설 2012.7.11.〉
1. 월평정점 0.010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0.00033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6점으로 한다.
 2. 당해 연도 특수학교(급) 담당 가산점과는 중복사용 불가하다.
 3. 도서벽지 학교의 병설유치원 근무 경력 가산점과는 택일하여 사용한다.(합산불가)
 4. 준벽지 지정 학교(병설유치원)는 [별표2]에 의한다.
- ⑫ 특수교육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4조②항 및 제5조⑨항과 합산하여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2017.3.1. 이후 실적)〈신설 2016.5.25.〉
1. 월평정점 0.0084점 일평정점은 0.0003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4점으로 한다.
 2. 전입 후 3년 이내의 연속 근무 경력 중 최초 1년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 ⑬ 그 밖에 교육발전과 교육과정운영·생활지도·특별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예고하여 시행한다.



제6조(중복 경력 허용 범위)가산점의 중복 경력 허용 범위는 다음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 ② 가산점 중복 경력 인정 대상은 다음 각 호마다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1. 「연구학교(유치원) 유공 경력」, 「교육실습협력학교(유치원) 유공 경력」 <개정 2012.7.11.>
 2. 「보직교사 근무 경력」 과 「한센병 환자 자녀 유치원(학급) 담당 경력」
 3.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근무 경력」
 4. 「도서·벽지학교의 병설유치원 근무 경력」 과 「한센병 환자 자녀 유치원(학급) 담당 경력」
 5. 「도서·벽지학교의 병설유치원 근무 경력」 과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6. 「한센병 환자 자녀 학급 담당 경력」 과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7. 「농어촌진흥유치원 근무 경력」 과 「한센병환자 자녀 유치원(학급) 담당 경력」
 8. 「농어촌진흥유치원 근무 경력」 과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9. 「준벽지학교의 병설유치원 근무 경력」 과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 <신설 2012.7.11.>

부칙(2019.7.8. 인사위-201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유·초·특수·보건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에 의해 평정된 가산점은 이 규정에 의해 평정된 가산점으로 본다.

부칙(2020.7.13. 인사위-2020-6호)

제1조(시행일) ① 제1조의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4.1.부터 시행한다.

③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3.1.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1]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가산점의 개정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가산점

대상자격	평정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및 2012.1.1.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단일 등급 자격증(구1급)<개정 2012.10.23.> 4.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p>0.50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 3.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 4.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자격증 	<p>0.30점</p>



[별표 2] <신설 2012.7.11., 개정 2018.7.17.>

준벽지학교(병설유치원) 지정 현황

인사구역	학교명(23교)	
	재지정(14교)	신규지정(9교)
창원		일동초
마산		반동초
진주		이반성초
사천		서포초
김해	금동초, 안명초, 이작초	
양산	원동초	좌삼초
함안	외암초	월촌초
창녕	이방초, 장천초	
고성	하일초	
남해	미조초, 상주초	남명초
함양	백전초	
거창	신원초, 가북초	
합천	봉산초	합천가야초, 야로초

※ 위 준벽지학교 재지정 및 신규지정 기간: 2019.3.1.~2024.2.29.

2021.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발행일 : 2020. 11.

발행처 : 경상남도교육청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홈페이지 : www.gne.go.kr

인쇄처 : 문성사 ☎ 282-9922

